INVENTION & PATENT

2011 October

10

발명특허

INVENTION & PATENT _ Vol . 423

Special Issue
[포커스]

특허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

[시선집중]

식별력 약한 상표의
브랜드 관리 전략

[Zoom-In]

소리, 냄새, 위치도 상표가 될 수 있다

한국발명진흥회

Contents

IP Report

12	IP리포트	영국의 특허소송
20	포커스	특허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
32	특허확대경	특허법원 2011. 4. 22. 선고 2010허8740 판결에 대한 검토
36	IP노트	류마티스 관절염을 치료하는 식물특허
42	여기서잠깐	특허의 이해

IP Column

44	시선집중	식별력 약한 상표의 브랜드 관리 전략
48	Zoom-In	소리, 냄새, 위치도 상표가 될 수 있다
53	여기서잠깐	특허 Q&A
54	지식재산 경영전략	창의성, 개인이 아닌 전체에 붙이는 이름
62	발명교육 현장 속으로	교육현장에서 발명 교육의 필요성
65	우수특허기술 사업화 활용 사례	(주)운화

IP Information

70	세계는 지금	세계 지식재산권 동향
74	KIPO NEWS	특허청 소식
76	KIPA NEWS	한국발명진흥회 행사 및 소식
78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에 등록된 우리나라 대표 특산품	
80	건강하게 삽시다	찬 바람 부는 가을, 다이어트 고삐 늦추지 말아야
83	9월 신규 회원가입사 소개	
84	책과의 만남	백만불짜리 습관, 발명상식사전
85	문화산책	바람의 나라, 2011 대장경 천년 세계문화축전
86	발명 365	초음파 탐지기, 축음기
87	독자마당	QUIZ

Invention & Patent
October 2011 Vol. 423

발행일 2011년 10월호 제36권 제10호(통권423호) **발행처** 한국발명진흥회(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_ 우 135-980) 02)3459-2800(代)
발행인/편집인 최 종 협 **편집위원** 유태수, 최화봉, 이태원, 황진원, 김규연 **인쇄인** 이평원 **인쇄처** 휘문인쇄사 (02)2276-1234 **인쇄** 2011년 10월 5일
발행 2011년 10월 10일 **한국발명진흥회 회지 월간 발명특허**
• 본지는 한국도서잡지윤리위의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본지에 게재된 기사와 본회의 견해와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한국발명진흥회 주관 - 글로벌IP 전략인재 양성과정]

"중국 특허·상표 출원전략 및 특허소송" 특강 세미나

중국 현지 IP 전문가 직강을 통한 중국 IP 시장 완전 정복!!

실무경험이 풍부한 중국 현지 IP 전문가 직강을 통해,
중국 특허와 상표에 관한 최신 정보와 심도 있는 이해 가능!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선착순 80명 마감)

프로그램 개요

▶ 일　시 : 10월 24일(수) ~ 10월 25일(금) (2일 과정)
▶ 장　소 :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국제회의실
▶ 교육 대상
- 기업 또는 특허법률사무소의 특허업무 종사자
- 중국 특허 출원 및 소송, 상표법에 관심 있는 분 누구나

▶ 교육 인원 : 80명 (선착순 마감)
▶ 교육비 : **15만원**

※ 조기신청자(10월 14일까지 등록자), 한국발명진흥회 회원사, 한국지식재산협의회(KINPA) 회원사, 동일기관(기업) 3인 이상 등록 시 10%할인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교육비의 80%지원 (*30,000원만 선납부)

※ 1일차 중식 지원 포함

프로그램 특징

- 세계적으로 특허출원 및 소송분야에서 최상위 랭크되어 있는 특허전문 로펌인 Finnegan & Henderson의 파트너 변호사와 P.C & ASSOCIATES 로펌에 소속된 파트너 변호사 초청강의
- 실무경험이 풍부한 중국 현지 IP 전문가 직강으로, 중국 특허·상표 출원절차 및 특허소송에 관하여 최신 정보와 심도 있는 이해 제공

※ 강의는 영어로 진행되며, 한국어 통역 제공

강사진

- 세계적으로 특허출원 및 소송분야에서 최상위 랭크되어 있는 특허전문 로펌인 Finnegan & Henderson의 파트너 변호사와 P.C & ASSOCIATES 로펌에 소속된 파트너 변호사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신청기간 : 2011. 09. 27(화) ~ 10. 20(목) 18:00까지**
▶ 신청방법 : 이메일(pid@kipa.org) 및 팩스(02-3459-2859)접수
* 신청 후 확인 전화 주시면, 더욱 빠르게 접수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문 의 처 : 한국발명진흥회 산업인력양성팀 (02-3459-2852,2806)
※ 세부 커리큘럼 및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kipa.org)참조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대학교수를 위한 지식재산 프로그램 안내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는 전국 대학 교수 들의 지식재산 역량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대학별 지식재산 교육의 자립화를 위해, 2011년 대학 교수를 위한 지식재산 프로그램 (하반기 단기집중 T3)을 개최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개최목적

- 지식재산권 창출의 핵심인력인 전국 대학 교수들의 특허역량 강화
- 중장기적 대학별 자립형 지식재산 강의 기반 구축

사업내용

- 기간: 2011. 10. 24(월) ~28(금)
- 장소: 제주 서귀포 칼호텔
- 과정

일정	과정명	선발규모
10월 24일(월) ~ 26일(수)	특허기술 가치평가 및 라이센싱 과정	과정별 30명 선착순 모집
10월 26일(수) ~ 28일(금)	지식재산 사례 연구 과정	

※ 지식재산 사례 연구 과정은 전공 분야와 무관하게 수강 가능

교육특전

- 지식재산 전문교육 프로그램 수료증 발급(특허청장)
- 교육비 및 숙식비(2인1실), 항공료 전액무료(단, 교재비 30,000원)
- 우수 교육수료자에 대해 해외연구기회 우선제공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신청기간 : 2011. 9. 23(금)~
- 신청방법 :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이메일(won@kipa.org) 접수

www.kipa.org ➡ won@kipa.org ➡ 접수완료

- 문　　의 : 한국발명진흥회 산업인력양성팀 (T. 02-3459-2808)

신청하기 >

| 주 최 특허청　　| 주 관 한국발명진흥회

2011년 하반기 투자용 기술평가비용 지원사업 안내

특허청 및 한국발명진흥회는, 우수 특허기술을 보유한 초기 중소기업에 대한 창업투자회사의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투자용 기술평가비용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창업투자회사 및 중소기업 관계자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투자용 기술평가비용 지원사업이란?

- 기술력은 우수하나 창업투자회사 등의 투자를 받기가 용이하지 않은 중소기업이 공인된 기술평가 보고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을 지원하고, 창업투자회사 등이 이를 투자심의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기술력이 우수한 초기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 신청자격

- 창업투자회사* 및 동 창업투자회사가 투자대상으로 검토 중인 중소기업**의 공동신청

  * 신청대상 창업투자회사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상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서 별도 자격제한은 없으며, 기타 국내 금융기관 및 엔젤투자조합을 포함함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으로서 등록된 특허기술 보유 또는 특허기술 사업화 진행 중인 중소기업임

■ 지원내용

- 특허청 지정 9개 발명의 평가기관에서 창업투자회사가 대상기업의 기술 검토를 위하여 요구하는 항목에 대한 맞춤형의 기술평가를 수행하여 투자용 기술평가보고서를 제공
- 지정 평가기관에서의 기술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의 90%를 지원(VAT 별도)

■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신청접수기간 : 2011. 8. 19부터 수시 접수 (예산 소진 시 까지)
- 신청방법 : 신청서, 평가계획서 및 평가비용 견적서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 사업공고 첨부양식)를 작성하여 온 · 오프라인으로 제출
- 문의처 : 한국발명진흥회 사업화지원팀 주한중 전문위원(Tel: 02-3459-2945, E-mail: hjju@kipa.org)

※ 상세한 내용은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www.kipa.org) 사업공고란 참조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기업과 종업원의 win-win.

직무발명제도

기업의 미래를 바꿉니다.

▶ 직무발명제도란?

○ 종업원(발명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명한 것을 기업이 승계하고, 종업원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하는 제도입니다.

▶ 기업은 직무발명제도를 왜 도입해야하나요?

○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은 종업원에게 기술개발 의욕을 유발하고, 기업은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 확보와 기술 축적 및 이윤창출로 인해 기업 성장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 직무발명제도는 어떻게 도입하나요?

○ 직무발명보상에 대한 내용을 기업과 종업원이 합의하여 기업의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정하면 됩니다.

▶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하면 무슨 혜택이 있나요?

○ 기업은 세액공제 혜택이, 근로자는 비과세 혜택이 있고,
○ 정부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시 직무발명 도입기업에 대하여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 특허청은 한국발명진흥회와 함께「찾아가는 직무발명제도 설명회」를 무료로 개최하고 있으니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직무발명제도 열람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의 특허마당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www.kipa.org)의 사업안내

■ 직무발명제도 관련 문의

특허청 산업재산진흥과 042-481-5373
한국발명진흥회 02-3459-2845

2011 직무발명제도 운영 우수사례 공모 안내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는 직무발명제도 운영 우수사례를 발굴·시상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도입을 유도하고 우수 직무발명의 창출과 신기술 개발을 통한 기업 및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공모주제 : 직무발명제도 운영 사례

■ 공모대상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하여 종업원의 직무발명 등으로 사업화 또는 기술이전 실적 및 직무발명 보상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

※ 외국법인 제외

■ 공모기간 : 2011. 10. 7(금)~ 11. 4(금) 18:00 까지

■ 공모방법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에서 공모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이메일, 우편 또는 직접방문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주최 / 주관 : 특허청 주최, 한국발명진흥회 주관

■ 시상내역

- 금상(특허청장상) 1, 은상(특허청장상) 2, 동상(한국발명진흥회장상) 5
- 수상발표 : 11월 중순 개별통보
- 시상식 일시 : '11. 11. 24 (목)
  · 직무발명제도 국제포럼과 동시 개최

■ 특전사항

- 수상기업을 바탕으로 직무발명제도 우수사례집을 발간하여 배포
- 언론사와 협조, 제도운영 우수사례의 기획 홍보 추진
- 수상기업에 대해서는 특허청의 각종 특허기술사업화 지원사업 및 발명의 날 기념식 포상시 가점 부여

■ 문의

한국발명진흥회 발명진흥팀(02-3459-2845), lmh0806@kipa.org

2011 서울국제발명전시회
출품 신청 안내

서울국제발명전시회는 매년 30개국 이상의 세계 최신의 발명품이 전시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 발명·신제품 전문 전시회입니다.

발명품·신제품 홍보 및 기술 거래의 場 "서울국제발명전시회"에서 여러분의 발명품으로 전 세계에 감동을 선사하십시오.

행 사 개 요

- 행 사 명 : 2011 서울국제발명전시회 (Seoul International Invention Fair 2011)
- 주최/주관 :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 기 간 : 2011. 12. 1(목) - 12. 4(일)
- 장 소 : 코엑스 Hall A
- 규 모 : 36개국 651점 (2010년)

신 청 안 내

- 신청기간 : 2011. 8. 2(화) - 10. 20(목)
- 신 청 서 : www.siif.org 또는 www.kipa.org (사업공고 또는 POPUP-ZONE참조)다운로드
- 제출서류 : 출품신청서 및 구비서류 (출품신청서 참조)
- 제출방법 : 우편접수 또는 직접방문 접수 (마감당일 도착분에 한함)

시 상 내 역

- 본 상 : 대상, 준대상, 금·은·동 (상패 또는 메달 및 상장)
- 특 별 상 : 후원기관, 해외유관기관 제공

※ 현지심사에 의한 상격결정 및 12. 3(토) 시상식 개최예정

신 청 서 제 출

- 주 소 :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7-9 한국지식재산센터 18층 한국발명진흥회 발명진흥팀
- 문 의 처 : 02-2-3459-2795, 2796/ siif@kipa.org
- 홈페이지 : www.siif.org

2011 제9회

여성발명경진대회

2011 올해의 여성발명·기업인상

여성들에게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뛰어난 여성발명(기업)인을 발굴, 홍보하기 위한
「제9회 여성발명경진대회」와 「2011 올해의 여성발명·기업인상」의
시상식이 개최됩니다.
실용적인 생활발명품의 산실이 되어 온 「여성발명경진대회」와
발명으로 사업의 성공한 여성들의 모범을 제시할
「2011 올해의 여성발명·기업인상」에 오셔서
여성들의 섬세하고 창조적인 발명아이디어를 만나보세요.

일시 : 2011년 11월 3일(목) 14:00

장소 : 서울 포스틸타워 3층 이벤트홀
(지하철 2호선 역삼역 3번 출구)

문의 : 한국여성발명협회 사무국
전화 02-538-2710 **이메일** kwia@inventor.or.kr

주최 : 특허청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주관** : 한국여성발명협회 KOREA WOMEN INVENTORS ASSOCIATION

후 원 :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여성가족부,
한국발명진흥회, 대한변리사회, 한국특허정보원 등

특허청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한국특허정보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기술유출 관련 범죄 292건

최근 3년간 **산업기밀 유출** 피해 추정액 4조 2,156억 원

아직까지 분쟁 중?

이제 다툴 필요 없습니다
영업비밀 원본 증명 서비스가
해결해 드립니다

www.tradesecret.or.kr

영업비밀 원본 증명 서비스는

전자문서로 보관하고 있는 영업비밀의 유출, 도용 등으로 영업비밀 보유에 대한 증명이 필요한 경우 그 **영업비밀의 존재와 보유시점의 입증을 도와주는 서비스**

특장점

- 한국특허정보원의 공신력을 바탕으로 **안정성이 보장된 서비스**
- 원본 제출없이 전자지문만을 이용함으로써 증명과정에서 **비밀정보의 유출 우려를 근본적으로 차단**
- 워드, 이미지, 동영상 등 **모든 전자파일을 지원**
- 인터넷만 연결되면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이용 가능**

활용대상

아이디어 자료, 연구노트, 설계도면, 거래실적, 재무자료, 마케팅 자료, 고객정보, 계약서 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즈 업체의 영업 노하우, 조리법 등 **원본 증명이 필요한 모든 전자문서**

한국특허정보원 이용문의 전화 : 02)6915-6541 | 대표팩스 : 02)6915-6510 | E-mail : tsecret@kipi.or.kr

호안. 축대. 옹벽을 자연환경으로.....

주식회사 하은 산업의 황토색
볏짚표면 호안,축대, 옹벽은
대한민국 조달 우수물품입니다.

보유기술및 인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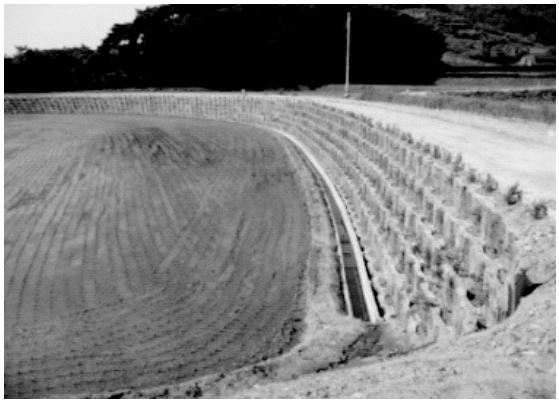

- ⊙한국산업규격(KS) 표지 인증 (KS F 4010)
- ⊙ QMS 인증(DIN EN ISO 9001 인증)
- ⊙ EMS 인증(DIN EN ISO 14001 인증)
- ⊙ 신기술 인증 (NET)
- ⊙ 유망중소기업지정 (충남도지사)
- ⊙ 환경표지인증(호안블록)
-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중소기업청장)
- ⊙ 건 마크 인증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원장)
- ⊙ K 마크 인증 (한국산업기술원장)
- ⊙ 성능 인증 (중소기업청장)
- ⊙ 대한민국ESH가치경영대상(조달청장)
- ⊙ 청양군 최고기업인상 수상(청양군수)
- ⊙우수조달품목 지정(조달청장)
- ⊙ 발명특허:볏짚층이 부착된 환경친화형 조립식 호안블록외11건
- ⊙ 실용신안: 볏짚층이 부착된 호안블록 (축대블록)외9건
- ⊙ 디자인등록: 식생호안블록외14건
- ⊙ 해외디자인 등록:가로수보호의자외3건)

주식회사 하은산업
충남 청양군 화성면 장계리644화성산업단지 10블럭
TEL041)942-8523~4 FAX041)942-8525
http: www.juhaeun.co.kr E-mail: juhaeun@hanmir.com

Nuriplan

Company Making The World Beautiful

2009년 6월1일 GD마크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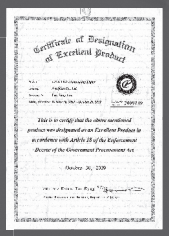

1. SMD TYPE LED
2. SLIM & SIMPLE
3. 다양한 각도 조정의 브라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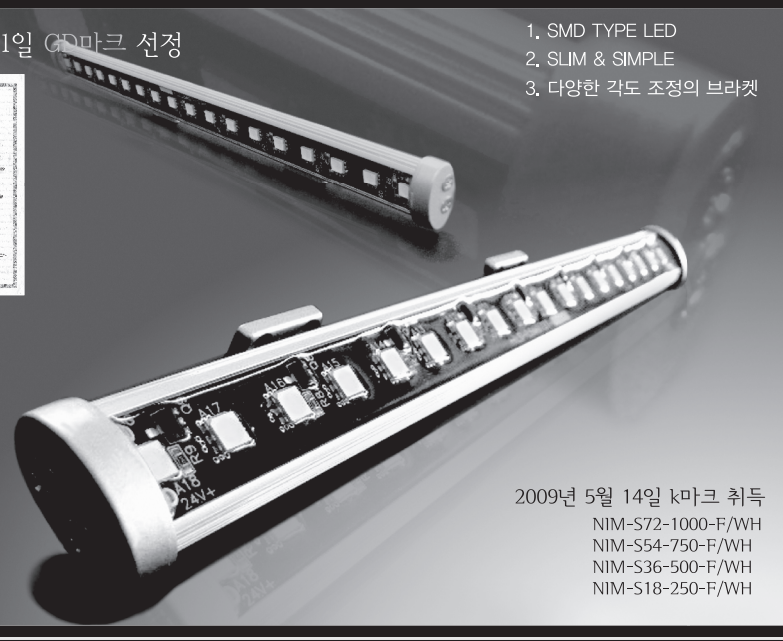

2009년 5월 14일 k마크 취득

NIM-S72-1000-F/WH
NIM-S54-750-F/WH
NIM-S36-500-F/WH
NIM-S18-250-F/WH

아름다운 빛의 근원

SLIM LINE LED

• 설치시공사례

중교

대흥교

2009년 4월 29일 조달청 우수 제품 지정

LED 조명등(NIM-CS1.5W-A)
LED 조명등(NIM-CS6W-A)

0.24W SMD TYPE LED 소자

R·G·B 3COLOR in 1 chip

어둠에서 빛나는 아름다운 눈동자

LED CLUSTER

• 설치시공사례

대전뿌리공원

남지대교

Insertion LED Illuminating Light

• 설치시공사례

강남 자원회수시설

천호 지하 주차장

일반 형광등은 자외선이 발생하나 매입형 LED등기구에서는 자외선을 방출하지 않으며 연간 30Kg의 이산화탄소를 절감하여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의 10대 정책 중 녹색기술개발 성장동력화에 발맞춘 친환경 제품이다.

ECO FRIEND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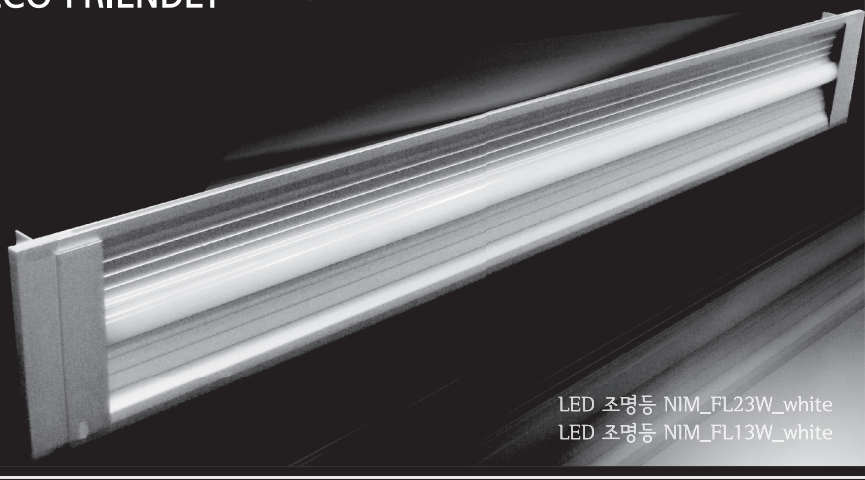

LED 조명등 NIM_FL23W_white
LED 조명등 NIM_FL13W_white

www.nuriplan.com
(137-847)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978-34 누리플랜 B/D
TEL) 02.2679.4100 FAX) 02.3660.4276

KOSDAQ
코스닥상장법인

IP

IP리포트
영국의 특허소송
포커스
특허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
특허확대경
특허법원 2011. 4. 22. 선고 2010허8740 판결에 대한 검토
IP노트
류마티스 관절염을 치료하는 식물특허

Report

영국의 특허소송

우리나라의 주요 경제 교역국 중 하나인 영국의 특허소송 체계, 특허법원 및 소송절차에 대해 살펴 봄으로써 우리나라 발명가와 기업이 영국 및 유럽에서의 특허 분쟁 관련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임 호 순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서기관

Ⅰ. 서론

Ⅱ. 특허소송

Ⅲ. 영국의 특허소송
1. 영국의 사법 제도
2. 특허소송 전담 법원
3. 특허소송 체계
4. 특허 무효심판 및 무효 소송
5. 특허 불침해 선언 청구 제도
6. 특허 침해소송
7. 영국의 지재권 소송 건수(통계)
8. 영국의 특허소송 대리인

Ⅳ. 우리나라의 특허소송

Ⅴ. 결어

6. 특허 침해소송[23)]

특허 침해소송이란 특허의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소송 등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특허침해소송 절차와 영국의 특허침해소송 절차는 내용 면에서는 유사하나, 그 구체적인 절차는 상당히 다르다.

우리나라에서의 소송절차는 대체로 ㉠소장 제출 및 송달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곧바로 재판을 열고 판결을 선고하고,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서면공방절차 시작 ㉢원칙적으로 1회씩의 서면공방과 증거조사, 증인 신청 완료 후 쟁점정리기일 지정 ㉣쟁점정리기일에는 당사자, 대리인이 출석하여 쟁점을 정리 ㉤쟁점정리가 끝나면 집중증거조사기일에 증인을 모두 출석시켜 신문 ㉥판결로써 사건을 종결한다.

한편, 영국에서는 ⓐ소장 제출 및 송달 ⓑ사건관리 컨퍼런스(Case management conference) 개최 ⓒ증거공개

(Disclosure) ⓓ증인진술서, 실험결과서, 전문가의견서 교환 ⓔ요약서면 제출 ⓕ변론 전 검토회의 개최 ⓖ변론 ⓗ판결로써 사건을 종결한다. 아래에서는 위 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가) 소장 제출 및 송달

원고가 특허법원이나 특허지방법원에 특허침해에 관한 소장(claim form)[24]을 제출함으로써 특허침해소송은 시작된다. 소장에는 소송의 종류, 구제방법, 청구의 원인(particulars of claims) 및 법원이 요구하는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특허 침해소송이 제기되면, 소장은 소 제기일로부터 4개월 내에 피고에게 송달되며, 피고가 관할지역 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6개월 내에 피고에게 송달되어야 한다[25]. 피고는 소장을 송달받으면 반박서를 제출하거나 소장 송달 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다. 피고가 원고의 청구 원인에 대해 직접 다투고자 하는 때에는 반반서만을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피고가 반박서 제출 기간 내에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없거나, 법원의 관할권을 다투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장 송달 확인서(acknowledgement of service)[26]를 제출할 수 있다. 이때 소장 송달 확인서는 소장에 청구의 원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장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하고, 소장에 청구의 원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때에는 추후에 청구 원인 송달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피고가 소장 송달 확인서 대신에 반박서(defence)를 제출할 때에는 청구의 원인의 송달일로부터 42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청구는 반박서를 송달받으면 의견서를 21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27]

특허침해소송에서 피고가 반박서를 제출할 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특허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인데 비해[28], 영국에서는 피고가 반박서에 원고의 침해 주장에 대해 반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특허에 대한 무효를 같이 주장할 수 있다. 또한 더 나아가 특허의 무효 또는 침해여부에 관한 반소(Counterclaim)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 역시 소장 송달일로부터 42일 내에 제출되어야 한다.[29]

피고가 소장 송달 확인서 및 반박서 모두를 제출하지 않고 소장에 기재된 구제 방법에 침해금지 청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법원은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는지 여부와 소장 송달 확인서 및 반박서 제출 기간이 초과되었는지를 확인한 후에 변론 없이 판결을 내릴 수 있다.

---

23) 특허청, "유럽특허분쟁지도", 2007.
24) "Civil Procedure Rules" Part7 및 63.5(a)
25) "Civil Procedure Rules" 7.5: Service of a claim form
7.5-(1) After a claim form has been issued, it must be served on the defendant.
(2) The general rule is that a claim form must be served within 4 months after the date of issue.
(3) The period for service is 6 months where the claim form is to be served out of the jurisdiction.
26) "Civil Procedure Rules" 8.3 Acknowledgment of service
8.3-(1) The defendant must (a)file an acknowledgment of service in the relevant practice form not more than 14 days after service of the claim form; and (b)serve the acknowledgment of service on the claimant and any other party.
27) "Civil Procedure Rules" 63.6 Defence and reply
63.6 Part 15 applies with the modification-
(a) to rule 15.4 that in a claim for infringement under rule 63.9, the defence must be filed within 42 days of service of the claim form; and
(b) to rule 15.8 that the claimant must-
(i)file any reply to a defence; and (ii)serve it on all other parties, within 21 days of service of the defence.
28) 우리나라 대법원은 1992. 6. 2. 선고, 91마540 결정(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사건)에서 '특허법은 특허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도로 마련한 특허의 무효심판절차를 거쳐 무효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는 일단 등록이 된 이상 이와 같은 심판에 의하여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유효한 것이며, 법원은 위와 같은 특허를 무효로 할 수 있는 사유가 있더라도 다른 소송절차에서 그 전제로서 특허가 당연무효라고 판단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판시하여 특허침해소송 등을 담당하는 법원이 그 전제로서 침해 여부가 다투어지고 있는 당해 특허의 무효사유에 대하여 심리판단 할 수 없음이 원칙임을 분명히 하였고, 그 이후 이러한 입장은 유지되고 있다.
29) "Civil Procedure Rules" 63.9 Claim for infringement and challenge of validity
63.9-(1) In a claim for infringement or an application in which the validity of a patent or registered design is challenged, the statement of case must contain particulars as set out in the practice direction.
(2) In a claim for infringement, the period for service of the defence or Part 20 claim is 42 days after service of the claim form.

특허 침해소송은 1심에서는 단독 전담 판사에 의해 심리되는데, 통상적으로 특허소송을 담당하는 전담 판사는 기술 및 법률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항소 사건에서는 3명의 법관이 배석하며, 한 명은 특허소송 전담 판사로 구성되며, 미국과 달리 영국에서는 배심원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다.

나) 사건관리회의 (Case management conference)

사건관리회의란 원고측과 피고측이 합의를 통해 앞으로의 소송절차를 정하기 위한 회의를 말한다. 사건관리 회의에서는 당사자의 신청기일, 사건의 내용 등을 감안하여 변론기일까지의 일정을 잡고, 증거공개의 범위(scope of disclosure), 전문가 증인의 채택 또는 실험의 실시 여부 등에 대하여 결정한다. 변론일은 통상적으로 사건관리 회의일부터 9-12개월 기간 내에서 정해진다. 변론 기간은 일반적인 사건의 경우 2일 또는 3일이며, 복잡한 사건인 경우에는 2주 이상 소요될 수도 있다.

사건관리회의에서 소송 일정이 정해지면, 양 당사자가 소송절차의 연기를 동의하더라도 양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 없이는 일정을 조정할 수 없다. 따라서 사건관리회의 이후에는 일방 당사자가 소송을 연기하려 하는 경우 법원은 일방 당사자의 증인이 심각한 병에 걸린 경우와 같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일정 조정을 허락한다.

다) 증거의 공개(Disclosure)

증거공개 단계는 관련 문서를 인부하는 단계, 각각의 당사자가 소지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문서의 목록을 교환하는 단계, 문서 목록상의 문서를 열람하는 단계로 이루어진다. 문서 열람 단계에서, 특권 문서(privileged document)는 열람 대상에서 제외된다.

각 당사자는 자신이 소지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모든 관련 문서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검색할 것이 요구된다. 또한, 증거공개 절차에서는 각 당사자는 법적 특권으로 보호되는 문서를 제외한 상대방의 논거에 불리하게 또는 유리하게 작용하는 문서와, 자신의 논거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이라고 믿는 모든 문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침해로 주장된 행위에 대한 피고의 증거공개 의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침해로 주장된 제품 또는 제조 방법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법원은 간이절차 제도에서 증거공개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증거공개 절차를 생략하도록 할 수 있다. 제3자의 문서가 일방 당사자의 논거를 뒷받침하거나 타방 당사자 중 하나의 논거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제3자에게도 증거공개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예외적으로 소송절차가 공식적으로 개시되기 전에도 증거공개 명령이 발령될 수 있다. 일단 증거공개 절차가 예견되는 경우 각 당사자들은 증거공개 범위에 해당하는 문서들을 보유할 엄격한 의무를 가진다. 따라서, 불리한 문서를 폐기하여서는 아니되며, 만일 관련 문서가 폐기된 경우 법정에서 불리하게 추론될 가능성이 있다. 증거공개의 의무는 소송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계속된다.

라) 실험결과서, 증인진술서, 전문가의견서의 교환

특허 침해소송에서 사실 또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실험이 이용될 수 있다. 한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실험을

행할 경우에는 실험에 의해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 테스트하고자 하는 상세 내역 및 결과를 나타내는 실험 통지서(Notice of experiment)를 상대방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상대방 당사자는 실험의 재현 가능 여부를 검사할 수 있다. 하지만, 실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체 소송비용 중 상당액을 차지하고, 소송 절차를 지연시키는 한 원인이 되기도 한다. 증인의 주요 진술은 증인 진술서(Witness statement)의 형태로 상대방에게 제공된다. 증인 진술서에는 주요 증인의 진술 내용, 즉 법정에서 자기편 법정 변호사의 신문에 답하여 자기편 증인이 진술할 내용을 기재한다. 증인 진술서는 통상 변론일부터 6주 전에 상대방에게 송부된다.

영국의 민사 소송에서는 전문가의 이용을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지만, 특허 침해소송에서는 통상적으로 전문가의 이용이 허가된다. 양 당사자가 전문가의 이용을 신청한 경우 법원은 당사자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공동 전문가 1인의 선임을 명할 수 있지만, 특허소송에서는 공동 전문가의 선임은 부적절하다고 여겨지고 있고, 그 선임이 명령되어지는 일은 없다고 한다. 전문가는 법원에 대하여 협력의 의무를 지고, 법원에 대한 의무는 자신을 고용하여 대가를 지불하는 당사자에 대한 의무보다 우월하다. 전문가 의견의 이용은 감정서 제출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상대방은 1회에 한하여 서면으로 질문할 수 있다. 법원은 양 당사자가 선임한 전문가에 대해 상호 토의를 통해 i)전문적 쟁점을 특정함과 동시에, 가능하다면 합의 의견을 형성할 것, 또는 ii) 합의가 이루어진 쟁점 및 합의가 이루어진 쟁점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를 명백히 하는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각 당사자에 의해 선임된 전문가가 작성한 감정서에는, 침해 여부, 특허의 무효 여부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으며, 특허 발명 및 침해로 주장되는 물품에 대한 기술적 설명과 계쟁특허에 사용된 단어 및 문장에 대한 기술적 의미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다. 전문가 의견서는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지식(common general knowledge)에 대한 주요 증거로 인정된다. 통상적으로, 전문가 의견서는 변론일부터 8주 전에 상대방에게 송부된다.

한편, 특허권자는 침해소송 진행 중에 영국 특허법 제75조에 따른 특허명세서의 정정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특허권자는 이를 법원에 알려야 한다.[30]

마) 변론 전 검토회의 (Pre-trial review)

변론기일로부터 가까운 시점에 각 당사자는 자신의 법률적 주장 및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에 대한 개략적인 주장을 담은 요약 서면을 법원에 제출함과 동시에 상대방에게 송부한다. 변론 전 검토회에서는 쟁점을 최종 확인하고, 변론 일정을 결정하고, 화해를 유도하기 위한 단계이다. 많은 사건에서 이 단계에서 화해가 이루어진다.

30) "Civil Procedure Rules" 63.10
63.10-(1) An application under section 75 of the 1977 Act for permission to amend the specification of a patent by the proprietor of the patent must be made by application notice.
(2) The application notice must (a)give particulars of (i)the proposed amendment sought; and (ii)the grounds upon which the amendment is sought; (b)state whether the applicant will contend that the claims prior to amendment are valid; and (c)be served by the applicant on all parties and the Comptroller within 7 days of its issue.
(3) The application notice must, if it is reasonably possible, be served on the Comptroller electronically.
(4) Unless the court otherwise orders, the Comptroller will forthwith advertise the application to amend in the journal.
(5) The advertisement will state that any person may apply to the Comptroller for a copy of the application notice.
(6) Within 14 days of the first appearance of the advertisement any person who wishes to oppose the application must file and serve on all parties and the Comptroller a notice opposing the application which must include the grounds relied on.
(7) Within 28 days of the first appearance of the advertisement the applicant must apply to the court for directions.
(8) Unless the court otherwise orders, the applicant must within 7 days serve on the Comptroller any order of the court on the application.
(9) In this rule, "the journal" means the journal published pursuant to rules made under section 123(6) of the 1977 Act.

바) 변론(Trial)

변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된 법정에서 이루어지며, 법원은 증인 진술, 전문가 의견 등을 참조하여, 특허청구범위를 해석하고, 계쟁특허의 유무효성 여부를 판단한 뒤, 침해로 주장되는 물품이 유효한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변론시 원고 대리인에 의한 원고측 증인신문 및 피고 대리인에 의한 원고측 증인 반대신문이 이루어진 후, 피고 대리인에 의한 피고측 증인신문 및 원고 대리인에 의한 피고측 증인 반대신문이 이루어진다. 그 후, 변론은 피고 대리인에 의한 최종 진술 및 원고 대리인에 의한 종결 발언으로 마무리된다. 변론은 피고가 원하는 경우, 일부 심리는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으며, 비공개로 진행된 심리에 대한 속기록은 별도로 보관되어야 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 판결문은 2가지 양식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공개될 판결문에서는 기밀 정보가 삭제되어야 한다. 증인은 서면 및 구두로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증인이 추가적인 내용을 추가할 것을 원하지 않으면, 증인 진술은 그 증인의 주요 증거가 된다. 증인 진술 이후, 상대방 당사자에 의한 반대 신문에 의해 구두 증언이 시작된다. 그 후,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반대 신문에서 제기된 쟁점에 대해 증인이 답하는 것을 돕기 위해 재신문을 할 수 있다. 각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전문가 증인을 신청할 수 있고, 상이한 여러 분야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2명 이상의 전문가를 증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일방 당사자에 의해 선임되지만, 기술적 문제에 관한 자신의 독립적인 의견을 법원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문가의 의견은 종종 특허 분쟁 소송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사) 판결

판결문은 서면으로 주어지며, 변론일로부터 4주 내지 8주 내에 송달된다. 영국에서의 특허 침해소송에서는 침해를 인용하는 판결은 이른바 일반 침해 금지 명령(general injunction)으로서 판결 주문은 '피고는 원고의 특허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라는 일반적인 내용이 된다. 판결 주문이 일반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지더라도, 영국에서는 소송 결과의 집행을 면탈하는 행위는 법원 모독으로서 강력한 제재를 받기 때문에, 일반 침해금지의 판결의 집행이 문제되는 경우는 없다고 한다.

아) 불복 절차

특허법원 및 특허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한 불복하는 경우, 원심 판결일로부터 14일[31] 이내에 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항소법원에 항소하기 위해서는 1심 법원의 허가, 또는 1심 법원이 허가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항소법원의 허가[32]가 필요하지만, 특허 침해소송 사건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항소심은 사실심이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1심 판결의 검토를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1심에서와 같은 증인 진술 및 전문가 의견 청취는 행해지지 않고, 1심에서 제출되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의 제출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므로, 소송기간은 1심보다 짧다. 통상적으로 항소법원에서의 소송 절차는 약 1년 정도 소요된다. 판결문은 서면으로 주어지며, 공판일로부터 6주 내지 8주 내에 송달된다. 항소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최고법원 또는 항소법원이 허여하는 때에 한하여 상고할 수 있으며, 특허 사건에 대해 상고가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상고심은 법률심이며, 소송기간은 통상적으로 1년 내지 2년이다.

7. 영국 지재권 소송 건수(통계)

● 1심 건수(출처: 영국 법무부 사법통계)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Confidential information	11	3	21	23	95
Passing off and trade marks	105	50	118	142	171
Patents and registered designs*	54	57	111	111	130
Copyright and design right*	148	120	172	286	374

*는 특허법원(Patents Court) 관할사건

● 2심(Patents Court 결과 불복) 건수: 26건('05) → 23건('07) → 14건('10)

8. 영국의 특허소송 대리인

우리나라의 특허소송 대리인은 크게 변호사와 변리사로 구분된다. 변호사는 특허침해소송 및 심결취소소송(특허행정소송)에 대한 대리권이 있는데 비해, 변리사는 심결취소소송에 대한 대리권만 있다. 한편, 영국의 특허소송 대리인은 크게 법정변호사(Barrister), 사무변호사(Solicitor), 특허변리사(Patent Agent)로 나눌 수 있다.

가) 법정변호사(Barrister)

법정변호사는 법정에서 의뢰인을 대신하여 변론할 수 있는 권한인 법정변론권(Rights of audience)을 가지는 변호사로, 당연히 특허법원, 항소법원 및 대법원에서의 특허사건에 대한 법정변론권은 법정변호사에게 있다. 법정변호사는 사무변호사와 협의하여 사건의 변론에 참여하고, 의뢰인에게 직접 법률 상담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영국의 법학 전공자가 법정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법정변호사 실무과정(Bar Vocational Course, 1년)을 수료한 후 로펌에서 1년간의 실무연수를 마쳐야 한다. 영국의 비 법학 전공자가 법정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법학 전공자에 비해 한 가지 과정이 더 필요한데, 법정변호사 실무과정 전에 1년간의 공통전문시험과정(CPE, Common Professional Examination)을 마치고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것이다.

나) 사무변호사(Solicitor)

사무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소장을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인 소송수행권(Rights to conduct litigation)을 갖는다. 의뢰인을 직접 접견하여 법률상담을 진행할 수는 있으나, 원칙적으로 법정변론권은 없다. 그러나 "Courts and Legal Services Act 1990"에 의해, 일정한 실무과정을 연수하면 사무변호사도 법정변론권을 갖는다. 영국의 법학전공자는 법률실무과정(Legal Practice Course, 1년)을 수료한 후 로펌에서 2년간의 실무연수를 마쳐야 한다. 비 법학 전공자는 법률실무과정 이전에 1년간의 공통전문시험과정(CPE, Common Professional Examination)을 마치고 시험을 통과한 뒤에 법률실무과정 1년, 로펌에서 2년간의 실무연수를 거쳐야 한다.

다) 특허변리사(Patent agent)[33]

특허변리사는 특허 및 디자인, 상표 및 저작권에 관하여 특허청에서 대리업무를 할 수 있다. 특허변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공계 학위를 소지해야 하고, Patent Agent 시험에 합격

31) "Civil Procedure Rules" 52.4 appellant's notice
52.4-(1) Where the appellant seeks permission from the appeal court it must be requested in the appellant's notice.
(2) The appellant must file the appellant's notice at the appeal court within
(a) such period as may be directed by the lower court; or
(b) where the court makes no such direction, 14 days after the date of the decision of the lower court that the appellant wishes to appeal.

32) "Civil Procedure Rules" 52.15 Judicial review appeals
52.15-(1) Where permission to apply for judicial review has been refused at a hearing in the High Court, the person seeking that permission may apply to the Court of Appeal for permission to appeal.
(2) An application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must be made within 7 days of the decision of the High Court to refuse to give permission to apply for judicial review.

하여야 한다. 특허변리사 시험에 합격한 자는 특허변리사의 감독하에 최소 2년간의 실무경력을 거쳐야 특허변리사로 등록할 수 있다. 한편, 영국특허변리사협회(CIPA)로부터 '소송인가장(Litigation Certificate)'을 받은 변리사는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전반에 관한 소송 수행도 가능하다. 3년 이상 특허변리사협회의 정식회원으로 등록된 변리사가 위 협회가 주관하는 소송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정식 소송자격을 갖는 자의 지도하에 6개월 이상의 실무수습을 거치면 소송인가장 부여된다. 소송교육과정은 대학 등 외부 교육기관에 위탁하고, 소송절차, 증거법 등 소송관련 실무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과목으로 구성된다. 소송인가장을 받은 특허변리사는 특허지방법원, 지방법원, 특허법원 및 항소법원에서의 특허, 디자인, 기술정보에 관련되는 저작권, 상표사건 등에 대한 소송수행권(rights to conduct litigation)이 부여된다. 다만, 소송인가장을 가진 특허변리사라 하더라도 특허법원 이상의 소송에서는 법정변론권이 없으므로, 법정에서의 변론을 위해 법정변호사(Barrister)와 공동으로 대리 하여야 한다.

Ⅳ. 우리나라의 특허소송

우리나라 특허소송의 가장 큰 특징은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이원화 체계이다. 즉 특허거절불복·무효여부와 관련된 소송(심결취소소송[34])은 특허심판원(행정심판) → 특허법원(제1심) → 대법원(제2심)의 순서로 진행되고, 특허침해와 관련된 민사소송은 지방법원(제1심) → 지법항소부·고등법원(제2심) → 대법원(제3심)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최근 지재권이 기업 활동의 중요한 지표로 부상하면서 지재권 관련 분쟁도 아래와 같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현행 우리나라의 지재권 소송구조에서는 특허침해소송과 동시에 특허무효·권리범위확인에 관한 소송을 중복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특허소송 당사자는 기술내용이 동일한 특허에 대해 민사법원과 특허법원에서 중복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되므로 시간과 비용이 이중으로 들게 된다. 최근 연구자료[35]에 의하면 2000년~2009년에 선고된 특허침해소송 408건 중 52%(213건)가 무효·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이중으로 수행하였다. 또한 연계된 심판건수는 360건으로 소송 1건당 심판을 1.7건 중복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위 특허침해소송 408건의 제1심 평균심리기간은 16.6개월이었고, 이와 연계된 무효·권리범위확인심판사건 360건의 평균심리기간은 10.0개월이었다. 또한 특허침해소송을 다루는 민사법원 중 일부는 연간 특허사건의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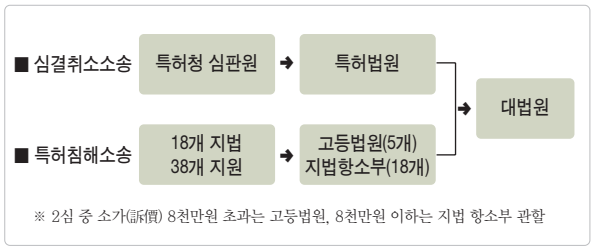

〈현행 우리나라 지재권 소송 구조〉

구분	특허심판원 심결건수	심결취소소송 건수		침해소송 접수 건수		
		특허법원 판결건수	대법원 판결건수	침해 1심	침해 2심	대법원
2006	10,334	1,191	472	125	20	6
2007	11,626	1,251	520	70	25	6
2008	11,628	1,566	581	74	28	8
2009	9,764	1,203	556	129	41	14
2010	9,274	1,013	399	184	54	14

(출처 : 특허청 2010 지식재산통계연보, 대법원 2010 사법연감)

〈지식재산권 소송 처리 건수〉

가 매우 적어 다른 분야보다도 더욱 전문성을 요구하는 특허소송의 정확한 해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매년 특허침해소송의 80% 이상이 서울중앙지방법원(제1심), 서울고등법원(제2심)에 집중되어 있고, 다른 지방법원·고등법원은 연간 처리건수가 5건 내외이기 때문이다. 한편, 심결취소소송만을 전담하는 특허법원은 14명의 판사, 17명의 기술심리관으로 4개 재판부가 구성되어 있으며 연간 1,200여건의 지식재산에 관한 무효 권리범위·거절불복 사건만을 전담하여 처리하고 있다.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1심	1심 소계	125	70	74	129	184
	서울중앙	86	33	37	75	153
	서울동부	4	3	3	7	4
	서울남부	3	2	1	4	1
	서울북부	2	0	3	2	3
	서울서부	2	3	5	5	1
	의정부지법	2	0	1	11	3
	인천지법	3	2	1	3	2
	수원지법	3	4	4	6	1
	춘천지법	2	0	1	2	0
	대전지법	2	6	2	3	6
	청주지법	1	0	2	0	0
	대구지법	3	8	7	3	4
	부산지법	7	7	3	3	2
	울산지법	0	0	0	0	0
	창원지법	0	2	1	0	2
	광주지법	3	0	1	4	1
	전주지법	0	0	1	1	1
	제주지법	2	0	1	0	0
2심	2심 소계	20	25	28	41	54
	서울	16	19	22	36	51
	대전	0	1	3	0	1
	대구	1	0	0	3	2
	부산	2	4	1	1	0
	광주	1	1	2	1	0
대법원		6	6	8	14	14
합 계		151	101	110	184	252

(출처 : 사법연감)

〈법원별 특허침해소송 접수 건수〉

V. 결어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영국의 특허소송 체계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우리나라와 약간의 차이가 있다.

첫째, 우리나라는 특허소송을 특허행정소송과 특허침해소송으로 이원화하여 각각 다른 법원의 관할로 하는데 비해, 영국은 특허소송의 신속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법원으로 특허지방법원(Patents County Court)과 특허법원(Patents Court)을 두고 제1심 관할을 집중하고 있다.

둘째, 우리나라는 특허의 무효에 관해서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고 반드시 특허심판원의 심판을 통해 해결하는데 비해, 영국은 제3자가 특허청 또는 법원에 선택하여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셋째, 우리나라와 달리 영국은 변리사에게도 일정한 요건하에 특허침해소송에서의 대리권을 부여하고 있다.

넷째, 우리나라는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제3자(소극) 또는 특허권자(적극)가 각각 청구할 수 있는데 반해, 영국의 특허불침해 선언 청구는 제3자가 특허권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편, 세계 각국은 특허소송의 전문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특허소송의 전문화를 꾀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영국 외에 일본도 2005년에 일종의 특허법원인 지적재산고등재판소를 신설하여 특허행정소송과 특허침해소송 제2심을 일원화하고 변리사에게 변호사와 공동소송 대리권을 부여한 바 있다. 또한 미국은 1982년에 특허소송 제2심의 관할을 집중하기 위해 지재권 전문법원(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s)을 설치하였다. 이러한 세계 각국의 특허소송 전문화 경향을 반영하여 우리나라도 바람직한 특허소송 체계에 대한 새로운 방향 정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11. 10

33) "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 제274조 Persons permitted to carry on business of a patent agent.
(1) Any individual, partnership or body corporate may, subject to the following provisions of this Part [and to the Legal Services Act 2007] , carry on the business of acting as agent for others for the purpose of–
(a) applying for or obtaining patents, in the United Kingdom or elsewhere, or
(b) conducting proceedings before the comptroller relating to applications for, or otherwise in connection with, patents.

34) 특허법 제186조(심결등에 대한 소) ① 심결에 대한 소 및 심판청구서나 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35) 특허청, "관할집중 방향수립을 위한 특허소송 판결 현황분석", 2010.

특허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

특허분산 효과, 기술대안 효과, 법제도적 특성에 대해 알아보자.

오 병 석
지현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기업 간 경쟁과 핵심 특허의 분산

연구/개발 경쟁과 필수 특허의 분산

1960년대 말 미국은 새로운 노다지 산업의 등장에 대한 기대로 한껏 부풀어 올랐다. 대량의 정보를 모래 추출물로 만들어진 손톱만한 크기의 네모난 조각에 저장할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바로 반도체 메모리였다. 이전까지 디지털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 사용되던 것 중에는 도넛처럼 생긴 작은 자석인 마그네틱 코어라는 것이 있었다. 이러한 마그네틱 코어를 사용해서 1메가 비트(1 Mega bit = 1,048,578 bit)의 데이터를 저장하려면, 백만 개 이상의 마그네틱 코어를 가로 세로로 엮인 철사들 사이에 꽂아 넣어야 했다. 넓은 미국땅이라고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무리가 있었다. 대안으로 드럼통 둘레에 마그네틱 테이프를 붙여 사용해 보기도 하는 등 다양한 시도가 있었으나, 당시엔 관련된 많은 기술들이 부족한 상태인지라, 여의치 않았다. 이러던 와중에, 실리콘 반도체를 이용해서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시된 것이다.

이제 새로운 금맥이 발견된 것 같았다. 많은 기업들이 자신들의 주력 사업 영역과 무관하게 많은 투자를 과감히 결정하고 연구에 돌입했다. 수년에 걸쳐 성능 좋고 효율적인 메모리를 개발하기 위해 많은 기술들이 발명되고 사라졌다. 결국, 상업적으로 의미 있는 메모리의 기술적 구조와 사양들이 결정되고 양산에 성공했으며, 초기에 연구 개발에 뛰어든 회사들은 소위 말하는 원천 특허(제품 생산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 기술에 대한 특허)들도 다수 확보할 수 있었다. 이제 열심히 찍어내고 팔기만 하면

될 일이었다.

그런데 시장에선 여전히 극심한 경쟁이 사라지지 않았다. 채산성은 나날이 떨어졌고 초기에 많은 투자를 했던 회사들 중에서, 특히 많은 원천 특허들을 보유한 인텔 같은 회사도 메모리 사업에서 철수하고 프로세서 사업에 전념하기로 하거나 IBM도 메모리 사업은 접고 시스템 사업에 주력하는 등, 하나 둘씩 사업을 정리하고 시장에서 떠나는 기업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심지어 80년대 후반이 되자, 미국 기업에 이어 시장에 쫓아들어갔던 일본 기업들에 이어 한국 기업들까지 시장에 진입하려고 하자 반도체 메모리 시장은 대혼란으로 빠져들었다. 이들 한국 기업들은 그 당시 원천 특허는커녕 단 한 건의 관련 특허조차 갖고 있지 않은 상태였다. 기존 기업들은 자신들이 가진 원천 특허를 이용해 본격적인 공세를 가하기 시작했다. 인텔, IBM, 텍사스 인스트루먼트(Texas Instru-ment)를 위시한 선발 기업들이 엄청난 양의 로열티를 요구하며 한국 기업들을 시장에서 추방하기 위해 노력했고, 그들은 한국 기업을 상대로 한 대부분의 특허 침해 소송에서 승소하거나 로열티 협상에서 한국 기업들을 굴복시켰다. 그러나,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 세계 반도체 메모리 시장의 점유율은 한국의 기업들이 가장 높게 차지하고 있다. 그 많은 원천 특허는 모두 어디로 가고 관련 특허 한 건 없던 한국 기업들이 이렇게 멀쩡히 시장에서 활보할 수 있는 것인가? 과연 특허의 시장 방어력은 애당초 존재하기라도 했던 것인가?

특허 분산 효과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반도체 메모리 산업 분야에서는, 초기에 여러 기업들이 동시 다발적 연구 개발 경쟁을 벌였다. 그 결과, 연구 개발을 통해 창출된 반도체 메모리의 필수 기술들에 대한 특허들이 몇 개의 기업들 사이에 분산되어 소유되는 상태가 되었다. 이들은 상호 간에 서로의 필수 특허를 사용해야 했으므로 특별한 분쟁 없이 양산에 돌입했고 시장은 급속도로 커졌다. 그러자 후발 업자들이 시장에 진입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일본의 기업들이었다. 이 일본 기업들은 미국 회사가 개발해 놓은 기술을 이용해 특유의 섬세함으로 더 저렴한 제품들을 출시하기 시작했다. 시장은 혼란스러워졌고 영업력과 효율성에서 뒤쳐진 일부 선발 기업들은 시장 점유율에서 밀리기 시작했다. 일본 기업들은 더욱 무서운 기세로 생산 규모를 확대했고 대량 생산으로 인해 가격은 더욱 떨어졌다. 결국 일부 선발 기업들은 시장에서 철수할 것을 결정하고 대신 가지고 있는 필수 특허에 대한 로열티를 받는데 만족하기로 한다. 그러나 이것은 후발 기업들에게는 도리어 합법적인 시장으로의 입장권이 되는 셈이었다. 매출의 극히 일부[1)]에 불과한 로열티를 지불하는 대신 생산성을 그만큼 향상시키는 방법을 추구하면 되었던 것이다. 80년대 들어서자 한국 기업은 일본 기업의 이러한 방식을 그대로 흉내 내며 시장에 진입했고, 더욱 저렴한 메모리를 만들고자 노력했으며, 80년대 말에는 일본 기업의 전철을 밟으며 역시 대대적인 특허 소송에 휘말렸다. 그러나 이들은 95%가 넘는 실로 놀랄만한 수율을 자랑하며 수천만 달러에 달하는 로열티를 이겨나갔다. 이후 한국 기업들은 기존 기업의 특허를 구매하거나 자체적으로 특허를 획득해 나가면서 지불 로열티의 총액을 감소시키게 되고, 그만큼 선발 기업들의 특허에 의한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된다.

즉, 초기의 연구 개발 경쟁으로 인해 당해 제품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 기술들에 대한 특허들이 몇 개 기업들 사이에 분산되어 소유된 경우, 이들 원천 특허를 보유한 기업들 중 일부가

1) 통상 반도체 산업에서 특허 로열티는 매출의 약 1% 전후에서 합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장 경쟁에서 탈락하게 되면, 나머지 기존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신규 진출 기업에 대한 특허의 시장 방어력이 급속히 약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이것은, 경쟁에서 뒤처진 기업이 특허를 행사해서 시장을 방어하는 대신, 후발 기업들에게 로열티를 징수하거나 특허를 판매(보통은 생산 설비와 함께)함으로써 금전적 수입을 얻는 것이 더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이것을 '특허 분산 효과'라 부르자.) 이러한 특허 분산 효과로 인해 한 기업이 필수 특허를 모두 보유하는 경우에 비해, 몇 개 기업이 필수 특허들을 분산하여 소유하는 경우 특허의 가치는 외부로 드러나지 않게 된다. 이것은 후발 기업이 새로이 시장에 뛰어들지 않아도 마찬가지이다. 기존 기업들 사이에 필수 특허가 거의 대등한 정도[2]로 분산되면, 이들 상호 간에는 특허에 의한 시장 보호력이 평형을 이루게 되어 이들 사이의 시장 경쟁에 있어서 특허의 영향은 외부에서는 잘 보이지 않게 된다. 예를 들어, P&G와 킴벌리 클락은 기저귀에 관한 특허로 일승 일패를 거두었다. 이 기저귀 특허 전쟁에서의 승자는 역시 변호사들뿐이었다. 하지만 둘 중 하나의 기업이 특허를 갖고 있지 못했다면 양상은 달라졌을 것이다. 이런 경우 이들은 서로를 압도하기 위해 특허 이외에 다른 경쟁 요소를 확보해야 할 필요가 생긴다. 이러한 상황을 아래 [그림 1]에 요약했다.

그렇다면, 하나의 기업이 특정 제품의 필수 특허를 모두 확보하고 있다면 그 기업의 시장 지배력이 강화되는 예가 있을까? 필자는 자체적으로 잉크젯 프린터의 하드웨어에 대한 한국 특허를 조사해 본 적이 있다. 필자의 조사에 의하면 한국에 등록된 잉크젯 프린터 하드웨어에 관련된 필수 특허는 휴렛-패커드(HP) 한 회사가 거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대부분은 1996년도 이전에 출원된 것들이었다. HP는 이미 80년대 후반부터 잉크젯 방식의 프린터 연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고 한다. 잉크젯 프린터의 하드웨어는 그 구조가 그다지 복잡할 것이 없어서 많은 기술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때문에 HP는 본격적으로 시장이 형성되기 이전에 이미 필요한 대부분의 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을 것이다. 1996년 이후에도 HP는 잉크젯 프린터와 관련된 한국 특허를 상당수 출원하고 있었으나, 그 대부분은 잉크나 용지 또는 화질 개선 알고리즘 등에 관련된 것들이었다. 캐논이나 세이코 엡손과 같은 회사들도 이 분야에서 한국에 많은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 받고 있었으나 이 회사들의 특허는 대부분 96년도 이후에 출원된 것들이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이 분야의 세계 1위는 HP이다. 또한, 폴라로이드 역시 필요한 특허를 집중 확보함으로써 코닥과 같은 회사를 시장에서 철수시키는 데에 성공한다. 폴라로이드는 인화지를 신속히 현상시키는 현상액에 관한 물질 특허들을 500건도 넘게 보유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에 비해 코닥은 즉석 인화 카메라에 필요한 특허들을 한 건도 보유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3]

이러한 특허 분산 효과가 특허의 실질 가치를 저하시키는 정도까지 영향을 줄 것인가? 실제로 기업들이 어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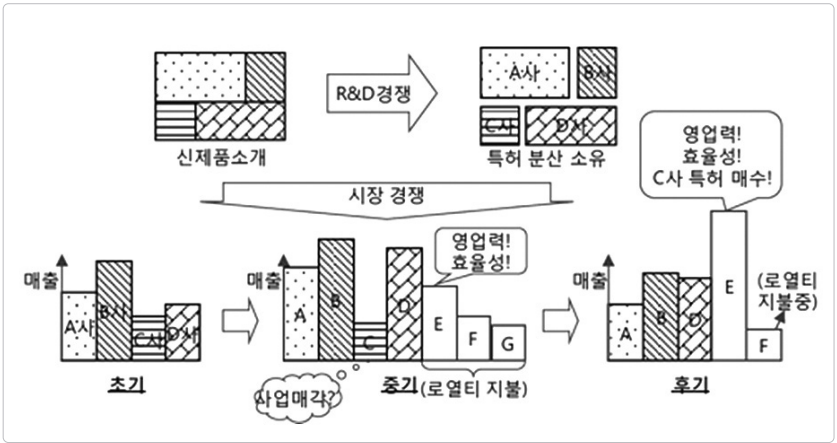

[그림 1. 기업간 경쟁과 특허 분산 효과]

정도의 로열티 금액을 주고 받는가에 관하여는 양측 모두 기밀로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극히 조사하기 어렵다. 하지만 다른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휴대 전화 분야에서 퀄컴이 제시하는 로열티 수준과 GSM 진영이 제시하는 로열티 수준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이 하나의 힌트가 될 것이다. 사실 최근의 사정을 보면 퀄컴이 예전과 같은 도도한 자세로 나올 여유는 별로 없어 보인다.(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한다.) 하지만 GSM과 같은 대안이 없었다면 어떨까? 역으로, CDMA와 같은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어느 한 기업이 GSM에 관한 모든 특허를 독점했다면 상황은 어떻게 되었을까? 또 다른 예로, 아래에 설명하는 특허풀이라는 것이 대체로 상당히 저렴한 수준의 로열티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도 역시 이 질문에 대한 좋은 힌트가 될 것이다. 또한 특허 분산 효과는 특허가 창출할 수 있는 경제 효과 중 시장 효과를 현저히 약화시킴으로써 특허의 실질 가치를 저하시킨다.

양날의 특허풀

현재 휴대용 MP3 플레이어의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는 애플이다. 그러나 애플의 아이팟이 등장하기 전에는 한국의 레인컴이라는 회사가 플래시 메모리 타입 시장에서 1위를 석권하고 있었다. 이 회사는 지금도 애플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 회사는 MP3에 관련된 특허는 단 한 건도 갖고 있지 않다. 애플도 MP3 플레이어와 관련해서는 사정은 별로 다르지 않다. 그렇다면 MP3와 관련하여 그렇게 많은 특허를 가지고 있고 초창기 MP3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약했던 필립스 같은 회사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MP3와 관련된 특허들은 특허권자들로부터 독립된 별개 법인인 MPEG LA LLC라는 회사가 일괄하여 관리한다고 한다. 이들은 MPEG 압축 알고리즘 기술 등과 관련된 특허들을 원하는 기업에게 비차별적으로 라이센싱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한다. 특히 특허권자나 실시 희망자의 어느 쪽으로부터도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라이센싱을 할 수 있어, 매우 성공적인 특허 활용 모델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고 한다. 무엇보다도 특허권자와 실시 희망자 사이에 불필요한 분쟁이나 소송을 피할 수 있고, 로열티 금액이나 기타 조건에 차별이 없는 공정한 라이센싱이 가능하다는 것이다.[4)]

그러나 이러한 개방적, 비차별적 및 일괄 라이센싱은 제품 생산에 필요한 기술을 갖지 못한 후발 기업들에게 합법적인 시장 입장권을 아주 손쉽고도 헐값으로 발행해 주는 것이며, 그로 인해 시장 전체를 내어주는 결과를 가져오게 만들었다. 앞에서 보았듯이 필요한 특허들이 경쟁사 간에 분산된 경우, 특허권자들이 후발 기업에게 특허 기술의 실시권을 허락하지 않더라도 특허의 시장 보호 효과는 현저히 저하될 수 있다. 하물며 필요한 특허를 모두 모아 한꺼번에 실시권을 허락하는 방식은 그저 시장을 양도하는 것이나 다름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특히 MPEG LA와 같이 비차별적 실시 허락 방식을 택하는 경우, 로열티 금액이 너무 높으면 자금력이 부족한 후발 기업을 유인하기 어려울 것이며 이들 중 일부가 실시권 없이 제품을 출시하는 경우 이것을 그냥 방치할 수도 없는 곤란한 상황에 처할 것이 뻔하다. 그러므로 비차별적 실시 허락 방식을 택한다는 것은 대체로 자금력이 부족한 회사라도 기꺼이 로열티를 지불하

2) 어느 정도가 대등한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제8장을 참조하라.
3) 물론 폴라로이드는 지금 대부분의 사업 분야에서 사라졌다. 그러나 폴라로이드를 소멸시킨 것은 디지털 카메라라는 새로운 상품이었다. 여전히 디지털 카메라는 별도의 프린터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종이로 된 사진을 즉석에서 현상하지 못한다. 디지털 카메라와 폴라로이드식 즉석 사진기를 결합시키면 어떨까?
4) MPEG LA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www.mpegla.com 참조

는 쪽으로 기울 수 있을 정도로 낮은 금액이 제시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실제로 MPEG LA의 홈페이지에 제시되어 있는 로열티 금액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수준의 로열티는 사실상 통상 행해지는 할인 행사에서의 제품 가격을 할인해주는 것에 비하면 거의 무시해도 좋은 금액인 것이다. 이것이 애플이나 레인컴 같이 이 분야의 특허를 거의 갖고 있지 않은 회사들이 수많은 관련 특허를 가진 필립스나 소니 같은 회사와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배경 중의 하나이다. 물론 이것은 단지 특허권자의 선택의 문제일 수도 있다. 이 분야에서도 이미 많은 필수 특허들이 분산되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후발 기업들의 등장과 역전을 특허로 방어하기엔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오늘도 많은 경영자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아직은 설익은 기술적 성과를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경쟁사들은 이러한 정보를 검토하여 자신들도 이 분야에 도전해 볼 수 있을지를 검토하고, 일부는 실제로 뒤쫓아 뛰어든다. 동일한 목표를 향해 뛰는 연구원들은 결국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술적 과제에 직면하게 되고 결국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솔루션들을 찾아낸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필수 특허가 경쟁사들 사이에 분산된다. 그리고는 사업적으로 가장 부실한 경쟁사로 인해 시장은 혼란으로 빠져든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먼저 일단은 좀 조용히 할 필요가 있다. HP가 잉크젯 프린터를 만들던 과정에서 그 성공 여부가 불투명했기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어떤 다른 전략적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어떻든 HP는 자신들의 잉크젯 프린터 프로젝트에 대해서 그다지 홍보에 열을 올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어쩌면 다른 기업들이 HP의 홍보에 무관심했는지도 모를 일이긴 하다.) 어떻든 HP가 필요한 특허들을 모두 확보할 때까지 경쟁사들은 이와 관련한 중요한 특허들을 보유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HP가 현재 잉크젯 프린터 시장에 가격의 거품을 만들고 있는 것도 아니고, 보유한 특허를 통해 로열티를 수취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며, 소비자들이 자신의 추억이 담긴 예쁜 사진을 인화하지 못한 채 모니터에서만 보고 있는 것도 아니다. 설익은 기술에 대한 조급한 홍보는 기업 이미지나 주식 가격에 영향을 주고 싶은 욕심에서 비롯되는 것인지도 모른다. 또는 무언가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지 않을 수 없는 초고액 연봉의 경영진들이 자신의 자리를 보전하기 위한 액션인지도 모르겠다.

후발 기업의 전략

한편으로, 특허 분산 효과는 유력한 원천 특허들이 이미 선발 기업들에 의해 선점당한 상황에서 뒤늦게 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후발 기업들에게 유용한 특허 전략의 하나로서 힌트가 될 수 있다. 즉, 선발 기업들 사이에 필수 특허들이 어느 정도로 분산되어 있는지를 검토하여 아직 선점되지 않은 필수 기술이 있다면 이를 신속히 자신의 특허로 확보하는 것이다. 또는, 타인에게 선점된 필수 특허들 중에 직접적 경쟁 관계가 없는 특허권자(주로 개인 발명가, 대학 또는 사업에서 철수했거나 철수를 검토 중이거나 자금의 어려움을 겪는 회사들 등)로부터 이를 양수해 오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지불해야 할 로열티의 금액을 현저히 낮추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없애거나 심지어 로열티 수입을 챙길 수도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가능성은 기업 간 매출액의 차이나 특허 기술의 제품 기여도의 차이 등에 따라 지불해야 할 손해 배상액 또는 로열티 금액에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인데, 이에 관해서는 제7장에서 더욱 자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만약 모든 필수 기술들이 이미 선발 기업들에게 선점되었다면, 그때는 가장 실적이 취약한 선발 기업을 시장에서 철수시키는 전략을 택할 수 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로열티를 지급하고도 당분간 사업을 지속할 수 있을 정도의 생산성을 달성할 수 있거나 그만한 자금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것도 아니라면, 특허권을 선점한 기업

들이 MPEG LA와 같은 특허 풀을 형성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실시 허락을 원하는 기업들(Licensee)이 컨소시엄을 맺어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즉, 기꺼이 로열티를 지급하겠으나 어떠한 특허권자에게도 차별 대우를 할 수는 없으며 또 어떠한 후발 기업이라도 차별 대우를 받고 싶지는 않으니, 모두에게 공정한 조건으로 라이센싱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을 하는 것이다. 만약 개별 특허권자가 이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라이센시들의 컨소시엄이 그 특허권자를 상대로 정당한 조건의 라이센싱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집단으로 진행하면, 개별 기업 간의 협상력 차이에 의해 손해를 볼 염려를 상당히 감소시키면서 합법적인 시장 진입 티켓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자유 기술 대안의 영향

1 **첫 번째 질문** : 출발지에서 목적지로 가는 길이 세 가지 있다고 하자. 이 세 개의 도로 중,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유료이고, 나머지 하나는 통행료가 없다. 체증이나 신호등과 같은 조건들이 대체로 비슷하다면, 당신은 어느 길을 통해 목적지까지 가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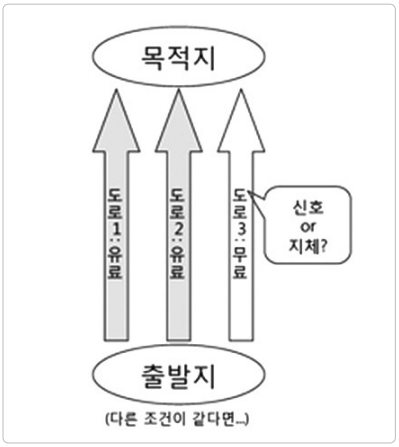

[그림 2. 유료 도로와 자유 도로]

2 **두 번째 질문** :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고 그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세 가지 있다고 하자. 첫 번째와 두 번째 해결책은 이용료를 지불해야 하고, 세 번째는 무료이다. 당신은 어느 솔루션을 이용하겠는가.(여기에서도 다른 조건은 대체로 비슷하다고 하자.)

왠지 모를 불안감에 시달리지만 않는다면, 두 질문의 답은 모두 세 번째가 될 것이다. 특히 기술적 과제에 대한 해결책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 그 성과 달성 수준이 다소 떨어질지라도 무료인 솔루션을 선택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것은 수많은 무료 소프트웨어와 불법 소프트웨어의 범람에 의해 쉽게 입증된다. 또 다른 예로서, 인공 감미료를 생각해 보자. 사카린이 설탕을 대신하여 널리 이용된 적도 있었으나, 그 부작용이 알려지면서 새로운 인공 감미료들이 등장하였다. 그 대표 주자가 아스파탐이다. 아스파탐은 최근 20여 년간 상당 부분 설탕을 대신해 왔다. 그 아스파탐에 대한 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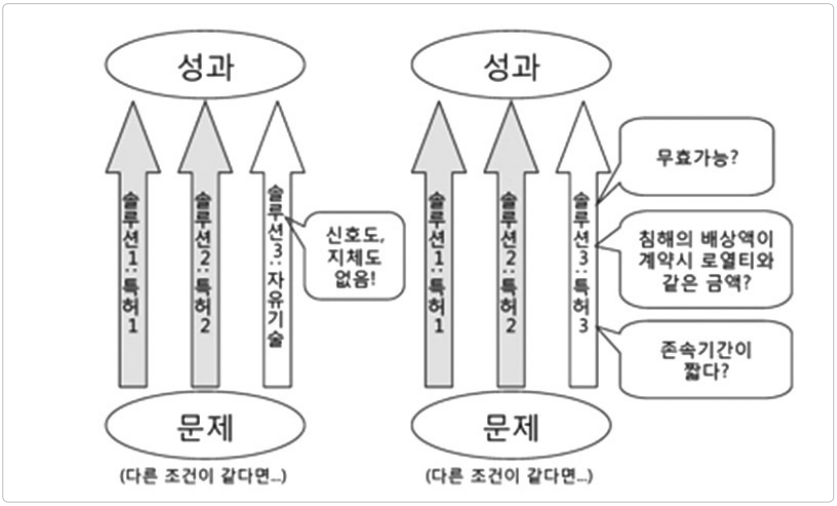

[그림 3. 유료 기술과 자유 기술]

허가 2000년대 초에 기간 만료로 소멸되었다. 아스파탐 특허가 소멸된 지금도 여전히 다른 인공 감미료가 개발되고 있고 특허로 등록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인공 감미료 특허는 어떤 가치를 갖는가? 인공 감미료 시장에 새로 진입하고자 하는 기업은 이 새로운 인공 감미료 특허에 유혹을 느낄 것인가, 아니면 더이상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아스파탐에 유혹을 느낄 것인가?

결국 인공 감미료 특허의 소멸로 인해, 그동안 아스파탐에 대항하여 나름의 가치를 갖던 다른 인공 감미료에 대한 특허들이 아스파탐 특허의 소멸과 함께 그 가치를 잃은 것이다. 유일한 희망은 아스파탐에 비하여 이들 다른 인공 감미료에 대해 시장에서 더 나은 평가를 내려주기를 바라는 것인데, 예컨대 훨씬 더 적은 양만 사용하여도 비슷한 정도의 단 맛을 느낄 수 있다거나, 정말로 부작용이 전혀 없을 뿐더러 도리어 건강에 좋다거나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면 혹시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과연 아스파탐보다 더 적은 양을 사용하면서도 비슷한 정도로 단 맛을 내는 화학 물질이 과연 괜찮을지 의구심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이것은 자유 기술 대안이 특허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의 전형이다.

독립적 대안 집합과 특허 공백 효과

아스파탐과 어깨를 겨누던 다른 인공 감미료들을 집합시키면, 인공 감미료의 대안 기술들의 집합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또 이들은 서로 다른 물질들이므로 상호 독립적이고 따라서 이들을 (설탕에 대한 인공 감미료의) "독립적 대안 집합"이라 부르기로 하자. 이러한 독립적 대안 집합에 속하는 어느 한 기술이 자유 기술이 되어 버리면,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나머지 기술들이 아무리 훌륭한 특허 문서에 의하여 굳건한 법적 보호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특허들의 힘은 소멸된다. 특히 기술적 솔루션의 이용에는 체증도 신호등도 돌발적인 사고도 없다. 이를 "특허 공백 효과"라 부르자.

물론, 이러한 특허 공백 효과가 나타나기 위하여는, 독립적 대안 집합에 속하는 기술들이 상호 간에 대체로 동등한 기술적 또는 상업적 가치를 갖는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더 우수한 가치를 갖는 기술은 이러한 대안 집합에 속하지 않는다. 즉, 동일한 과제와 관련된 어느 기술이 다른 대안들보다 더 탁월한 성과를 달성한다거나 제품의 양산에 더 유리하다거나 하는 식으로, 기술적 또는 상업적으로 다른 기술보다 더 높은 가치를 갖고 있다면, 이는 독립적 대안 집합에 의한 특허 공백 효과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기업들은 현재 자유롭게 개방된 기술들보다 더 우수한 기술적 또는 상업적 가치를 가진 기술을 개발하지 않는 한, 동등한 수준에서의 기술에 대한 특허를 통해 실질적 성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많은 기업들이, 개발된 기술이 자사 제품에 적용되는가의 여부를 가지고 이를 특허로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특허 공백 효과는 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자사 제품에 적용되었다는 사실과 특허로서 실질적 효용을 갖는다는 것은 무관하다.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공개되어 있는데, 왜 타사에 의해 뒤늦게 개발된 기술을 굳이 모방하려 들겠는가. 이것은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이성의 문제이다.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기술, 특히 존속 기간이 소멸된 특허 기술은 많은 경우 그 기술의 안정성과 재현 가능성이 충분히 검증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막 개발된 기술은 안정성도 양산성도 검증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어차피 자체 기술을 개발하지 않고 타사가 개발한 기술을 차용하고자 하는 기업이 있다면, 그 기업이 이미 공개되고 검증되어 있는 자유 기술을 대신해서 왜 아직 신뢰할 수도 없는 새로운 기술에 관심을 기울이겠는가? 게다가, 만약 이러한 대안이 특허로 등록되었다면, 더 더욱이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개된 기술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대

등한 수준에 불과한 타사의 특허 기술을 굳이 모방하려는 기업은 없을 것이고, 결국 그 특허는 결코 침해되지 않은 상태로 만료될 것이다. 침해되지 않는 특허는 순수한 비용일 뿐이다.

이에 대하여는 두 가지 반론이 있을 수 있다. 가장 일반적인 반론은 방어 차원에서 출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즉, 자사에 적용된 기술과 동일한 기술을 타사에서 개발하여 특허로 확보하게 되면, 이미 출시된 자사 제품이 도리어 타사의 특허를 침해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보아야 한다. 우선 타사의 특허가 자사의 기술 개발보다 시간적으로 늦은 경우이다. 이 경우 미국에서는 선발명자에 대한 보호 제도를 통해 해결이 가능할 것이며,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선사용자에 대한 보호 제도가 존재하므로 문제가 될 수 없다. 물론 실제 소송에서 이것이 사실대로 입증이 되느냐는 문제가 남긴 한다. 사실 실체적인 진실과 그의 형식적인 입증은 언제나 회의감이 들 정도로 까다롭고 소모적인 과제이다. 그러나, 선개발의 입증을 용이하게 할 목적이라면 굳이 비용이 지출되는 특허 출원 이외에도 얼마든지 좋은 방법들이 많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각국의 특허청 홈페이지에 막 개발한 기술의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자사의 기술에 대한 특허 출원이 타사 기술의 출원 시점보다 더 늦은 경우인데, 이것은 독립적 대안까지 갈 문제가 아니라, 단지 내가 출원한 특허는 거절되거나 무효가 될 뿐이다.

이와 관련하여, 소위 일반적으로 말하는 '방어 출원'이라는 것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자. 특허 공백 효과는 동등한 수준의 대안 기술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개방 기술이 되어 버리는 경우, 아직 법적으로 유효하게 존속하는 다른 특허까지도 그 실질적 가치를 상실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의미 있는 해결책을 특허로 확보한 경우, 이 특허의 실질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와 동등한 가치를 갖는 모든 독립적 대안 집합에 대해서도 특허를 확보해야만 한다. 이러한 주변 대안 기술에 대한 특허들이야 말로 실제로 중심 기술에 대한 특허의 효력을 지켜주는 훌륭한 방어 특허가 된다. 그러나, 흔히들 하기 좋은 말로 방어 차원에서 출원한다고 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불법 침해를 막아보자는 게 아니라 내가 내 기술을 안전하게 사용하면 족하다는 의미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정말로 자신의 기술 사용에 안전을 기하고자 하는 의사뿐이라면, 그저 누구도 특허를 받지 못하도록 기술 내용을 공개하거나, 차근히 내부 자료를 정리해 두면 충분할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독립적 대안들을 출원하는 경우 그들이 특허로 등록될 수 있을 것인가이다. 독립적 대안들은, 문제가 되던 기존의 기술로는 해결할 수 없던 과제를 비로소 해결할 수 있게 한 새로운 해결책들이므로, 과거의 기술과 비교하면 모두 진보된 기술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독립적 대안들을 상호간에 비교한다면, 이들은 서로 동등한 정도의 기술적 또는 상업적 가치를 갖고 있는 것들이므로, 적어도 그들 중 최초의 대안이 공개[5]된 후에는 주변 대안들의 진보성은 부정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후발 대안이 개방 기술이 되어 버리고, 결국 이에 의한 특허 공백 효과가 발생하여 최초의 중심 기술에 대한 특허도 그 가치를 상실하게 될 것이므로, 원천 기술의 개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특허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현재로서는,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독립적 대안들을 별도로 보호하

5) 현재 대다수 국가의 특허법은 출원된지 1년6개월이 지나면 그 등록 여부에 무관하게 모든 특허의 내용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미국의 경우는 외국인이 출원한 특허만 동 기간이 경과된 후 공개시키도록 되어 있지만, 자국인의 특허도 등록 후에는 전문이 공개된다.

는 특단의 법적 조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최초의 대안을 창안한 특허권자는 그 최초의 특허 출원 내용이 공개되기 전에 조속히 다른 독립적 대안들도 발굴하여 이들 모두에 대한 특허를 확보해 두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최초의 대안보다 더욱 발전된 새로운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야만 하는데, 시장의 진화는 여기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려 준다. 실무적으로 매우 주의 깊게 대응해야 할 사안이다.

한편으로, 현실을 살펴 보면, 실제로는 대등한 정도의 기술적, 상업적 가치를 가질 뿐인 많은 독립적 대안들이 출원되고 이들은 소위 "특허법상 진보성"을 인정받아 특허로 등록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등록된 특허들은 특허권자에게 아무런 실질적인 이익도 주지 못한 채 등록료나 유지료를 부담시킬 뿐이다. 아래 그림은 20년의 특허 수명 기간 동안 실제로 그 유지료가 납부되는 기간을 도시한 도표이다. 일단 설정 등록료를 납부하여 등록시킨 특허들의 50% 이상이 포기되는 기간이,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약 12년, 일본에서는 약 17년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밝혀진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통계는 특허에 대한 특허권자의 기대가 얼마나 높은지를 잘 보여준다.

다음으로, 특허 공백 효과에 대한 두 번째 반론으로는, 다른 동등한 독립적 대안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하필이면 우리 회사가 사용하는 기술을 모방하는 기업이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이때는 특허에 대한 침해가 발생한 것이고 로열티 수입이 창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다음의 둘 중 하나일 것이다. 즉, 이 기술이 실제로는 다른 대안들에 비해 무언가 더 뛰어난 점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아니면 경쟁사에게 충분한 정보가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전자라면 사실은 독립적 대안 집합의 정의에서 벗어난 것이지만, 최소한 올바른 평가가 되지 않은 데에 원인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특허 공백 효과는 대등한 수준의 성취를 가져오는 대안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효과를 말한다는 것을 상기해 주기 바라며, 특허 가치에 대한 올바른 평가에 관하여는 제3장과 제7장을 참조하기 바란다. 한편, 후자라면 그것은 순전히 운이 좋은 탓이다. 당신의 회사가 그저 운이 좋기를 바란다면 이 책은 어떠한 도움도 주지 못한다. 그러나, 그 정도로 어수룩한 경쟁사가 당신이 개발한 기술을 제대로 침해하기라도 할 것인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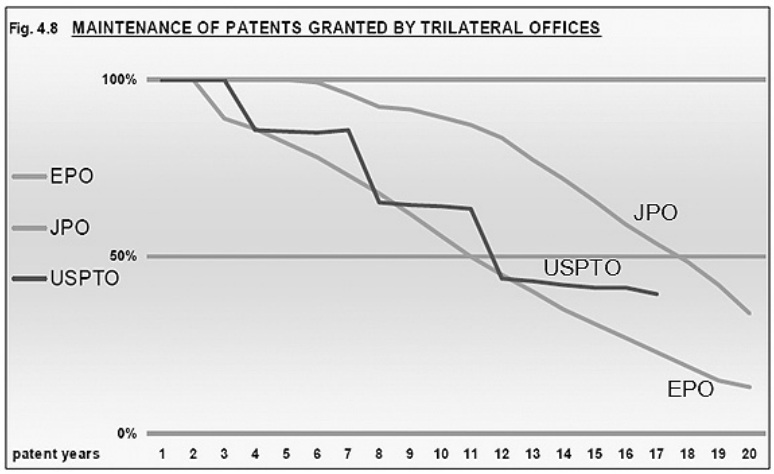

[그림 4. 주요국의 특허 등록 유지율][6]

독립적 대안 집합 이론의 확장

앞에서는 독립적 대안 집합에 속하는 기술 중에서 어느 하나가 개방 기술이 되는 경우 나머지 기술들에 대한 특허의 가치가 사라지는 현상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하나의 독립적 대안 집합에 속하는 기술들이 모두 특허로 보호 받고 있는 동안에, 하나의 기술에 대한 특허의 로열티가 다른 특허에 대한 로열티보다 낮거나 여타의 유리한 조건하에 실시 허락이 제공되고 있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인가. 휴

대 전화 분야에서 이러한 예를 찾아 볼 수 있다. 한국에서는 90년대 초 휴대 전화 서비스를 시작하기 위해 어떤 기술을 활용할 것인가를 검토하던 중, 유럽의 GSM 방식 대신 미국 퀄컴사의 CDMA 방식을 도입했다. 그 이유로서는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CDMA의 상용화를 선도함으로써 향후 중국이나 브라질 등의 국가로 CDMA 관련 장비를 수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등의 기대도 어느 정도는 작용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이 자국내에서 CDMA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전세계적인 GSM의 확산을 막지는 못했다. 업계에서는 그 주요 원인 중 하나로 CDMA의 비싼 로열티를 들고 있는데, 이것은 퀄컴사가 한국 이외의 국가에 대해 한국이 지불했던 것보다 더 낮은 금액의 로열티를 제안하는 경우, 이에 대해 한국이 크게 반발할 수 밖에 없다는 사정에 원인의 하나가 있기도 할 것이다. 어떻든 자국에서의 상용화에 성공은 했으나 퀄컴이든 한국의 관련 기업들이든 파이를 키우는 데에는 성공적이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며, 이것은 다름 아닌 GSM이라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독립적 대안이 존재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쓸만한 기술이 이미 뿌리를 내린 상태에서 뒤늦게 뛰어든 기업이, 기존 기술보다 그다지 내세울 것 없는 대안을 창안하고 이들에 대해 특허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특허를 통해 시장을 넓히거나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제도적 결함

3

세 번째 질문 : 출발지에서 목적지로 가는 길이 세 가지 있다고 하자. 세 개의 도로가 모두 유료도로인데, 그 중 세 번째 도로는 잘만 하면 통행료를 지불하지 않고 나갈 수도 있다. 다른 조건이 대체로 비슷하다면, 당신은 어느 길로 가겠는가.

4

네 번째 질문 : 출발지에서 목적지로 가는 길이 세 가지 있다고 하자. 세 개의 도로가 모두 유료도로인데, 그 중 세 번째 도로는 잘만 하면 통행료를 지불하지 않고 나갈 수도 있다. 게다가 나중에 발각되더라도 처음 지불했어야 할 통행료와 같은 금액만 지불하면 되고 당신은 여전히 익명으로 보호되며 다른 불이익은 전혀 없다. 다른 조건이 대체로 비슷하다면, 당신은 어느 길로 가겠는가.

세 번째 질문에서는 약간 주저함이 있겠지만, 네 번째 질문에서는 거의 주저함이 없을 것이다. 특허의 세계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현재의 실정을 보면, 상당히 많은 수의 특허들이 무효가 되거나 그 권리 범위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내려지고 있다.[7] 특히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특허의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침해에 대한 손해 배상에 있어서 의도적인 침해자와 과실성 침해자가 현실적으로 차별을 받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심지어 손해 배상의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 통상 지불되는 로열티를 그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되어 있기까지 하다. 미국에서는 고의적인 침해로 인정되는 경우, 과실이나 부주의에 의한 침해의 경우에 지불해야 할 손해 배상액을 정한 후, 이를 세 배까지 증액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침해가 고의적인 것은 아니었다는 판결이 압도적이라고 한다. 사후에 발각되어도 원래 지불했어야 할 금액만큼만 지불하면 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도리어 순진하게 처음부터 라이센스를 요청하는 경우, 특허권자의 협상력에 압도되어 판결에 의한 손해 배상액보다 더 많은 로열티를 지불

6) http://www.trilateral.net/tsr/tsr_2005/tsr2005.pdf
7) 분쟁에 휘말린 특허가 법원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비율은 모든 나라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 그 수치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출원된 특허의 등록률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점차 낮아지고 있다. 특허 무효의 비율을 낮추기 위한 특허청의 대응책중 하나로서 가능한 한 심사를 까다롭게 하는 방향을 택했다는 의심은 이러한 상황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게 될 위험이 없으리란 법도 없다. 그렇다면 나중에 혹시 침해라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어차피 지불할 금액은 같은데, 특허권자가 소송을 제기할 것이 확실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어떤 이유로 미리 로열티를 지급하겠다고 특허권자를 찾아 나서야 하는가?

특히나 소송 과정에서 침해가 아니라거나 특허가 무효로 될 가능성까지 남아 있다는 것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다. 특허가 무효로 되는 것은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선행 기술이 소송의 과정에서 알려지는 경우이다. 이는 특허청의 선행 기술 조사가 부실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으나, 보다 근원적인 문제는 특허와 선행 기술 사이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심사관이 그 선행 기술 자료를 심사 과정에서 검토했다고 해도 특허가 인정되었을 가능성은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는 특허가 무효라고 판결할 수도 있다. 심사관과 판사의 진보성에 대한 판단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 침해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물론 특허 기술과 경쟁사의 기술이 실제로는 서로 다른 기술인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기술적으로는 동등하다 하더라도 특허 문서가 부실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특허 문서가 부실해서 침해가 아닌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불필요한 한정 사항을 권리 범위에 포함시켰다거나, 용어 자체를 매우 한정적인 의미만 갖는 좁은 용어를 사용했다거나, 문구의 범위는 넓게 작성되어 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실시 예가 부족하여 충분한 권리 범위가 지지되지 못하는 경우 등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법률적으로 부실한 특허는 단지 무용한 정도가 아니라 나쁜 것이라고 한 것이다. 지켜야 할 기술을 지키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시장마저 모방자에게 내어주게 만들기 때문이다.

손해 배상과 관련한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각국의 특허법에서는 침해품을 폐기하거나 침해 행위에 사용된 제조 설비 등을 폐기하여 예상되는 침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실제 코닥이 폴라로이드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 코닥은 이미 판매된 제품 전체를 수거하여 폐기하고 공장 설비까지 폐기해야만 했던 적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코닥의 침해 행위가 워낙에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내려진 매우 예외적인 판결이었다. 한국에서는 특허 침해를 이유로 공장 설비는커녕 이미 판매되었거나 생산된 제품의 폐기를 명한 판결은 단 한 건도 찾아 볼 수 없다.

한편, 침해 소송에 있어서 특허권자는 침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자료를 수집하고 제시해야만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특허 침해는 침해자의 사업장에서 침해자의 전적인 관리하에 이루어진다. 이것은 제조물이 제조업자의 통제하에 있는 공장에서 제조되는 것이나, 의료 시술이 전적으로 의사의 통제하에 있는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완전히 동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조물 소송이나 의료 소송과 달리, 특허 침해 소송에 있어서 특허권자는 그 모든 증거 자료를 직접 수집하고 제시하여야 할 입증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한다. 미국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한 증거 개시 절차 등의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판결이 내려지는가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하물며 이러한 제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나라에서는 어떻겠는가. 이러한 사실 수집과 입증의 어려움은 특허권자가 침해자를 상대로 힘겨운 탐정 놀이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모든 부담이 단지 특허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부과되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상의 문제점들은, 특허 제도가 특허를 통해 모방품으로부터 시장을 지키려는 특허권자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결론을 낳는다. 여기 저기서 모방품이 시장을 어지럽히는 상황에서 모방자를 추적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증거를 수집하여 천신만고 끝에 승소하였으나, 그 결과는 애초에 받을 로열티와 동등한 수준의 손해 배상밖에 받지 못하고, 그나마 여기에서 변호사 수임료

등의 소송 비용을 제외하면, 특허권자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발명을 하고 특허를 획득한다는 것인가. 결국, 특허 제도 자체보다, 소송에 휘말리면 여러 가지로 번거롭고 평소에도 별로 달가워하지 않던 사람들을 돈까지 줘가면서 이겨달라고 고용해야 하는 껄끄러움 등이 특허 침해를 방지하는 데에는 더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8] 이러한 사정은 사법부의 '형식적 완결성을 추구하는 경향'에 의해 더욱 강화된다. 실체적 진실을 가려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든 결론을 내려야 하는 입장에 놓인 한 인간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생각해 보자. 현재 제시된 사실들을 모아 놓고 가장 적합해 보이는 모자이크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논리적 결함 없이 사실들을 배열할 수 있고, 여기에 법조문을 적용하여 결론을 만들면 형식적으로는 완전한 판결문이 되는 것이다. 특허 침해에 대한 전담 재판부가 부족하여 특허 사건 이외에도 많은 사건을 취급해야 하는 사법 시스템을 가진 국가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이 동일한 발명일지라도 미국의 특허와 다른 나라의 특허가 서로 다른 가치를 갖는 현상을 쉽게 설명해 준다.[9]

한편, 제도를 운영하는 당국의 정책에 의해서도 특허의 가치는 완전히 소멸할 수도 있다. 미국의 연방 무역위원회(FTC)는 1975년에 제록스에게 경쟁사와 협력사 모두에게 건식 복사기 관련 특허에 대한 실시권을 허여하도록 결정했다고 하며, 그로 인해 일본 기업들의 제품들이 미국의 시장에 밀려들어와 결국 제록스는 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상실했다고 한다.[10] 미 연방 무역위원회의 이러한 결정은 특허권자가 특허의 행사를 빌미로 시장의 경쟁을 방해한다고 간주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러한 정책 당국의 사고 경향은 개발 도상국의 위치에 있는 국가들에서도 발견되는 듯하다. 이러한 국가에서는 자국 기업보다 타국 기업이 자국에 더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이러한 외국 기업의 특허로 인해 자국 산업의 발전에 악영향이 올 수 있다고 믿는 듯하다. 이러한 믿음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에 관한 연구는 찾을 수 없었으나,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특허의 가치가 소멸될 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영에도 큰 어려움이 생긴다는 점만은 명확한 것 같다. 2011. 10

> "특허의 가치는 몇 가지 환경 요인에 의해 달라진다. 시장의 진화가 특허의 가치를 저하시킬 수 있으며, 경쟁사간 특허의 분산 소유로 인해 특허의 가치가 저하될 수도 있다. 또한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거나 더 저렴한 대안 기술이 나타나 특허의 가치를 사라지게 할 수도 있으며, 특허 제도가 가진 결함이나 부실하게 작성된 특허 문서, 또한 사법 제도의 부실함으로 인해 특허의 가치가 작아질 수도 있다. 이러한 환경의 영향을 고려하여야만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그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특허(또는 특허 포트폴리오)를 식별하거나 창출할 수 있다."

8) 미국에서는 특허 침해 소송에 최소 100만불 이상 소요된다고 한다. 미국의 변호사 수임료가 미국의 특허를 가능한 침해하지 않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일지도 모른다는 가설은, 변호사 수임료가 낮은 나라에서는 동일한 발명의 특허가 빈번히 침해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더 이상 가설이 아닐 수도 있을 것이다.

9) 시장의 규모에 의해 동일 발명에 대한 여러 국가의 특허가 갖는 가치의 차이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미국에 비해 시장의 규모가 작지 않은 유럽이나 일본의 특허가 여전히 미국의 특허에 비해 그 가치가 적은 것으로 인식된다는 점에서 쉽게 알 수 있다.

10) Kevin G. Rivette, DavidKline, Rembrandts in the Attic: Unlocking the Hidden Value of Patents(Korean language version), Sejong Books, Inc. 2000, 64-65

특허법원 2011. 4. 22. 선고 2010허8740 판결에 대한 검토

확인대상표장 'Autobahn®' (사용상품 : 의류)이 이 사건 등록상표 'NON-NO' (지정상품 : 의류 등)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판결에 대한 고찰

손 지 원
H&H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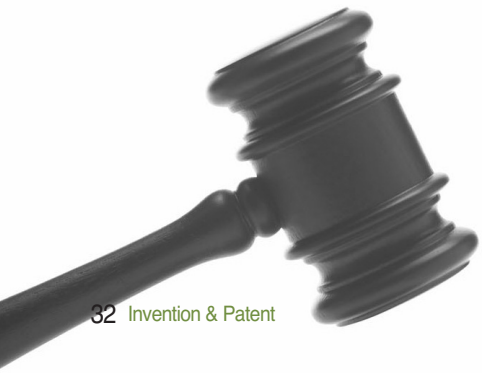

1 사건의 요지

(1) 판시사항

확인대상표장 'Autobahn®' (사용상품 : 의류)이 이 사건 등록상표 'NON-NO' (지정상품 : 의류 등)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2) 판결요지

가.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대하여는 그것이 상표권설정 등록이 있은 후에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아닌 한 등록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바, 여기에서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다'는 것은 상호를 독특한 글씨체나 색채, 도안화된 문자 등 특수한 태양으로 표시하는 등으로 특별한 식별력을 갖도록 함이 없이 표시하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일반 수요자가 그 표장을 보고 상호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할 것이므로, 표장 자체가 특별한 식별력을 갖도록 표시되었는지 이외에도 사용된 표장의 위치, 배열, 크기, 다른 문구와의 연결관계, 도형과 결합되어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 실제 사용태양을 종합하여 거래통념상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확인대상표장의 '(주)논노패션' 부분은 원고의 상호 중 회사의 종류를 나타내는 '주식회사'를 '(주)'라고 약칭하여 사용하고 있을 뿐 전체적으로는 원고의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위에는 'Autobahn®'을 아래의 '(주)논노패션'보다 크게 구성하여 배치함으로써 확인대상표장은 일반 수요자에게 상호라기보다는 주로 상표로서 사용되고 있다고 인식될 것이고, 나아가 확인대상표장 'Autobahn® (주)논노패션' 부분과 원고의 상호인 '(주)논노패션' 부분을 위치, 배열, 크기 등에서 대비하여 볼 때 'Autobahn®' 부분이 '(주)논노패션' 부분에 비하여 부수적으로 사용된 것에 불과하거나 일반 수요자의 주의를 끌지 못하여 식별력이 없거나 약한 부분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확인대상표장은 거래통념상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을 대비하여 살펴보면, '논노' 부분이 확인대상표장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다지 크지 아니한 점과 '(주)논노패션'이라는 문자 위에 'Autobahn®'을 더 크게 구성하여 배치한 확인대상표장의 전체적인 구성 등에 비추어 보면, 확인대상표장이 '논노'만으로 분리되어 호칭·관념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은 글자의 구성과 수 및 국문 사용 여부 등에서 서로 확연히 구별되어 외관상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을 같은 종류의 상품에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니,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은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2 본 사건에 대한 검토

(1) 확인대상표장이 원고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인지 여부

가.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

상기의 규정은 개인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자기의 성명, 상호, 저명한 약칭 등을 부정경쟁의 목적 없이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권의 효력이 제한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규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자기의 상호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본 사건과 유사한 판례로서, 음식점을 광고하면서 '㈜평양옥류관'을 사용한 경우, 사용표장의 문자부분은 그 글자체가 일반인의 주의를 끌만큼 특이하게 도안화된 것은 아니지만, 붓글씨체의 문자부분 중 '(주)평양'과 '옥류관'의 글자 크기를 다르게 함으로써 "옥류관"이 돋보이는 형태로 되어 있음을 주목하였다. 즉, 일반적으로 상호라 함은 권리귀속 주체를 표현하는 인적 표지로서 그 외관을 특이한 서체로 사용하지 않는데, 상기 표장과 같이 다양한 글씨체를 이용하여 수요자들의 이목을 끌게하는 경우에는 상호의 일반적인 사용을 넘어선 사용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위의 판례에서는 상기의 표장을 사용하는 구체적인 태양을 참조하였는데, 평양옥류관은 광고전단지에 '유명한 랭면 드디어 대청역에 개점', '㈜평양옥류관은 … 「랭면 전문 음식점」입니다.' 라는 형태로 사용하여 왔을 뿐 아니라 평양옥류관과 체인점 계약을 체결한 전국의 12개 북한냉면음식점이 상기 표장 외에 다른 표장을 북한냉면음식점업의 식별표지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점, 사용 표장이 있는 광고전단지에 '이제는 랭면의 맛도 상표를 확인하고 먹는 시대입니다.' 라는 문구가 사용되기도 한 점, 음식점업과 같은 서비스업에 있어서 광고나 간판 등에 상호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반수요자에게 그 상호가 곧바로 서비스표로 인식되기 쉬운 점 등을 종합하여 상표법 제

51조 제1항 제1호 본문의 거래통념상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나. 'Autobahn®(주)논노패션'의 사용이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인지 여부

본 판례는 'Autobahn®'을 아래의 '(주)논노패션'보다 크게 구성하여 배치함으로써 확인대상표장은 일반 수요자에게 상호라기보다는 주로 상표로서 사용되고 있다고 인식될 것이다고 하였다. 또한, 'Autobahn®' 부분이 '(주)논노패션' 부분에 비하여 부수적으로 사용된 것에 불과하거나 일반 수요자의 주의를 끌지 못하여 식별력이 없거나 약한 부분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확인대상표장은 거래통념상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확인대상표장 전체에 대한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 해당여부를 판단한 것이고, 확인대상표장 중 '(주)논노패션' 부분에 대해서만 판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주)논노패션' 부분이 명확한 상표로서 인식되는 'Autobahn®'과 결합되어 사용되고 있고, 이는 '(주)논노패션'이 상호의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상표의 부가적인 부분으로 인식될 개연성을 높여 준다는 점이다. 따라서 확인대상표장은 거래통념상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판례의 태도는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2) 확인대상표장과 이 사건 등록상표의 유사 여부

가. 상표의 유사판단의 법리

상표의 유사란 대비되는 두 개의 상표가 서로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외관, 칭호, 관념의 면에서 근사하여 이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경우 거래통념상 상품 출처의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상표법의 목적에 비추어 상품출처의 혼동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주류적인 학설 및 대법원 판례의 확고한 태도이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의 세가지 요소에 의하여 판단한다. 원칙적으로 이들 세가지 요소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면 상품의 출처가 혼동될 염려가 있으므로 유사상표로 보게 된다. 다만, 상표의 유사여부는 궁극적으로 상표법의 목적에 비추어 상품출처의 혼동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므로, 외관·칭호·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전체로서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유사 상표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1)]

특히, 상표는 통상 상표를 구성하는 전체가 일체로 되어 발휘하게 되는 것이므로 상표의 유사판단은 대비되는 양 상표를 전체로서 관찰하여 그 외관·칭호·관념을 비교검토함으로써 판단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상표를 전체적으로 관찰하는 경우에도 그 중에서 일정한 부분이 특히 수요자의 주의를 끌고 그런 부분이 존재함으로써 비로소 그 상표의 식별기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능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가능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필요할 따름이다. 즉, 전체관찰을 전제로 하지 않고 그 구성요소의 각 부분만을 추출하여 비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나. 확인대상표장 'Autobahn®(주)논노패션'과 등록상표 'NON HQ'의 유사판단

확인대상표장을 구성하는 부분의 일부에 '논노'라는 표장이 포함된 것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다. 다만, 상표는 그 전체가 일체로 되어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므로 일반 수요자가 확인대상표장을 볼때에 '논노' 부분을 주요부로 인식할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된다.

본 판례에서는 '논노' 부분이 확인대상표장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다지 크지 않다는 점과, 오

히려 문자 위의 'Autobahn®'의 구성이 눈에 두드러지게 표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확인대상표장은 '논노'만으로 분리되어 호칭·관념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유사하다고 판시하였다.

확인대상표장에서 '(주)논노패션'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면적으로 비교할 때 30% 미만이고, 특히 '논노'는 다른 부분과 결합되어 표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Autobahn®'은 전체 상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 뿐만 아니라, 쉽게 발음할 수 있고 국내의 수요자에게도 그 의미가 널리 알려진 친근한 단어로서 수요자의 이목을 끌기 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그 주요부라고 할 수 있으므로, 확인대상표장과 등록상표를 비유사로 판단한 판례의 태도는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최근 결합상표의 경우 전체관찰의 원칙에 입각하여 그 유사범위를 좁게 해석하려는 판례의 경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 분리관찰을 지나치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결합상표의 권리범위를 과도하게 확대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

(3) 확인대상표장이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사용한 것인지 여부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등록상표와 사용상표(확인대상표장)가 동일·유사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의 염려가 있을 지라도 그 사용상표(확인대상표장)가 같은 호 본문에 해당하여 등록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규정이므로, 확인대상표장이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된 상표가 아니라는 점에서 본 단서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사실상 무의미하다 할 수 있다.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에서 의미하는 부정경쟁의 목적이란, 등록된 상표권자의 신용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을 말하고, 단지 등록된 상표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와 같은 목적이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태도이다.

즉, 상표권 등 침해자 측의 상표 등 선정의 동기, 피침해상표 등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등 주관적 사정과 상표의 유사성과 피침해상표의 신용상태, 영업목적의 유사성 및 영업활동의 지역적 인접성, 상표권 침해자 측의 현실의 사용상태 등의 객관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등록상표의 신용도라고 할 수 있다. 등록상표가 신용이 없는 경우라면 사용자의 부정경쟁의 목적이 부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이다.

본 사건의 경우, 등록상표가 일반 수요자에게 상표로서 알려진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확인대상표장이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설령 양 상표가 유사하다고 판단되었다고 하더라도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판결은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3 결론

본 판례는 확인대상표장 중 '(주)' 등의 상호를 표시하는 부분이 포함된 경우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기준과, 등록상표를 일부 포함한 확인대상표장이라고 하더라도 그 포함된 구성 및 정도에 따라 비유사로 판단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 판례로서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2011. 10

1) 대법원 1997.2.28. 선고 96후896 판결, 대법원 2002.4.12. 선고 2001후683 판결 등

류마티스 관절염을 치료하는 식물특허

조식제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 서기관

관절염 중 가장 빈번히 발병하는 것은 류마티스 관절염(rheumatoid arthritis : RA)과 골 관절염이다.

골 관절염은 신진대사 및 세포 재생 능력이 저하되어 있는 고연령층에서 일어나는 퇴행성 질환인 반면, 류마티스 관절염(RA)은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자가면역현상이 주요 기전으로 알려져 있다. RA는 전신성 염증 반응으로 인체 내 많은 조직과 기관(피부, 혈관, 심장 폐, 근육)들에 영향을 주며, 특히 관절에 영향을 주어 비가역적인 증식성 활막염을 일으키며 이는 관절연골의 파괴와 관절의 강직으로 진행된다.

류마티스성 관절염의 결과는 매우 심각하다

류마티스성 관절염의 표시 범위는 광범위하지만, 질환의 개시는 대부분의 경우 잠행성이고, 제1증상은 관절에서 통증, 붓기 및 경직으로 나타난다. 류마티스성 관절염의 특징은 지속적인 염증성 말초 관절염이지만, 류마티스성 소결절, 혈관염, 폐 섬유증, 신경학적 징후 및 펠티 증후군(Felty's syndrom)과 같은 다양한 관절 이외의 징후가 나타날 수 있다. 류마티스성 관절염은 관절의 운동성을 손상시키고, 지속적인 염증이 신장과 관련된 제2아밀로이드증(amyloidosis)의 발병을 야기시킬 경우, 기대수명은 단지 약 4 내지 5년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류마티스성 관절염은 비용, 삶의 질의 무력 및 생산성 손실의 관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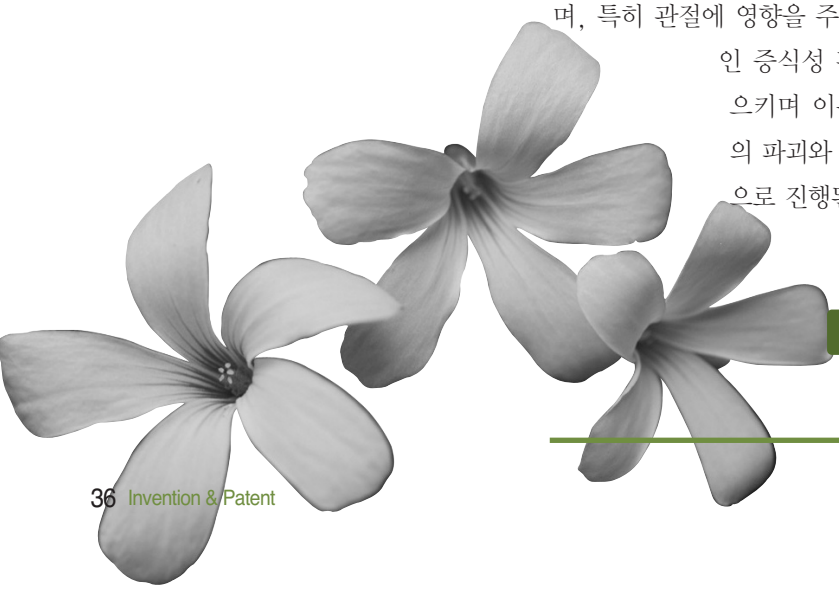

◀ 〈사랑초〉

에서 상당한 사회적 영향을 갖고 있다. 인구의 약 1%가 (여성/남성 비율 3/1) 류마티스성 관절염에 걸려 있다고 하는데, 미국에서만 약 2백만의 사람들이 류마티스성 관절염에 걸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A는 임의의 나이에서 발병할 수 있지만, RA에 걸린 사람의 약 80%가 35 내지 50세인 것으로 규명되었고, 그것의 발병률은 나이에 따라 증가하고 있다. 또한 RA를 진단할 수 있는 시험의 부재로 인해, 여러 달을 지연시킨 후에야 류마티스성 관절염의 확실한 진단을 확인할 수 있다.

류마티스성 관절염은 적절한 치유법이 없다

RA에 대한 치료적 선택에는 질병개질 항류마티스성 약물(DMARD)이 이용된다. DMARD는 염증성 증상을 개선시키거나, 관절 침식(jointerosion)의 진행을 늦추지만, 대개는 단지 부분적으로만 효과적이고 장기간 치료에 있어서 내성이 불충분하였다. 모든 DMARD는 상당한 독성 부작용을 가지고 있어서, 건강 관리 전문가가 이러한 약물와 관련된 위험성과 이점을 주의 깊게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RA의 치료에 사용되는 메토트레사트(methotrexate) 투여량은 적지만 (매주 1회 7 내지 20 mg), 이것은 때때로 간 섬유증 또는 폐렴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과 관련될 수 있다. 메토트레사트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의 50 내지 80%는 기능성 상태가 장기간 안정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속적인 완화는 전혀 보고되지 않았다. 또한, 중증 RA는 대개 독성을 없애고 투여하여 치료하지만, 그 반응은 불충분할 수 있다. RA의 치료에 대해 신규로 입증된 약물 중에서, 소위 항종양 괴사 인자(anti-Tumor Necrosis Factor) α 치료법(인플릭시맵 (infliximab) 및 에타르네셉트(etarnecept))은 매우 효과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환자의 약 30 내지 40%는 이 치료법에 대해 반응조차 하지 않는다. 시클로옥시게나제 (COX)-2 억제제(셀레코시브)는 전형적인 DMARD와 유사한 효능 및 필적할 만한 안전 프로필을 갖고 있지만, 환자에서 심혈관 질환이 일어날 위험이 있으며, 또한 궤양 병력을 가진 환자 및 중장년층에서는 주의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핀랜드, HYKS-INSTITUUTTI OY의 국제출원특허 PCT/EP2003/000802호, 류마티스성 관절염의 치료 ; Treatment of Rheumatoid Arthritis using Imatinie 참조)

그러나 류마티스 관절염의 진단에 대한 연구는 많은 진척이 있다.

일본국, 시오자와 순이찌의 국제출원특허(PCT/JP2000/001697) "만성 류마티스성 관절염질환 유전자" 라는 연구는 마이크로위성마아커(mirco satellite marker)를 사용한 연쇄해석을 만성 류마티스성 관절염 환자 및 그 혈연자에 대해 실시함으로써 사람의 X염색체에 존재하는 만성 류마티스성 관절염 유전자가 위치하는 3개의 장소에 유전자 자리를 특정하고, 만성 류마티스성 관절염의 진단을 간편하고 확실하게 실시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였다. 이는 만성 류마티스성 관절염의 새로운 치료법 및 치료약제의 개발에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는 "DNA-메틸전이효소-3B를 이용한 류마티스 관절염 예후진단용 마커 및 이를 이용한 류마티스 관절염 중증도 예측 및 판단방법"이라는 특허(특허등록 제937144호)를 가지고 있다. 본 발명은 DNA-메틸전이효소-3B(DNMT3B) 유전자의 다형성에 근거한 류마티스 관절염 예후진단용 마커, 이를 이용한 류마티스 관절염 예후 진단키트, 마이크로어레이 및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한 유전적

〈삽주〉

〈현호색〉

중증도를 예측 및 판단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류마티스 관절염의 관절 파괴위험도가 높은 유전자형을 밝혀 류마티스 관절염 중증도가 높은 환자를 용이하게 진단하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류마티스 관절염의 치료제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스위스의 게슈벤트 노르베르트 등의 국제출원특허(PCT/CH2000/00027, 한국공개 10-2001-0113657호)인 "황, 겨자씨 및 구리염을 함유하는 류마티스 증후군 치료용약학 조성물"이라는 발명은 류마티즘, 관절염, 좌골신경통 및/또는 통풍 등의 류마티스 증후군의 치료용 약학 제제로서 황, 겨자씨 및 구리(II)염을 활성 물질로 함유하고, 필요에 따라 카모밀레, 캄포 및/또는 요오드산칼륨을 추가하는 것으로서 두가지 처방(1, 황 : 약 30 중량% 내지 50 중량%, 바람직하게는 30 중량% 내지 40 중량%, 카모밀레 : 0~10%, 바람직하게는 5~10%, 캄포 : 0~25%, 바람직하게는 15~25%, 탈크(잔여량) : 20~65%, 배치 1의 총량: 85~95%, 2, 겨자씨 : 0.5~2.5%, 바람직하게는 1~1.5%, 황산구리(II) : 0.05~0.3%, 바람직하게는 0.1~0.15%, 요오드산칼륨 : 0~0.15%, 바람직하게는 0.05~0.1%, 탈크(잔여량) : 3~13%, 배치 2의 총량: 5~15%)이 가능하고, 본 약학 제제는 좌골신경통, 근육 류마티즘, 관절염, 정맥염, 고혈압 또는 저혈압, 마비 기형, 척수염 후 마비, 소아마비, 뇌성마비, 신장염 또는 요독증 이후의 마비, 알리큐이아 매카니카(alicuia machanica)에 의한 병변 후 마비,습진, X선 화상에도 사용하기에 적합하다는 것이다.

충청북도의 "신경통, 관절염, 류마티스, 골다공증(퇴행성관절염)에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 등에 통증을 완화시키는 통증 완화입욕제(X-007G)(특허등록 제526228호, 발명자 세명대학교 한의과대학 경혈학교실 김**)"라는 특허는 한방생약재인 천수근(일명악마의 발톱:Devils claws)과 현호색, 창출의 혼합 추출 엑기스에 키토산과 게르마늄(GE)를 첨가한 목욕제로서 동물실험에서 신경통, 관절염, 류마티스, 골다공증의 질병에 최대한 빠르고 깊숙하게 피부속까지 침투시켜 통증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 목욕제는 천수근, 현호색, 창출 3가지를 추출한 엑기스를 70%와, 키토산 엑기스 10%와 중화시킨 게르마늄 엑기스20%를 첨가하여 제조한다.

※ 구성약재인 천수근은 아프리카 남부의 보츠와나, 나미비아 칼라하리 사막 등에서 자생하는 식물로서 사

막의 척박한 토양에서 자라나고 뿌리가 땅속으로 아주 깊이 뻗으며 그 뿌리가 고래로부터 통증 완화의 약재로서 사용되어 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감자처럼 괴경덩어리들이 매달려 있는 생약으로 천수근의 괴경덩이는 80 ~ 90cm 땅속에서 발견된다고 한다. 현호색은 양귀비과의 여러해살이 풀로서 모르핀에 견줄 정도로 강력한 진통작용이 있다고 알려진 바 있고, 창출은 삽주의 묵은 뿌리를 말하는데 주로 위장병에 사용하는 약재이나 진통효과도 있다.

천수근을 이용한 다른 특허로는 특허등록 제515826호 "구척 및 천수근을 주성분으로 함유하는 약학적 제제"는 열대지방에 서식하는 고비 일종인 금모구척과 천수근의 분말을 주성분으로 하고, 여기에 맥아, 우슬, 당귀, 숙지황, 두충, 육계, 홍화자, 구판, 오공, 오가피, 방풍, 감초, 구기자, 속단, 녹각, 단삼, 산사, 현삼, 익모초, 신곡, 약콩, 적두중에서 선택된 1종 이상의 보조생약으로 조성된 것으로 골다공증, 류마티스 관절염, 디스크 증상의 예방과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수리취〉

학교법인 영남학원의 "수리취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항류마티스 효과를 가지는 조성물"이라는 발명(특허등록 제541249호)에 의하면, 수리취(Synurus deltoides Aiton, Nakai)는 전국의 산지에 분포하고 있는 여러해살이 식물로서 초록색의 착색매체로 이용되는 식용색소로 사용되어왔던 식물로 예로부터 봄에 식용하며, 한방에서는 종창, 부종, 지혈, 토혈, 안태, 이뇨, 방광염 등에 이용하였으며 독특한 향취가 미각을 돋구며 식품의 노화를 지연시키는 기능이 있는 초본식물로 알려져 왔다. 현재까지 발표된 연구결과는 Ham 등이 보고한 수리취 추출물의 in vitro에서의 돌연변이 억제작용이 있다는 정도이다. 연구자 등은 항염증제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국내 자생식물들을 연구하던 중, 취나물류, 특히 수리취 지상부의 75% EtOH 추출물이 유의성 있게 만성염증 동물모델에서 용량의존적으로 활성을 보이는 것을 발견하고 급성독성실험 등을거쳐 본 발명을 완성한 것이다.

수리취는 떡취라고도 하는데 예전에는 쑥떡처럼 수리취떡을 만들어 먹기도 하였다. 수리취떡을 많이 해먹으면 류마티스에 도움이 될 것이다.

공개 미등록 특허인 "지실, 금은화 및 백지의 생약 혼합 추출물을 함유하는 류마티스성 관절염 예방 및 치료용 약학조성물"이라는 특허(공개 10-2006-0008572호)에서 항염증 효과를 갖는 지실(탱자), 금은화(인동덩굴의 꽃) 및 백지(구릿대의 뿌리)의 생약 혼합추출물은 항염증 및 통증억제 효과가 있으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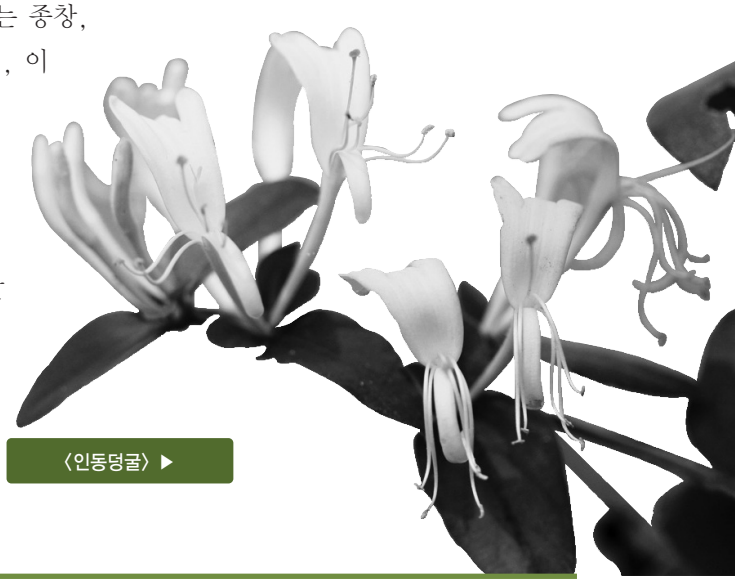

〈인동덩굴〉 ▶

〈구릿대〉

로, 류마티스성 관절염 예방 및 치료에 효과적이다는 내용도 찾아볼 수 있다.

생화학적 접근방식의 특허로는 주식회사 뉴로넥스의 "파프 수용체의 활성을 억제하는 캅사제핀을 포함하는 류마티스성 관절염 또는 알러지성 질환의 예방 및 치료용 약제학적 조성물(특허등록 제433940호)"이라는 특허는 캅사제핀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면역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파프 수용체의 활성을 특이적으로 억제함으로써 과다한 면역반응을 억제하고 이를 통해 류마티스성 관절염 및 알러지 치료제로서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는 파프 수용체 반응억제제에 관한 것으로서, 본 발명에 의한 캅사제핀은 파프 수용체에 작용하여 파프 수용체의 활성화에 의한 칼슘의 증가를 억제하고, 활성산소기의 생성 및 유리를 억제하는 등 파프에 의한 면역반응을 저해하므로, 부작용이 적으며 안전성이 높은 파프 수용체 활성과 관련된 질병의 치료제로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는 효과가 있고, 특히, 류마티스성 관절염 및 알러지 치료제로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 새로운 대상으로 주목받고 있는 파프는 1971년 백혈구에서 유리되어 혈소판의 응집을 유도하는 물질로 처음 발견되었다. 파프는 모세혈관 투과성의 증가와 혈관 확장작용을 가지고 있으며, 백혈구의 유도작용을 유도하고 이들에 작용하여 활성산소기 형성 등 면역반응을 유도한다. 파프는 파프 수용체에 작용하여 포스포라이페이즈 씨(phospholipase C)의 활성화를 일으키고 이로 인해 이노시톨 삼인산(inositol 1,4,5-trisphosphate)과 다이아실글라이세롤(diacylglycerol)의 생성을 유도한다. 이들은 세포내에서 칼슘의 증가와 단백질 인산화 효소 씨(protein kinase C)의 활성화를 가져오게 되는데 이들이 파프에 대한 염증반응을 직접적으로 매개하는 인자로 알려져 있다. 최근 파프의 신호전달을 억제하는 물질을 염증, 기관지천식 치료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시도가 국내외에서 추진되고 있다.

또한 한국화학연구원의 "신규한 카보니트릴 화합물, 이의 제조방법 및 이를 포함하는 류마티스성 관절염, 골관절염, 파제트병,악성고칼슘혈증, 대사성골질환 및 각종 암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제학적 조성물(특허등록 제883963호)"이라는 발명은 새로운 화학구조식을 가지고 있는 신규한 화합물인 카보니트릴 화합물로서, 시스테인 프로테아제인 카텝신 B, L 및 S에 대하여 우수한 저해활성과 카텝신 B, L 및 S에 대한 높은 선택성을 가지고 있고, 또한 동물실험에서 우수한 골관절염 치료효과를 나타내어, 골관절염 질환뿐만 아니라, 카텝신 B, L 및 S 저해에 근거한 류마티스성 관절염, 파제트병, 악성고 칼슘혈증, 대사성골질환 및 각종 암의 예방 및 치료제로 부작용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천남성〉

북한의 과학백과사전출판사의 "동약처방집"에는 여러 가지 류마티스관절염 치료법들이 게재되어 있다.

바꽃(법제한 것)10, 강황 10, 함박꽃뿌리 10, 구릿대 10, 천남성 10, 육계 5 중량부를 가루내어 와셀린에 갠 "초오고" 를 만들어서 환부에 바른다거나, 왕지네의 머리와 발을 떼어내고, 잘게 부스러뜨려서 25% 알콜을 전량이 1,000ml가 되도록 넣고 1~2일간 뚜껑을 막았다가 거른 "오공약주" 를 한번에 3~5ml씩 하루 3번 식후에 복용한다. 또 다른 처방으로 곰뼈약술, 초오둥근알약, 가미회양옥룡고 등을 찾아볼 수 있는데 북한에서는 주로 부자나 초오, 천남성 등 강력한 독초를 이용하는 처방이 많은데, 전문 한의사가 아니면 함부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

〈마가목〉

국내에서 자생하는 생약자원으로는 곰취(자완), 삼지구엽초(음양곽), 쇠무릎(우슬), 마가목(정공등), 개다래(목천료), 노루발풀(녹수초) 등이 류마티스 관절염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원인 불명의 만성 염증성 질환으로서 서울대학병원에서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어떠한 약제도 류마티스 관절염을 완치시키지는 못한다"라고 공언하리만치 난치성 질병임은 틀림없다. 하지만 그 치료법에 대하여 위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동서양의 많은 연구들이 있고, 류마티스관절염 표적치료제인 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글로벌 임상이 진행 중이라는 뉴스도 있으니 곧 극복가능한 질병이 될 것이다.

〈복분자〉

스위스 제네바대학 악셀 핑크 박사팀은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 2,900명을 대상으로 술이 관절과 질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한 결과, 적당한 음주를 즐기는 환자는 관절손상이 느리게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은 손상이 빨랐다. 또 술은 여자보다 남자에게 더 효과적이었다고 한다. 아마도 복분자나 머루주 같이 안토시아닌이 풍부한 약주를 적절하게 즐긴다면 류마티스 관절염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2011. 10

특허의 이해

특허제도의 기원

Patent의 어원(語源)

14세기 영국에서 국왕이 특허권을 부여할 때,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개봉된 상태로 수여되었으므로 특허증서를 개봉된 문서, 즉 Letters Patent라 하였으며 그 후 "Open" 이라는 뜻을 가진 Patent가 특허권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게 되었음.

최초의 특허법(1474년)

르네상스 이후, 북부 이탈리아 도시국가 베니스에서 모직물공업 발전을 위해 법을 제정하여 제도적으로 발명을 보호 → 갈릴레오의 양수, 관개용 기계에 대한 특허 (1594년)

현대적 특허법의 모태

영국의 전매조례 (Statute of Monopolies : 1624~1852) : 선발명주의, 독점권(14년), 공익위배 대상 특허 불인정 → 산업혁명의 근원이 되는 방적기, 증기기관 등이 탄생

우리나라 특허제도의 연혁

- 1908년 : 한국 특허령 공포
- 1946년 : 특허원 창립 및 특허법 제정
- 1961년 : 특허법을 산업재산권 4법으로 분리
- 1977년 : 특허청 개청
- 1979년 :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 가입
- 1980년 : 파리협약(Paris Convention) 가입
- 1984년 :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가입

IP

시선집중
식별력 약한 상표의 브랜드 관리 전략
Zoom-In
소리, 냄새, 위치도 상표가 될 수 있다
지식재산 경영전략
창의성, 개인이 아닌 전체에 붙이는 이름
발명교육 현장 속으로
교육현장에서 발명 교육의 필요성
우수특허기술 사업화 활용 사례
(주)운화

Column

식별력 약한 상표의 브랜드 관리 전략

설명적, 문장형 브랜딩 트렌드를 통해 본 브랜드 관리 전략

'맛있는 우유', '바나나는 하얗다', '맛있는 라면' 등 상품의 효능, 품질 등을 직감하게 하는 자연어, 설명적 표현을 브랜드로 하는 추세가 강해지고 있다. 이들 상표는 상품의 특성을 일반소비자에게 쉽게 각인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상표법상 등록이 불가능한 상표로서 독점 브랜드가 될 수 없다는 태생적인 단점이 있다. 기업으로서는 이러한 브랜드들을 어떻게 현명하게 관리해 나갈 것인지 브랜드 관리적인 측면과 법적 측면을 함께 고려해 본다.

전 소 정
知心 IP&Company 상표팀 변리사

브랜딩 트렌드

'맛있는 우유, 맛있는 라면, 갈아 만든 사과, 뼈로 가는 칼슘분유, 바나나는 원래 하얗다....' 등 이들 브랜드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소위 말하는 식별력이 없는 브랜드를 사용하여 대박을 친 상품들이다. 보통 브랜드를 자신만이 사용하고, 모방상표, 즉, 짝퉁 제품이 양산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상표법상 등록 가능한 식별력이 있는 브랜드를 등록하여 자신만의 고유 브랜드를 사용하는 것이 정석이었으나, 요즘에는 법적으로 대응이 불가능한 모방상표가 양산될 위

험을 기꺼이 감수하고 상품의 속성, 효능 등을 그대로 직감하게 할 수 있는 설명적 브랜드를 시장 전면에 내세워 큰 수익을 올린 제품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브랜드의 대표 주자로 남양유업의 우유 '맛있는 우유 GT' 가 있다. 상표의 등록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인지 'GT' 라는 알파벳 2개를 추가했지만 소비자 중 어느 누구도 이 우유 제품을 '맛있는 우유' 라고 약칭하여 부를 뿐 '맛있는 우유 GT' 라고 하지는 않는다. 즉, 이 우유의 브랜드는 '맛있는 우유' 인 것이다. 우유와 같은 식품군 제품에서 '맛있다' 라는 속성은 모든 식품들이 동일하게 추구하는 가치이자 속성이므로, '맛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상표법상의 독점권을 허용할 수 없다. '우유' 부분 역시 상품의 보통명칭에 불과하므로 결과적으로 '맛있는 우유' 는 독점권을 가질 수 없는 상표로서, 누구든지 이러한 상표를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양유업은 '맛있는 우유' 라는 식별력 없는 브랜드를 내세워 시장에 출시했으며, 시장의 반응은 뜨거웠다. 남양유업이 생우유 제품으로는 정말 오랜만에 서울우유 다음으로 우유 시장에서 매출 2위를 올리는 쾌거를 이루게 된 것이다. 브랜드 전략 하나만으로 매출을 바꿀 수 있다면 남양유업의 '맛있는 우유' 브랜드 전략을 눈여겨 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남양유업의 '맛있는 우유' 가 히트를 치고 나서 우유업계에서는 미투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매일유업에서 나온 '소화가 잘되는 우유', 서울우유의 '목장의 신선함이 살아 있는 우유', '똑똑한 우유' ... 등 우유의 효능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이른바 설명적 브랜드 제품들이 대거 나오게 되었다. '맛있는 라면', '갈아만든 사과', '뼈로 가는 칼슘두유' 등은 모두 설명적 브랜드의 좋은 예이다.

또한, 최근 시장에서는 '설명적 브랜드' 제품 뿐만 아니라 길게 상품의 속성을 쉽게 풀어서 나타낸 '문장형 브랜드' 도 눈에 쉽게 띈다. 예를 들면, '바나나는 원래 하얗다', '간편하게 만들어 맛있게 먹는 새콤달콤 유부초밥', '여기서 우리의 사랑을 이야기하자', '목초를 먹고 자란 건강한 닭이 낳은 달걀' 등이 있다.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의 역할 강화

그렇다면 이러한 설명적 브랜드 또는 문장형 브랜드가 모방 브랜드들이 나올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대기업이나 자금력이 충분한 기업이라면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소비자와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모든 수단, 그 대표적인 수단인 '광고' 등을 통해 그 설명적 또는 문장의 표현이 그 기업만의 브랜드임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여 소비자들도 그 브랜드가 단순히 상품을 설명할 때 쓰이는 표현이 아닌 특정 회사의 제품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맛있는 우유' 의 경우 신문 전면 광고와 TV 광고를 통해 자신들이 만드는 우유가 이른바 'GT 공법' 에 의해 만들어져서 더욱 '맛있는 우유' 가 되었다는 식의 광고를 했는데, 'GT' 는 'Great Taste(대단한 맛)' 의 약자로서 사실상 특별한 우유 제조 기법을 나타내는 것이 아님에도 이러한 광고를 통해 소비자들은 남양유업의 우유가 정말 '맛있는 우유' 이구나 라는 착각(?)을 불러일으켜 '정말 맛있는지 한 번 사볼까?' 라는 호기심을 유발하게 되고, 그 호기심을 계기로 '맛있는 우유' 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우유 중에서 정말 '맛있는 우유' 로 인식되게 된 것이다.

최근에 새로운 메뉴를 출시하여 히트시킨 BBQ 치킨 역시 이러한 전략을 구사하였다. BBQ치킨((주)제너시스)은 토핑, 소스, 치킨의 선택을 소비자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메뉴를 개발하여 그 브랜드명을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1,000가지 치킨'으로 선택했으며, 이러한 상표가 그 문자 자체만으로는 상표법상 등록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동종업계에서 유사 제품 또는 브랜드가 나오는 것을 원척적으로 봉쇄하기 위하여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1,000가지 치킨'을 상표 출원함과 동시에 언론에 메뉴 출시와 상표 출원된 사실을 대대적으로 알리면서 이 상표가 BBQ의 상표임을 소비자들에게 먼저 각인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따라서, 설명적 브랜드 또는 문장형 브랜드의 경우 모방 브랜드들로 하여금 자신들을 법적으로 지켜줄 장치가 없기 때문에 그 브랜드를 통해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고, 계속적인 커뮤니케이션, 언론 홍보, 광고 등을 통해 그 표현이 제품의 속성을 설명하는 표현이 아닌 자타 상품 식별의 기능을 하는 상표, 즉, '브랜드'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다양한 변형 형태로의 지속적인 상표 출원

식별력이 약한 상표라고 해서 바로 상표 출원을 포기하는 것이 맞을까? 식별력 여부에 대해서는 전문가, 심지어 상표의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관이라도 해도 단정지어 얘기할 수 없는 주관적인 해석이 다분한 영역이다. 따라서, 상표 출원 전에 식별력이 약하다는 판단이 든다고 하더라도 상표 출원을 시도해 보는 것이 더 현명한 판단이다. 설사 식별력이 약하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향후 그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하기가 어려울 뿐, 사용하는 것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 만일 식별력이 약하다는 판단이 든다고 해서 바로 그 상표 출원을 시도도 하지 않는다면 동일한 상표에 대해 동종업자가 상표 출원을 함으로써 등록을 먼저 받는 결과가 생길 경우에는 오히려 자신의 상표 사용이 타인의 상표권 침해를 구성하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상표가 식별력이 아예 없는 경우가 아니고 식별력이 다소 약해 등록가능성이 높지 않게 점쳐 진다고 하더라도 그 상표를 이미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하기로 확정한 경우라면 상표 출원은 미리 해두는 것이 여러 모로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렇다면, 현재 상표의 구성으로는 식별력이 약하지만, 조금만 변형을 가하여 식별력을 높일 수는 없을까? 방법은 있다. 바로, 여러 가지 형태로의 변형이나 식별력 있는 도형 또는 문자와의 결합을 시도해 보는 것인데 그 좋은 예가 웅진식품의 '자연은' 상표이다.

이하의 그림에서는 웅진식품이 그 대표상품인 음류수가 속하는 제32류에 여러 형태의 상표 출원을 하여 등록 받은 사례를 취합해 보았다.

웅진식품은 '자연은'이라는 상표를 고안했으나 '자연은' 이라는 상표의 식별력이 다소 약하다고 판단하여 '자연은'을 한자로 구성하여 '自然恩'으로 출원하였고, 결과는 등록으로 이어졌다. 그와 동일한 날짜로 이들 기업의 상호로서 식별력이 강한 '웅진'을 결합한 '웅진 자연은'의 형태로도 출원을 진행하여 동일한 날짜에 등록을 받았다. 이렇게 되면 비록 '自然恩'의 한자 형태로 출원했으나 이 칭호를 '자연은'이라고 읽는 것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일단 '자연은'이라고 발음되는 칭호적인 부분에 있어서 독점권을 가지게 된 것이고, 한글 '자연은'의 식별력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자연은'을 모방하는 사용하는 업체에 상표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웅진식품은 영리하게도 이러한 변형 형태의 출원을 해둔 뒤 궁극적으로 자신들이 출원하고자 하는 형태에 점점 더 유사한 형태로의 출원을 시도하는데 그 이후 한글 '자연은'과 한자 '自然恩'을 병합

自然恩	4020030000841 (2003.01.08)	4020040007671 (2004.02.18)	4005858500000 (2004.06.24)	등록	32		웅진식품 주식회사
웅진자연은	4020030000838 (2003.01.08)	4020040007670 (2004.02.18)	4005858530000 (2004.06.24)	등록	32		웅진식품 주식회사
자연은 自然恩	4020030031405 (2003.07.10)	4020040047765 (2004.09.09)	4005999200000 (2004.11.18)	등록	32		웅진식품 주식회사
자연은	4020040002181 (2004.01.16)	4020050046484 (2005.08.26)	4006379020000 (2005.11.04)	등록	32	011515 26030 6 260313	웅진식품 주식회사
자연은	4020040002173 (2004.01.16)	4020050046483 (2005.08.26)	4006379010000 (2005.11.04)	등록	32		웅진식품 주식회사
자연은	4020040011271 (2004.03.12)	4020050072299 (2005.12.13)	4006503910000 (2006.02.07)	등록	32	050313	웅진식품 주식회사

한 형태로 출원을 시도하였고, 그 이후에는 초록색의 나뭇잎을 연상하게 하는 도형 바탕에 하얀색 글씨의 로고를 만들어 '자연은'을 출원하였고, 드디어 한글 '자연은'을 문자 그대로 출원하기에 이르렀다.(출원번호 제4020040002173호)

이 한글 형태의 출원상표 '자연은'에 대해서 특허청은 다음과 같은 거절이유를 설시하여 1차적으로 다음과 같은 의견제출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예측했던 식별력이 약함을 이유로 한 거절이유가 제기되었으나, 의견서를 통해 그 거절이유를 극복하고 등록 받기에 이르렀다. 웅진식품이 이렇게 '자연은' 이라는 상표에 대한 상표권을 확보한 결정적 이유는 식별력이 약하다는 이유로 처음부터 상표 출원을 포기하지 않았고, 출원에 있어서도 전략을 구사하여 최초 출원을 '자연은'의 한글 형태로 출원을 시도하지 않고 한자 형태 및 상호 결합 및 로고의 형태로 계속적인 변형 출원을 시도하여 궁극적인 한글 형태의 상표권 확보를 위한 점진적인 노력을 꾸준히 해온 데에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자신이 사용하는 상표가 다소 식별력이 약하다고 하더라도 그 상표를 이미 사용해 왔거나 확실히 사용할 예정이라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변형 형태의 출원부터 시도한 후 자신이 원하는 형태로의 출원에 접근해 보는 것도 상표권 확보를 위한 좋은 전략이 될 것이다. 2011. 10

귀하의 상표등록출원에 대해 심사한 결과 아래와 같은 거절(등록불가)이유가 있어 상표법 제23조에 의하여 이를 통지하오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상기기일까지 의견서를(보정이 필요한 경우 보정서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제출기일은, 신청에 의해 매회 1월, 총 2회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출기일연장 승인통지는 별도로 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본원상표는 명사 '자연'과 조사 '은'이 결합한 것으로 '자연'으로만 관념되어 "가공하지 않은 천연 그대로의 상품"으로 직감되므로 지정상품의 성질(품질 등)표시로 식별력이 없고, "도형"부분은 문자의 인식력을 압도할만큼 수요자의 주의를 끈다고 볼 수가 없어 요부가 될 수 없으며, 표장을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자연"과 결합된 상표가 동일류군에 다수 등록되어 있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소리, 냄새, 위치도 상표가 될 수 있다

과거 상표제도에서는 단순히 문자와 도형, 기호로 이루어진 형태만을 보호하였지만, 오늘날 인간의 오감을 이용한 독특한 마케팅전략과 새로운 기술의 등장, 소비자 욕구의 다양화로 인해 과거의 전형적인 형태와 다른 새로운 형태가 상표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국내 도입을 준비 중인 소리상표와 냄새상표에 대해서 소개하고, 추가적으로 해외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위치상표에 대해서도 소개를 하고자 한다.

문 명 섭
한국지식재산연구원 IP인프라팀 연구원

새로운 유형의 상표 등장

상표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데, 과거 상표제도에서는 단순히 문자와 도형, 기호로 이루어진 형태만을 보호하였지만, 오늘날 인간의 오감을 이용한 독특한 마케팅전략과 새로운 기술의 등장, 소비자 욕구의 다양화로 인해 과거의 전형적인 형태와 다른 새로운 형태의 상표가 등장하게 하였다.

예를 들어, 우리가 영화를 볼 때 화면을 보지 않더라도 시작할 때 들리는 사자의 포효하는 소리만으로도 어느 영화사의 작품이라는 것을 인지하게 해주며, 특유의 냄새만으로도 특정 회사의 제품임을 알 수 있게 해준다.

〈MGM 영화사의 상표〉

이처럼 소리뿐만 아니라, 입체, 색채, 홀로그램, 위치, 냄

새 등 과거 상표의 범위에서 벗어난 새로운 형태의 상표를 광고와 홍보 등을 통해 소비자가 타사의 상품과 서비스로부터 출처를 구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시장의 변화로 인해 새로운 유형의 상표를 보호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로 하여금 혼동을 초래하게 하여 상표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결과를 발생시킬 우려가 생겼다.

새로운 유형의 상표에 대한 국제적 논의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회원국은 새로운 유형의 상표가 본질적으로 상표로서의 기능을 하는 경우 상표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2006년 WIPO 상표법상설위원회(WCT)에서 "새로운 유형의 상표"를 정식 안건으로 채택하여 입체, 색채, 홀로그램, 위치, 소리, 냄새 등 새로운 유형을 상표로 보호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WTO/TRIPS 협정에 의하면 "사업자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다른 사업자의 상품 또는 서비스로부터 식별시킬 수 있는 표지 또는 표지의 결합은 상표를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상표의 형태에 대하여 특별한 제한을 마련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회원국은 등록요건으로 표지가 시각적으로 인식 가능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하여 상표를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는 회원국의 재량에 맡기고 있어 시각적이든지 비시각적이든지 상표의 유형에 대해서 제한을 하고 있지 않다.

또한, 상표법 조약에서는 냄새나 소리와 같이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상표는 보호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조약에서 "어떤 조약 당사국도 그 국가의 법제 하에서 상표로서 등록될 수 있는 표시들로 구성된 표장들에 본 조약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여 비시각적인 상표의 보호를 강제하기보다는 TRIPS 협정의 규정과 동일한 수준에서 각국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 조약 규칙에서는 시각적인 상표뿐만 아니라 비시각적인 상표까지 새로운 유형의 상표를 보호할 경우 필요한 출원절차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새로운 유형의 상표를 상표법상 보호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었다.

그리고 WIPO WCT 16차 회의(2006.11)에서부터 20차 회의(2008.12)까지 비전형적인 상표의 견본제출 등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였고, 새로운 형태의 상표 중 입체상표, 동작상표, 홀로그램상표, 색채상표, 위치상표, 소리상표, 제스처상표의 특정방법에 대하여는 각국에 공통된 판단기준으로 합의를 하였으나, 냄새상표, 촉각상표, 미각상표의 특정방법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다.

이러한 국제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국내에서도 상표법 개정을 통해 입체상표, 색채상표, 홀로그램상표, 동작상표를 도입하였고, 소리상표와 냄새상표도 도입을 앞두고 있는 실정이지만, 위치상표에 대해서는 별다른 논의가 없는 상태이다.

새로운 유형의 상표 : 소리와 냄새, 위치 상표

소리상표

최근 우리는 집이나 거리에서 SK텔레콤의 "띵띵띠딩띵"이라든지 KT의 "두두두 올레"와 같은 간단

한 멜로디가 포함된 광고에서 눈으로 그 광고를 보지 않더라도 소리만으로도 그 광고가 특정회사의 광고임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소리' 그 자체만으로도 타인의 상품이나 서비스와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식별할 수 있는 소리마케팅 기법이 등장하였다.

마케팅 기업의 다양화에 따른 사회적 변화에 소리상표를 인정하고 도입 · 시행하는 국가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어떠한 당사국도 등록의 요건으로 표지가 시각적으로 인식 가능할 것을 요구할 수 없으며, 어떠한 당사국도 상표를 구성하는 표지가 소리 또는 냄새라는 이유만으로 상표의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한 한미FTA 협정문 제18.2조 1.에 따라 우리도 소리상표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였다.

소리상표의 도입에 있어서 논란이 되었던 점은 전통적인 상표는 시각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었던 반면 소리상표는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곤란하다는 점이다. 소리상표를 특정하기 위해 미국에서는 시각적인 표현의 도면제출은 불필요하며 오디오나 비디오카세트테이프를 사용견본으로 제출하고 비음악적 소리의 경우에는 문자 설명으로도 특정을 인정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사실적 표현 요건을 강조하여 소리표장이 음악 또는 언어가 수반하는 음악인 경우에는 반드시 악보를 제출하여야 하며, 비음악적 소리인 경우 오실로그램, 스펙트럼, 소노그램 등으로 소리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거나 전자파일을 제출하여야 한다. WIPO WCT에서 제시한 기준에서는 오선상의 음표, 상표를 구성하는 소리의 설명, 소리의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녹음물의 제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소리상표를 도입하고 시행하기 위해서는 소리를 특정 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등록된 소리상표와 후출원된 소리상표의 유사여부 판단 문제, 자연의 소리나 동물의 울음소리와 같이 흔히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상품이나 서비스와 결합했을 때 식별력 판단의 문제, 상품이나 서비스의 특성상 이용에 불가결한 소리일 때의 문제, 저작권과의 저촉관계 등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냄새상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향기 나는 화장지, 펜 등을 쉽게 접할 수 있을 정도로 향기마케팅도 기업의 일반적인 마케팅 방법으로 자리가 잡혀 있다. 그리고 과거 단순히 시각과 청각에 의존했던 영상산업이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4D라는 새로운 영역이 개척되어 미래에는 향기까지도 광고에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앞으로 냄새상표의 중요성이 매우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냄새상표를 최초로 인정한 사례로는 1990년 미국에서 자수용실 및 바느질용 실이 지닌 특징적 냄새에 대하여 비기능적인 한 냄새도 출처를 구별하는 상표로서 다른 요소와 달리 취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하여, 냄새상표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인정하였다. 이후 레이저프린터의 토너에 대한 레몬향, 차량용 윤활유에 대한 아몬드향 등에서도 등록결정을 내렸다. 종래에 미국 특허상표청은 냄새상표가 시각적으로 인식이 불가능하므로 상표를 자세하게 설명한 서면 제출을 요구하였었으나, 현재 상표심사매뉴얼에서는 문지르거나 긁어서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스티커를 상표의 견본으로서 설명서와 함께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유럽 상표디자인청이 1999년 테니스공의 신선한 풀 냄새를 최초로 냄새상표로 인정하였는데, 냄새상표의 등록여부를 연상작용과 결부시켜 냄새를 통해 우리

가 잘 알고 있는 어떤 이미지를 연상할 수 있으면 냄새 상표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후 장미향 나는 타이어, 맥주 냄새가 나는 다트의 화살 날개가 냄새상표로 등록이 되었다. 이는 유럽에서는 상표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냄새상표의 경우에도 자타상품의 식별력과 시각적인 표현, 비기능성 등의 요건을 갖춘다면 상표로서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냄새와 같은 감각적 요소가 상표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냄새의 고정문제, 냄새의 고갈, 혼동가능성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유사여부 판단에서도 개개인에 따라 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위치상표

청바지를 최초로 고안한 미국의 리바이스社는 영국의 청바지업체를 상대로 한 상표권 소송에서, 자사 청바지의 뒷주머니에 박음질 되어 있는 "Levi's" 로고가 새겨진 붉은색의 탭은 65년 동안 상표로서 등록된 권리로써, 등록상표를 뒷주머니에 달 수 있는 유일한 회사는 리바이스社밖에 없다고 위치상표를 주장한 사건이 있다.

이처럼 위치상표는 상표모양의 특정한 위치 또는 상표를 부착하는 특정한 위치를 독점하기 위해 고안된 상표이다.

위치상표에 대해 WIPO WCT에서는 식별력이 없는 표장일지라도 상품 등의 특정 위치에 사용됨으로써 소비자가 누군가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 혹은 서비스임을 인식할 수 있을 경우와 표장 자체의 식별력이 없고 위치에 따른 식별력이 없는 표장일지라도 상품의 특정 위치에 계속적으로 사용되어 이를 소비자가 누군가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 혹은 서비스임을 인식하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 위치상표로서 인정할 것인지 여부 등 위치상표의 권리범위를 특정 짓는 방법과 유사범위에 관한 검토를 하였다.

따라서 위치상표는 상품 등에 부착하는 시각적 인식이 가능한 표장이 그 표장 자체로서는 고유한 식별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표장을 상품 등의 일정한 위치에 부착함으로써 식별력을 갖게 된다면 표장의 부착방법 즉, 위치에 따라 식별력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위치상표의 종류에는 특정 위치에 식별력이 있는 형상이 존재하는 형상위치표장, 특정 위치에 식별력 있는 모양이 있는 모양위치표장, 특정 위치에 식별력을 갖는 색채가 있는 색채위치표장이 있으며, 위치상표의 등록을 인정하고 있는 국가로는 미국, 유럽, 일본 등이 있다.

미국에서는 Adidas社의 모자 중앙에 3개의 라인을 디자인한 것[1]과 CALLAWAY GOLF社의 골프클럽 샤

1) 미국 등록상표 No.32365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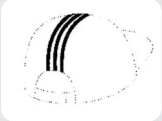

2) 미국 등록상표 No.1821477.

프트와 헤드 사이에 띠를 디자인한 것[2], Harper Brush Works社의 빗자루 손잡이 부분에 적색을 두른 것[3]에 대해 위치상표로 인정을 하였고, 유럽에서는 ROTRING社 필기구의 끝부분에 빨간 띠를 부착한 것[4]에 대해 식별력을 인정하였다. 일본에서는 위치상표의 특정을 위해서는 출원서류에 특정 위치를 알 수 있는 도안에 상표가 부착된 상품의 형태에 대한 점선을 기재하고 상표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며, 상표자체에 식별력이 있는 경우에는 위치상표로 등록이 용이하고 상표자체가 식별력이 없더라도 상품의 특정 위치에 부착된 경우만으로도 식별력이 있다고 보고 있다.

비전형상표 중복보호 및 권리충돌 문제

새로운 유형의 상표를 도입함에 있어 항시 논란이 되는 점은 상표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의 문제인데, 이 문제는 새로운 유형의 상표를 통해 소비자가 자신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할 수 있는지 즉, 식별력의 문제와 시각적으로 인식 및 표현이 가능한지에 있다.

기본적으로 상표는 자신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상표권자의 권리를 보호함과 동시에 특허나 저작권 등과 같은 다른 지식재산권과 달리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목적을 가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특수한 이유로 상표권은 다른 지식재산권과 달리, 10년마다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통해 영구히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상표권과 저작권, 디자인권은 보호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하나의 형태에 대해 식별력에 초점을 두면 상표권이 발생할 것이고, 미관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면 디자인권이 발생하며, 표현의 측면에 초점을 두면 저작권이 발생할 것이다.

특히 과거와 달리 전형적인 상표뿐만 아니라 소리, 입체, 냄새 등과 같은 비전형상표를 보호하기 시작한 시점에서는 상표권과 저작권, 디자인권 간의 중복보호라든지 권리충돌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충분하다.

"어린왕자 사건[5]"에서처럼 저작권이나 디자인권의 한정된 권리보호기간이 만료된 것에 대해 상표권으로 등록을 하여 영구히 보호를 받게 한다면 지식재산권제도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인 공공의 영역에서 모든 사람들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이용을 통해 새로운 창작을 저해시킬 수 있다.

따라서 비전형상표를 도입하려는 시점에서 저작권과 디자인권 등 다른 지식재산권을 통해 보호를 받아오던 권리에 대해 영구적 독점을 위해 상표출원을 하는 경우와 타인의 저작권이나 디자인권과 저촉되는 상표출원을 하는 경우 등의 중복보호나 권리충돌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2011. 10

3) 미국 등록상표 No.3257233.

4) ROTRING社의 등록상표

5) 생텍쥐페리의 "어린왕자"는 1974년 저작권이 소멸되어 국내 출판시장에서 자유롭게 사용되어 왔음. 그러나 2007년 10월 생텍쥐페리 유족재단과 상표권 독점 사용계약을 맺은 디자인문구업체가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어린왕자" 단행본의 판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 이에 관련 출판사는 "어린왕자" 상표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결정 청구를 했고, 2009년 1월 특허심판원은 저작물 내용 그대로가 수록된 단행본의 제호만으로 사용되는 상표권의 경우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보통명칭 또는 관용상표와 같은 성격을 가진다면 "어린왕자"의 상표권은 등록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함

특허 Q&A

Q. 보정의 범위 및 보정료는 어떻게 됩니까?

A. 보정은 내용보정과 절차보정이 있습니다. 내용보정은 명세서 또는 도면의 내용을 보정하는 것이고, 절차보정은 수수료 미납, 첨부서류 미제출 등에 대하여 이루어집니다. 내용보정은 다시 명세서 또는 도면의 내용에 흠결을 스스로 보정하는 자진보정과, 출원에 대한 심사 시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심사관이 발송한 의견제출통지서에 의한 보정이 있습니다.

자진보정 및 최초거절이유통지에 대응한 보정의 허용범위

특허법 제47조제1항 본문과 동항 제1호에 의한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은 특허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에서 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신규사항추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참고적으로 '07.7.1일 출원건부터는 출원공개 시까지 특허청구범위제출 유예제도를 실시함)

보정기간 (특허법 제47조)

- 자진보정 : 특허출원된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 시 심사관으로부터의 거절이유통지 등이 없는 한, 출원인은 특허결정등본 송달 전에는 명세서 및 도면에 관한 보정을 언제라도 할 수 있습니다.
- 통지보정 : 자진보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심사관의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고 지정기간 내에 보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기간은 2개월 이내이며 이 기간은 출원인의 연장신청이 있는 경우 회수의 제한없이 연장가능하나 심사관은 필요한 경우 지정기간 연장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정인 : 보정을 할 수 있는 자는 출원인 또는 출원인의 대리인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보정료

절차보정(위임장 미 제출 등), 내용보정(명세서 등 보정) 구분없이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 보정료 14,000원, 전자문서로 제출 시 보정료 4,0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2조 제1항 제10호). 다만 보정의 기준 및 보정료의 납부대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특허청장이 고시합니다.

창의성, 개인이 아닌 전체에 붙이는 이름

창조적 조직을 위한 전체로 일하기!

이 태 원
한국발명진흥회 운영지원팀 계장

창조의 순간

아르키메데스의 '유레카' 순간을 창조의 순간이라고 말한다. 무언가 명쾌하고 시원한 것이 쏟아져 나오는 느낌의 외침. 그래서 우리도 강한 소주의 맛이 혀끝을 미끄러져 목을 따라 넘긴 순간 '캬~' 하는 소리를 내는 건 아닐까도 싶다. 창조란 막혔던 무언가가 단숨에 해결되는 속 시원한 기분 혹은 쾌감을 준다는 데에서 그 어떤 음료보다도 청량감이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 스트레스로 기가 막힌 순간들을 보내고 난 하루의 말미에 삼키는 한 잔의 술, 맺혔던 인간관계를 풀어낼 때 부딪히는 술잔의 의미는 그런 점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순간과도 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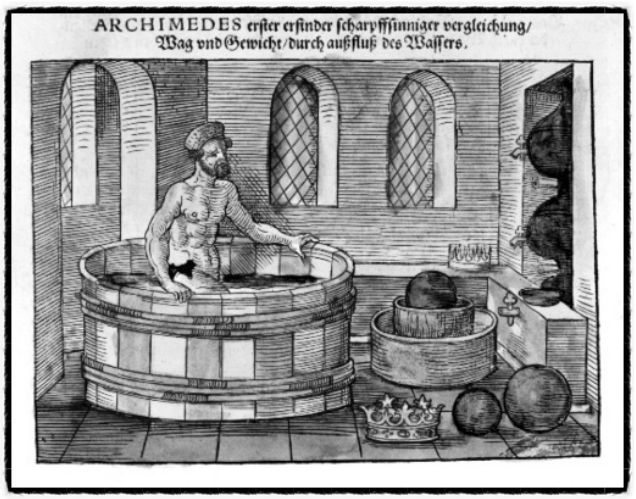

그림1. 아르키메데스가 왕관의 순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발견하게 된 창조의 순간

아무리 일상적이고 규칙적인 일을 하면서도, 아이디어 혹은 새로운 생각은 우리를 참으로 목마르게 한다. 보험업계나 요식업과 같은 백인백색의 사람들을 상대하는 서비스업 종사자라면, 한번 성공했던 방법이 모두에게 통하지 않는다는 것쯤은 몸소 체

그림2. IDEO에서의 브레인스토밍 회의 장면,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포스트잇에 표현하여 공유하고 있다.

험으로 지니고 있을 것이다. 사람은 다 똑같다는 거만한 생각이 들 때에 골치 아픈 민원인이 나타나고, 문제점을 해결하고 최종제품단계까지 완성했다고 생각한 순간 그 문제점의 해결로 인해 또 다른 문제점이 터지기도 한다. 그럴 땐, 완전히 다른 생각과 아이디어를 찾지 않고서는 도무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더구나 우리는 팀으로 일하는 사회를 살고 있다. 아직도 뛰어난 개인이 실력 발휘를 하는 분야는 많지만, 절대적인 능력과 권능을 가진 개인은 이 시대에서 손꼽아보기가 쉽지 않다. 그동안 수없이 언급했던 워렌 버핏이나 스티브 잡스와 같은 이들이 이제 경영일선에서 물러나면서 자신의 후계로 내세운 이들을 보라. 다시 말하면, 누가 봐도 독보적이고 창조적인 업적을 이룬 이들도 결코 혼자서 일하지 않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독단적인 업무지시와 애플 매니아가 아니면 채용도 하지 않는다는 말이 나돌 정도로 고집 센 스티브 잡스로 알려졌지만, 그는 절대 독불장군이 아니었다. 아이팟이란 혁신적인 상품의 디자인도 IDEO[1] 라는 세계적인 디자인 그룹의 작품이었다. 스티브 잡스는 단지 최고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을 뿐이고, 자신이 가진 역량과 애플의 기술력을 배경으로 IDEO라는 디자인 업계의 최고를 통해 작품을 만들어 낸 것이다.

이번 글은 보다 창의적인 조직을 만들기 위한 몇 가지 아이디어를 찾아보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다. 개인이 아닌 하나의 조직 혹은 팀이 진정한 창조적인 단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러한 조직을 만들기 위한 제언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나누어 보고자 한다.

브레인스토밍의 오용과 남용

회식메뉴를 결정하거나, 생산적인 농담을 즐길 때 정도 외에는 브레인스토밍을 회의의 방법으로 삼는 경우는 매우 드문 듯하다.

그런데 조직의 창의력을 말한다고 하면서 브레인스토밍을 언급하고 있는가하는 의문이 생길 것이다. 브레인스토밍은 개인이나 조직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해 나가는 방법이자 아이디어가 드러나는 과정 그 자체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팀원들의 의사의 교환과 조직의 문화와 커뮤니케이션 규칙 등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팀은 그 자체가 개인들의 단순한 모임이나 결합이 아니라, 공동의 목적과 목표를 위해 결성되고, 소속된 개인들은 그 목적과 목표를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해야 할 의무과 실행력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들이 그저 단조로운 일상의 업무 가운데 함몰되어, 조직의 활력을 일으키지 못한다면, 조직은 활성을 잃고 만다. 그런 종류의 일이라면, 차라리 외부의 전문기관에 아웃소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많은 기업들이 이미 교육, 급여, 복지 등의 사항에 대해서 외부기관에 아웃소싱하고 있는 것은 조직의 생산성과 활력을

1) 기업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에서도 인간중심, 디자인 중심의 혁신과 성장을 돕는다는 취지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글로벌 디자인 기업. CEO인 팀 브라운은 디자인분야에서만이 아닌 모든 업무 영역에서의 디자인적 사고를 주창하고 있다.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이다.

유능한 인재들의 단순결합으로는 시너지를 얻을 수 없다

단순히 능력 있는 개인들을 한 묶음으로 묶는다고 해서 창조적인 시너지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그저 각자 일할 뿐이며, 오히려 조직의 창의성을 해치는 결과를 빚는다. 브레인스토밍을 포함해서, 이러한 팀이 공통의 회의를 진행하게 되면, 소위 사회적 태만이라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는 개인적인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혼자 일할 때보다 더 낮은 책임감을 갖게 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비슷한 의견이나 아이디어를 갖고 있겠지 하는 마음에서 좀처럼 아이디어를 말하지 않는 분위기를 형성하게 되기도 한다.

그래도 한 사람보다는 팀이 낫겠지 하는 생각도 여지없이 무너지는 상황이 있다. 집단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문화를 가진 팀 혹은 기업이라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은 그야말로 왕따가 되고 만다. 담배를 끊기 위한 목적으로 모인 12명의 실험집단에서 한 사람이 강력하게 금연을 주장하자, 주변 사람들이 그에게 압력을 가했다. 그리고 금연주장자는 다시금 회심(?)의 증거로 이 모임이 끝날 때까지 하루 두 갑의 담배를 피우겠다는 다짐을 해야 했다. 이러한 점들이 아무리 능력 있다고 인정받는 사람들이라도 공동의 세밀한 목표가 없이는 이합집산만도 못한 퇴보를 보이는 이유가 된다. 비유해서 말하자면, 세계적인 클래식 악기 연주자들을 한 자리에 모아 연주케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방을 나누어 연주를 하게 하고 각각의 악기별 연주 녹음을 동시에 듣는 것과 마찬가지다. 결과는 어떨까? 완전한 하모니? 완벽한 불협화음이 예상되지 않을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하기 위한 회의의 원칙

첫 번째는 비판하지 않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경청이라고 말할 수 있다. 과거에도 많이 제안이 되었으나 실행가능성이 없는 아이디어라고 할지라도, 경청의 의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것과 아닐 듯한 기미가 보이는 즉시 싹을 자르듯 쳐내는 비판의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분명 다르다. 전자는 비록 실행이 미흡한 아이디어라 할지라도 경청하는 다른 팀원들로부터 새로운 아이디어를 공급됨으로써 실행력을 얻을 수도 있다. F-15라는 거대한 전투기를 띄운 힘은 항공기 설계의 우수성이라기보다는 강력한 엔진의 출력 덕분이었다.[2)]

반면, 후자의 경우는 개인 스스로가 자신의 불완전한 아이디어를 제안하지 못하게 한다. 개인적으로 일하는 창안자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고안과 아이디어에 대한 평가다. 아이디어란 원래 완벽한 실행계획이 아니다. 하나의 아이디어는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실행계획으로까지 발전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명확한 반대의견도 없이 아이디어의 제안에서부터 제재를 받는 것은 분명 창의적인 분위기와 문화를 해칠 뿐이다. 라이트 형제의 비행기는 그들이 허물없는 형제사이였기에 가능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두 번째로는 자유분방한 분위기를 들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내용과도 유사하지만, 아이디어란 고정된 사고의 틀에서 짜내는 것이 아니라, 아르키메데스의 '유레카'의 순

그림3. F-15를 띄워 올린 힘도 불완전한 아이디어를 보완한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였다.

■ 최근 5년간 '특허 괴물'의 소송 건수 현황

순위	피소기업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전체
1	삼성	5	3	8	13	9	38
2	마이크로소프트	3	5	6	11	9	34
	모토로라	1	6	4	12	11	34
4	HP	6	3	4	9	10	32
5	AT&T	2	2	6	14	6	30
6	소니	3	7	4	8	7	29
	LG	0	7	3	11	8	29
8	애플	4	3	3	11	7	28
	델	4	3	7	9	5	28
	노키아	2	7	3	9	7	28

자료 : 미국 페이턴트프리덤

그림4. Patent Troll의 먹이가 되지 않으려면? "더 이상 출원량으로 승부할 수 없는 상황"이 찾아온 것이다.

간에 떠오르는 것이기에 자유롭고 해방된 상황이 중요하다. 왕의 연구실에서 고민을 안고 빠져나와 심신의 피로를 풀어주는 따뜻한 목욕통 안에 몸을 담그고 있는 아르키메데스를 떠올려 보자. 혹은 쥐가 날 정도로 압박감을 느끼다가 해변가를 지나는 도로를 따라 드라이브를 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자. 무언가 해방감과 함께 묶여 있던 생각의 틈이 벌어지는 느낌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경직된 조직에서는 자율과 자기 의사가 중요하지 않다. 오직 충성이라는 말로 대변되는 복종과 지시의 수렴이 가장 높은 덕목이다. 수직 계열화된 틀을 벗어나게 해주는 사고방식이 결코 달가울 리가 없다. 혹시, 온갖 인사권과 실적을 무기로 직원들에게 산뜻한 아이디어를 요구하고 있지 않은지 되짚어보자. 당신은 그저 불평 없이 나사를 조일 조립공이 필요한 업무의 팀장인가, 조금이라도 생산성 있는 사고와 생각으로 업무를 개선하고자 하는 팀장인가?

세 번째는 질보다 양을 우선해야 한다는 점이다. 삼성과 소니가 양적인 측면보다는 상대가 보유한 유효한 특허의 수를 가지고, 크로스라이센싱을 했던 일은 이제 전설과도 같은 일이 되어버렸다. 우리나라도 세계 4위의 특허보유국에 걸맞는 양질의 특허를 기대하며 이미 출원량을 충분히 채웠던 기업들은 질적인 승부에 주목하고 있다. 질보다 양을 우선했던 과거의 특허출원 전략에 대해서 많은 비판도 있고, 분명 양보다는 질을 택하는 달라진 특허전략에는 그러한 비판들을 발전적으로 수용한 탓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우리는 아이디어를 다듬어 권리화하는 일련의 과정에 대해 충실히 학습한 것으로 보면 된다. 길을 닦는 것과 고속의 차량을 만들어 내는 것은 결코 별개의 사건이 아니다. 잘 닦인 길이 있어야 성능 좋은 차량을 만들어 내는 것이 의미 있는 것처럼, 절차에 대한 확고한 이해와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론적인 전략이 있어야 아이디어가 권리로 거침없이 달려갈 수 있다.

물론, 우리는 이와 같은 특허의 양적인 팽창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 거품과 흠결을 만들어 냈음도 간과할 수는 없다. 흠이 있는 특허를 양산해 내거나, 방어력 없는 특허로 인해 누수 되고 있는 자원이 염려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특허는 질적인 우위를 갖추기 위한 전략을 통해 탄생될 것이다.

네 번째, 결합과 개선이 만족스러운 성과를 만들어 낸다. 결합은 기존의 것과 기존의 것 혹은 기존의 것과 새로운 것이 합쳐진 모습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결합은 결국 기존의 것보다 나은 무언가를 위한 전략이자 아이디어다. 개선이 없는 결합이란 그저 무의미한 덧붙이기로, 앞서 단순히 능력 있는 사람들의 집합소로서의 팀과 유사하다. 다양한 기능을 갖는 멀티펑션 툴(multi-function

2) 1972년에 첫 시험비행에 성공한 기체임에도 현재까지도 다양한 결함이 보고되고 있다. "Air Combat Command clears selected F-15s for flight."Air Force, 9 January 2008. Retrieved: 1 September 2011; "F-15 Eagle accident report released."US Air Force, 10 January 2008. Retrieved: 26 January 2008; Buzanowski, J.G. "Air Force leaders discuss F-15 accident, future."US Air Force, 10 January 2008. Retrieved: 26 January 2008.

그림5. 1980년대 출시된 비디오TV의 신문 전면 광고. LG전자는 최근까지도 비디오TV를 생산하고 있다.

tool)은 사람들의 기대심리를 자극한다. 옛날에 TV와 비디오의 결합이 그러했고, 최근의 MP3플레이어와 휴대전화기가 그렇다. 과거 TV와 비디오의 결합이 생각만큼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지 못한 것에 반해, 오늘날 음악을 플레이할 수 없는 휴대전화는 인기가 없다. 아니, 그런 제품을 찾는 것부터가 고난이의 일이다. 분명 시너지를 일으킬 만한 분명한 차원의 발전이 결합에는 담겨야 한다. TV와 비디오의 결합이 그저 올인원(all-in-one)의 개념을 발전시킨 것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이 비성공[3]의 이유다.

물론 여기까지는 실험실에서의 연구로부터 얻은 결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분명 필수적인 조건이자 원칙이라고 볼 수 있다. IDEO 그룹은 이러한 원칙에 더해, 보다 현실성 있는 아이디어 도출전략을 추가하여, 오늘과 같은 혁신의 기회들을 만들어 가고 있다.

그것은 먼저, 주제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다. 아무리 열띤 토론이어도 문제점과 해결책에 초점을 두지 않고는 언저리의 대화로 마무리되고 말 것이다. 우리가 흔히 브레인스토밍이라고 부르는 회의 형태는 언제 사용하고 있는가? 필수불가결한 사업의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인가? 그보다는 점심이나 회식에서 먹을 음식을 결정하고, 팀의 단합을 위한 워크숍 프로그램을 짜는 정도에 그치지 않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브레인스토밍을 단지 가벼운 의견이나 아이디어를 모으는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 하나의 조직이 창조력을 갖추는 막강한 툴임에도 불구하고, 포르쉐를 타고 밭일 나가는 촌로와 같은 상황을 만들고 있다.

다음으로는, 한 번에 한 가지 주제만을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분명 대화와 토론 중에 앞서 생각하는 이들이 있고, 주제와는 직접 관련이 없지만 당장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도 있다. 하지만, 이는 결국 집중력의 부재에서 오는 것으로, 한 주제에 집중할 때에 이런 여력의 에너지가 새어 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그리고 화이트보드나 포스트잇을 활용하여, 갓 태어난 아이디어들을 흩어지지 않게 모으는 것이다. 이제 부화한 아기 새를 물가로 데리고 나가거나 갓난아이에게 성장(盛裝)시키는 것은 오히려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다. 아이디어는 계획안도 아니고, 권리장도 아니다. 아이디어는 아이디어답게 취급해야 발전 전략이 추가되고, 실행전략이 결합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브레인스토밍의 일정을 사전에 통지하는 것이다. 앞서의 말대로 우리의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브레인스토밍은 준비되지 않은 회의이며 워밍업을 위한 회의이기에, 사전에 브레인스토밍 회의를 한다는 공지는 왠지 낯설다. 하지만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생각해오고, 충분히 발전시켜 본 경험과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주제로 언제까지 아이디어를 담아 와야 한다고 하는 사전통지가 자기 스스로의 마감시한이 되고, 아이디어를 만들어 낼 자극제가 된다.

진행은 아무나 하나?

물론, 이와 같은 회의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 외에도 3~10명이, 45분~2시간 정도로 회의를 진행한다는

등의 보다 세부적인 약속들도 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 더욱 중요하게 손꼽는 것은 훈련을 받은 진행자다.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진행자가 이끄는 회의에서 도출되는 아이디어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2배는 양질의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도 이미 확보된 결론이다. 특히 각각의 업무에 함몰된 전문성 지향의 조직사회에서 각자의 이야기를 질서있게 뽑아내는 능력은 충분히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 대화와 토론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팀은 명목상으로는 하나의 이름 아래 모인 팀이 될 뿐이다. 이는 창의성, 독창성 모두에 적용된다. 더욱이 실행가능성, 효용성 그리고 보편성의 측면에서 검토했을 때에도 역시 2배가 넘는 양질의 아이디어를 내놓은 것은 전문적인 진행자가 있었을 때 가능했다.

결국 팀에 목표를 부여하고 주제의식을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하면서, 거기에 훈련받은 진행자까지 있는 경우라면, 전혀 그렇지 못한 보통의 조직에 비해 4배에 가까운 성과를 낸다는 것은 산술적으로도 계산이 된다. 더불어 실행력 높은 세밀한 계획안이 수립된다면, 이를 수행하는 단위에서는 보다 명료하게 업무가 진행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회의 한 번의 위력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두 말이 필요 없어진다.

> “기장과 부기장의 커뮤니케이션의 실패가 불러온 대한항공 항공기의 괌 추락사건 같은 끔찍한 실패사례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부정확한 지시나 합의되지 않은 채 끝내 버린 회의의 악영향이 어느 정도일지는 쉽게 추측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전문가인가, 사공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위원들은 전문가이기는 하지만, 실전에서는 사공에 더 가깝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분명 자신만의 목소리를 내는 데에 바쁘지, 결코 의견을 수렴하고자 모인 이들이 아니다. 그나마도 전문분야에 대해서만 의견을 말하면 다행이지만, 엔지니어가 자신이 개발한 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판매에까지 왈가왈부한다면 귀를 트일 진짜 아이디어가 아닌 이상, ‘감 놔라! 대추 놔라!’ 식의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조율하고, 필요한 수준에서의 답변을 유도해내는 합리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진행자가 분명 필요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위원회에서 던져지는 의견들은 수렴이 아닌 발산이 되어, 서로를 혼란스럽게 만든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속담이 위원회를 일컫는 이야기가 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물론 성공적인 아이디어 도출을 위한 노력과 훈련은 브레인스토밍 등의 회의를 주재하는 진행자와 아이디어를 평가하는 위원회의 위원들만의 몫이 아니다. 무엇보다 참여하는 이들에 대한 훈련이 중요하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하기 위한 전제조건들을 지키는 것으로도 상당한 변화와 발전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 하나가 막연히 새로운 것을 생각해 내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아이디어와 비교해서, 보다 독창적이고 차별성을 갖춘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것에 있다. 논어에서도 공자는 ‘옛 것을 익혀 새로운 것을 안다’는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의 정신을 강조하고 있다. 과거는 분명 옛 것으로부터 나온다. 근거나 근본이 없는 생각이나 제품이 생산성이

3) 분명히 비디오TV는 성공한 제품이기는 했다. 1994년과 1995년 무렵 TV의 표준과도 같은 형태였다. 하지만, 성능 좋은 비디오플레이어들은 여전히 단독제품으로 생산이 되었고, 비디오TV가 둘 중 하나만 고장이 나도 수리를 해야 한다는 점에는 비디오가 고장 난 TV가 되는 사례가 흔히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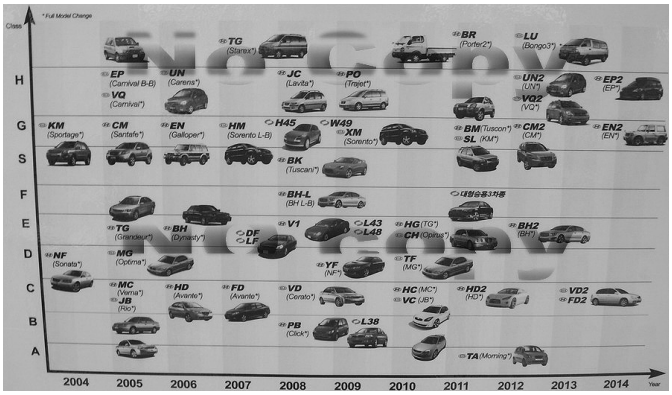

그림6. 현대기아차의 꽉 찬 라인업 (좌측은 1980년대의 현대자동차 라인업)

나 기업의 가치를 보장하지 않는다. 자동차 제조회사들이 자신만의 독특한 라인업을 갖추고 한 눈에 봐도 어느 메이커의 차량인지를 알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신뢰와 전통을 바탕으로 하여, 기술적으로 문화적으로 발전된 차량을 만들어 내고 있음을 소비자에게 인식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과업인지를 알려 주는 것이다.

그리고 문화라는 말로 일컬을 수 있겠지만, 사회적, 예술적 측면 그리고 기본적으로 경제적 측면에서의 가치를 판단해 보아야 한다. 아무리 혁신적인 아이디어라도 자신의 업, 혹은 기업의 문화적 가치나 경제적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면 과감히 버릴 줄 아는 용기도 필요하다. 기업에서 효용가치가 없는 아이디어라면, 혁신적으로 보이는 아이디어일지라도 현실과 현재적 가치를 바탕으로 생산된 아이디어라고 볼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이런 아이디어는 다른 영역이나 타 기업에서라도 실행력 있는 계획이 되기는 어렵다.

이렇듯 사전에 제시된 회의의 조건과 참여자들에 대한 훈련이 아이디어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와 같은 조건이 부여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흔히 자신에게 익숙한 업무와 아이디어에 고착되어, 독창성을 희생시키고 만다. 그래서 발전이 없이 도태되는 기업들의 내면을 들여다 보면, 과거의 성공을 답습하려는 시도에 여전히 몰입되어 있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이다. 패러다임이라는 측면에서 보아도, 새로운 문제는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기반에서 풀어내야 한다. 문제를 발생시킨 시스템을 가지고, 과거에 성공했다는 전력을 근거로, 문제를 풀고자 하면, 오직 실패가 우선할 뿐이다. 맞지 않는 열쇠로는 문을 열 수는 없는 일이다.

성과에 대한 보상은 누구에게?

많은 기업들이 특허출원에 따른 보상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보상은 누구에게 주어질 것인가? 팀 단위로 업무를 수행하고, 동료들 간의 의견교환이 아이디어를 얻고 마름질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을 텐데. 개인에게만 주어진 과업이나 과제가 아닌 이상, 팀 단위 혹은 그룹단위로 포상하는 것이 가장 높은 성과를 보인다고 한다.

거듭 언급하는 바가 되겠지만, 연구부문이든 기획부문이든 우수한 연구원이나 부서원들을 서로 연합 없이 그저 모아 놓은 것에 불과한 조직은 누구도 만들고 싶지 않을 것이다. 팀 내에서 소위 브레인 역할을 하는 이들은 서로 다른 생각을 공유하며 대화해야 하고, 그 결과로 얻어진 아이디어가 가장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낼 것이 분명한데, 그렇다면 그 성과를 아이디어를 최종 제안한 사람에게 주어야 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 팀 단위, 혹은 그룹 단위의 보상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물론, 개인 단위의 과제로 볼 수 있는 성과들도 있지만, 아이디

어를 도출하여 이를 계획으로 혹은 권리로 변모시키는 작업은 팀 혹은 그룹의 일이 되어야 한다.

당신은 창의적 자유를 견뎌낼 수 있는가?

글을 마무리하기 전에 분명히 던져야 할 두 개의 질문이 있다. 하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원하는가?' 이고, 또 하나는 '창의적 자유를 견딜 수 있는가?' 이다. 우리가 일하는 모든 기업과 기관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한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변화하는 시대에 과거를 답습하는 것은 퇴보 이상의 실패와의 계약을 의미한다. 그저 열심히 달려도 퇴출의 위험을 안게 되는 것이 오늘날의 변화사회이다. 그런데, 발전적인 전략과 문제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창조해내지 못한다면, 성과와 성공을 말할 자격도 얻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창의적인 사람은 대체로 열린 사고를 가진 자유로운 영혼들인 경우가 많다. 그런 자유로운 사고와 행동의 후배나 부하직원을 보고 당신은 기꺼이 받아줄 수가 있는가? 조직의 질서와 상명하복의 가치를 좀 더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 크기만큼의 창의력은 분명 기대해서는 안 된다. 혹, 창의력이 발휘되기 위한 최소한의 자유라는 임계점도 다다를 수 없다면, 아예 창의적인 조직 만들기를 포기하는 것이 나을지도 모른다.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함을 인식한 이상,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분위기와 문화를 만들어야 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수용소문학이라는 장르가 생길 정도로 갇힌 이들이 썼던 수많은 작품들이 있다. 이 작품들에는 깊은 고뇌가 있고, 삶에 대한 깨달음이 담겨 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어떤 창의성을 발견했노라고 하는 사람은 없다. 역경을 이겨 낸 놀라운 능력이나 목적의식을 창의적이라고 말할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다. 삶에 대한 고뇌와 깨달음. 이것이 수용소라는 곳의 문화적(문화라고 일컬을 수 있다면) 색채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얻고자 한다면 분명 창의적인 활력이 넘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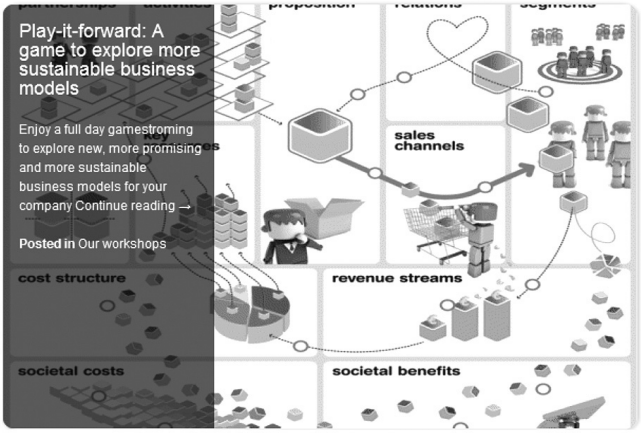

그림7. 경영컨설팅 그룹, Studio Park이 소개하고 있는 Gamestorming 기법

최근에는 브레인스토밍 기법에 대한 연구가 발전적으로 진행되면서, 게임스토밍이라는 방법도 등장하고 있다. 말 그대로 게임을 통한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할 수 있다. 게임이 달성해야 하는 목표와 경쟁, 기술의 습득 혹은 재화의 물물교환이라는 다채로운 미션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점을 놓고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모습과 유사점이 크다. 아직은 낯선 개념이지만, 현재의 회의 분위기나 회의스킬을 향상시키고자 한다면, 이와 같은 새로운 기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봄으로써, 새로운 패러다임을 저항감 없이 받아들이기 위한 지혜를 발휘해 보는 것도 적극 추천한다.

각자를 인정하고, 경청하는 분위기가 형성된다면, 달성할 수 있다. IDEO의 사장이 아이디어 회의에서는 자신도 하나의 의견을 제안하는 사람에 불과해진다고 한다. 원탁에 앉아 있다는 의식이 없으면, 아이디어는 제안될 수밖에 없다. 관료적 구조를 가진 조직이라면, 자치권을 가진 국가들의 연합체인 연방국과 같이 하부 조직에 독립적인 의사결정과 예산운영권한을 주어서라도 변모의 과정을 밟아야 한다. 기업만큼 견제와 균형이 설 자리가 없는 조직도 드물기 때문이다. 2011. 10

교육현장에서 발명 교육의 필요성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발명교육현장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발명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자.

이 숙 희
성암여중 교사

어려서부터 발명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그런 교육이 밑거름돼서, 후에 사회인이 되어서도 항상 발명과 창조의 가치를 바탕으로 새로운 물건을 만들고 멋진 아이디어를 사회에 제공할 수 있다면 그만한 보람이 없겠다. 교사는 자신에게 맡겨진 학생들이 바른 지식과 바른 자세를 갖도록 교육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다.

성암여중의 발명교육은 기술과 가정 교과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크게 보면, 과학과 역사를 다루는 과정에서 한글의 창제를 비롯해, 거북선이며 측우기 등의 다양한 발명품들이 교육내용으로 등장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실질적인 발명의 사고와 방법을 배운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사실 기술 · 가정 교과가 유일하다. 하나의 장을 이루고 있는 발명의 단원에서는 발명의 방법과 다양한 발명의 유형 그리고 어떻게 발명을 하는가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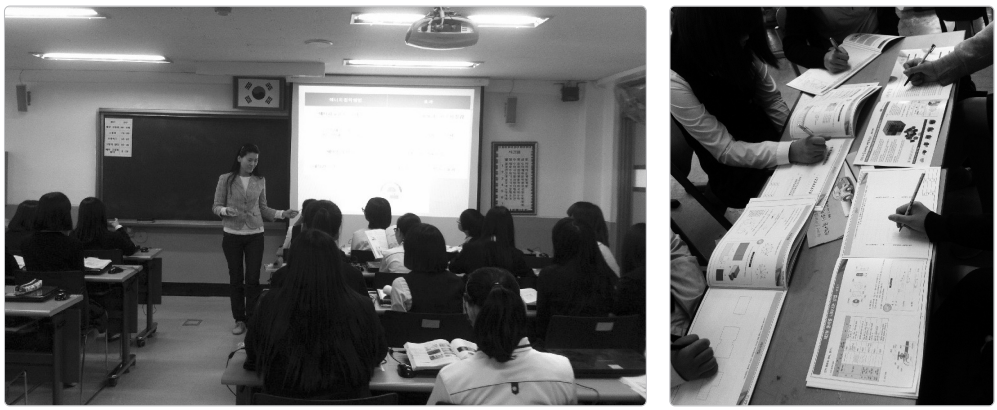

그림1. 발명교육을 진행하는 이론 및 실습 수업 전경

항상 진도에 속박되어 있는 교실에서 발명의 사고를 키우는 일이란 쉽지 않다. 실험교실이나 과학반과 같은 다양한 과학 관련 교과외 활동이 학교마다 설치되어 이루어지고 있으나, 발명교실이나 발명반 등의 활동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할 수 있다. 운영되는 학교의 수도 많지 않다. 발명·특허 특성화고와 같은 특수한 사례가 아니면 본격적인 발명교육은 만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물론 막연히 목표 없이 지원을 받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중고등학교는 설립방식에 따라 국립학교와 사립학교로 나뉘고 있는데, 사립학교의 경우는 그 학교 나름의 설립목표와 운영방침을 가지고 있어서, 과학영재를 키우겠다는 의지를 가진 학교도 있고, 과학을 활용한 보다 실용적인 발명에 초점을 두는 학교 등의 성격이 분명하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어서, 충분한 지원과 운영의 유연성이 보장된다면, 발명과 관련된 활동들이 학교 내에서 활발히 운영될 수 있다.

교시 / 날짜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5교시	6교시
	09:00~12:00			13:00~16:00		
제 1일 (8월 8일)	등록 및 개강식(10분) 발명교육과 발명대회 지도의 실제			발명과 창의성 계발		
	담당자 및 강사			강사		
제 2일 (8월 9일)	문제해결학습의 실제			과학의 원리를 이용한 발명		
	강사			강사		
제 3일 (8월 10일)	STEAM과 발명(골드버그)					
	강사					

표1. 현장 교사들이 참여하는 발명연수의 교과과정내용 '발명과 창의력 따라잡기'

주요 핵심교과와 연계된 학습 중심의 활동은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으나, 발명이란 주제는 좀처럼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 심지어 선생님들도 구체적이고도 현실적인 목표를 찾기가 힘든 것이 사실이다. 오히려 창의력을 강조하는 것이 최근에는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교과가 학생들의 창의력을 발휘해야 하는 각 분야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유독 창의력이라는 말은 영재라든지 천재라는 단어들과 연상이 되어서, 아쉽게도 불균형한 교육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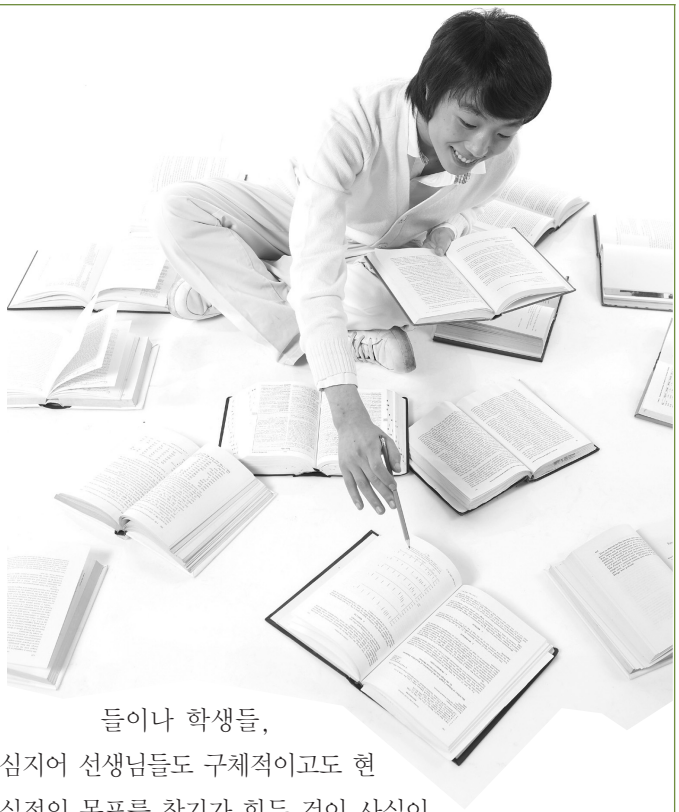

아이들의 학습과정을 운영하면서 나타나는 다양한 불균형을 바로잡거나 창의력과 창조력에 대한 활용이 발명과 참 잘 어울린다는 의미를 새겨보면, 학교에서의 발명교육에 대한 인식이 보다 나아져야 한다. 학생활동을 위한 물질적 지원이나 교보재의 제공도 너무나 중요하다. 하지만, 이를 100%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선생님들의 관심과 열정이 없다면 학교현장에서 실제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학교가 무너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학생들은 선생님으로부터 보고 배운다. 선생님들을 위한 발명교육도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교육지원과 연수 프로그램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하다.

학과공부에서는 영어와 수학에 집중하면서 심지어 우리말인 국어도 등한시 되는 분위기 속에서 발명이란 주제는 학생들과 학부모의 눈에 얼마나 매력 있고 중요한 공부인지를 알게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매일 같이 새로운 제품과 아이디어가 만들어지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다. 누구에게나 쓸모 있고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가진 제품을 만들어 낼 줄 아는 사람이 세상을 풍요롭게 만들어 가고 있다. 스티브 잡스를 배운다고 할 때, 스티브 잡스처럼 현란한 프리젠테이션 기술을 배우고 스티브 잡스만큼의 영어실력을 키운다고 그와 같은 창조력을 가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보다 체계적이고도 기존의 교과들과 융합되는 발명의 교육을 통해서, 우리도 미래의 에디슨과 스티브 잡스를 키워내야 할 것이다. 라이트형제의 비행기처럼 발명은 아이디어를 서로 나누고 대화하는 가운데 발전하고, 수학과 과학의 원리를 응용하는 데에서 만들어진다. 국어와 수학과 영어, 그리고 과학 문제를 푸는 이론으로만 배울 것이 아니라, 실용적인 배움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도 발명교육의 필요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 같은 기관들이 우리나라의 발명인재를 육성하는 밑받침이 되어 주고, 학교가 그 위에 발명과 창의라는 열매를 맺기 위한 나무를 키우는 역할을 담당한다면, 앞으로 우리나라는 발명의 숲이 되어, 해외 각지에서 좋은 발명의 열매를 얻기 위해, 혹은 그 넓고 깊은 숲을 경험하기 위해 찾아올 것이다. 밖으로 좋은 것을 찾기 위해 나가는 것보다 사람들이 찾아옴으로써 풍성해지는 발명의 숲이 될 수 있다면, 한 사람의 교사로서 묘목을 거목이 될 수 있도록 정성껏 가꾸는 역할을 담당하는 수고는 오히려 보람이자 선물이 될 것이다.

2011.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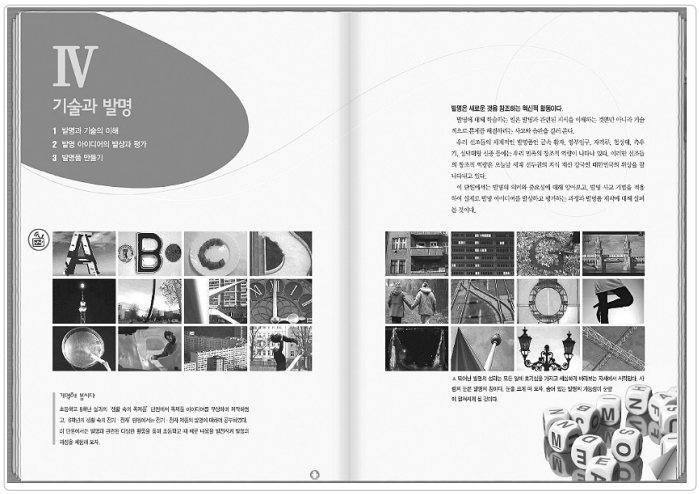

그림2. 현재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기술 · 가정 교과의 '발명' 단원

동질화된 식물세포 배양을 통한 2차 대사 산물의 대량생산 안정화

(주)운화

황우석이라는 악몽

생명체가 가진 여러 종류의 신체 조직으로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세포. 미분화 세포라고도 불리는 이것은 무엇일까?

정답은 줄기세포이다.

줄기세포는 10년 전까지만 해도 생명공학, 혹은 의학계에서나 쓰이던 용어이다. 그런데 현재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에게 이 줄기세포라는 단어는 매우 익숙하다.

어떤 사람은 줄기세포의 뜻이 무엇인지 줄줄이 읊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뜻을 전혀 몰라도 TV나 라디오에서 한 두 번씩은 들었던 기억을 가지고 있다.

본의 아니게 이 단어를 전국에 전파한 사람은 바로 황우석 박사이다.

2005년, 황우석 박사는 자신이 인간줄기세포 복제에 성공했다고 공언했으며, 그의 논문은 미국 사이언스지에 실리게 되었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거짓이었다. 논문은 조작된 것이었고, 인간의 수명과 미래를 좌우할 혁신적인 연구로 전 세계의 주목을 끌었던 그들의 프로젝트는 나락으로 떨어졌다.

이 사건은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실망을 주었고, 한국 생명공학 업계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줄기세포의 배아와 복제는 국가 차원에서 장려하던 연구였다. 모두가 황우석 박사가 보여준 거짓 희망에 속아 줄기세포 복제야말로 미래의 한국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탓이다.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벤처기업들은 모두 제2, 제3의 황우석이 될 꿈에 부풀어 있었다. 그런데 논문조작이 알려지면서 그들의 꿈은 물거품처럼 사라졌다. 국민들은 줄기세포라는 단어 자체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사업이 잘될 리가 없었다. 그들에게 있어서 2005년은 악몽이었다.

기업들이 하나, 둘 없어지던 그 해에 한 회사가 새롭게 문을 열었다. 운화라는 이름의 그 회사는, 모두가 외면하던 줄기세포 연구에 용감하게 뛰어들었다.

줄기세포라는 단어가 전 국민의 트라우마가 된 그 해에, 줄기세포를 무기로 시장을 공략해 들어간 것이다.

우리 손으로 한 번 해봅시다!

도기권 씨는 씨티은행 마케팅, 소매금융업 이사를 지내며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이후 그는 쌍용투자증권 사장, 굿모닝신한증권 사장 등을 역임하며 능력을 인정받았다. 임기를 2년 앞두고 사장 자리에서 내려왔을 때 도기권 씨는 이미 CEO로서 금융계의 유명인사가 되어 있었다.

도기권 씨는 앞서 열거한 회사들을 경영하면서 적자에 허덕이던 회사를 2,000억 원이 넘는 순이익을 창출하는 우량기업으로 탈바꿈시키기도 했고, 통합노조 문제를 마무리하기도 했다.

금융계에서 물러난 도기권 씨는 국제청소년연합(IYF)의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이 단체는 청소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청소년들을 돕기 위해 설립된 NGO였다. 치열한 기업 경영의 세계와 달리 공익적인 사업에 투신하면서 그는 베푸는 기쁨을 느낄 수 있었고, 오래간만의 여유를 맛보았다.

2005년 초, 도기권 씨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진영우 씨로부터 걸려온 전화였다.

두 사람은 1년 전, 국제청소년연합에서 처음 만났다.

진영우 씨는 당시 식물학자 겸 교사로 활동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발견한 식물줄기세포를 이용한 사업을 구상하고 있었고, 자연스럽게 경영자로 잔뼈가 굵은 도기권 씨에게 이런 저런 질문을 해왔다.

굿모닝신한증권 사장이었던 도기권 씨는 회사를 그만두면서 시간이 많이 남았고, 자연스레 진영우 씨와의 만남이 잦아졌다. 그는 진영우 씨에게 이런 저런 조언도 해주고 상담도 해주었고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다.

진영우 씨는 전화를 통해 자신이 프랑스인 투자자를 만나 계약을 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했다. 도기권 씨는 축하와 함께 계약서 사본을 보내주면 한 번 읽어보겠다고 말했다.

그날, 이메일로 계약서를 받게 된 도기권 씨는 깜짝 놀랐다. 계약서 내용이 진영우 씨에게 너무나 불리했기 때문이다.

진영우 사장

이은경 원장

계약서에는 진영우 씨와 그의 동료인 이은경 씨가 개발한 기술을 토대로 새로운 회사를 만들고, 그 지분 40%를 두 사람에게 준다고 쓰여있었다. 나머지 60%는 투자자의 품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다.

도기권 씨는 다급하게 진영우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 계약서가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습니까?"

"……"

"이대로 회사를 통째로 넘길 셈입니까? 진영우 씨, 이 기술에 정말 확신이 있습니까?"

"확신 있습니다."

진영우 씨는 자신의 기술이 미래에 엄청난 가치를 창출해 낼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다만 현실적인 문제가 그의 발목을 잡고 있을 뿐이었다.

도기권 씨는 진영우 씨와 함께 프랑스인 투자자를 만났다. 경험 많은 도기권 씨가 보기에, 프랑스인은 진영우 씨가 사업에 서툴다는 것을 꿰뚫어 보고 이를 이용해 볼까 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게 틀림 없었다. 진영우 씨는 결국 그와 계약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투자계약이 무산되자 회사에 자금난이 찾아왔다. 옆에서 지켜보던 도기권 씨는 진영우 씨의 회사가 가진 좋은 기술을 이대로 썩힐 수 없다고 판단하여, 직접 투자하기로 결심하였다.

'운화' 닻을 올리다

2005년 3월 문을 연 '운화'는 도기권, 진영우 씨를 필두로 전북대 출신의 연구원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들은 관상용 식물 악세서리를 만들며 근근이 회사를 유지해 나갔다. 물론 회사를 이끌어 가는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더 큰 꿈이 있었지만 자금이나 현실적인 문제들이 발목을 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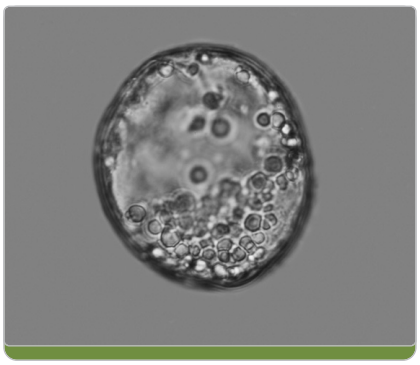

그러나 이런 어려움은 회사를 꾸리기 전에 이미 예상했던 것들이었다. 도기권 씨는 진영우 씨와 연구팀이 이뤄낸 소기의 성과들을 바탕으로 투자자들을 확보하기 위해 애썼다. 그러나 줄기세포라는 단어만 들어도 '사기 아니야?' 하는 의구심을 보이는 사람들에게서 자금을 따내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다.

결국 도기권 씨는 자신의 재산을 털어 운화에 쏟아 부었다. 그런 그를 보며, 주변 사람들은 하나같이 우려의 뜻을 전했다. 한때는 잘나가는 CEO였던 그가 무모해 보이는 사업에 사재를 털어가며 몰두하는 것이 불안해 보였을 것이다.

이른바 바이오 벤처라고 불리는 생명공학 업계는 한번 쑥대밭이 되었지만, 아직 탐험해 볼 여지가 많이 남아 있는 미지의 땅이었다. 도기권, 진영우 씨는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즐거움과 쾌감을 맛보며 힘든 상황에서도 기술연구에 대한 투자를 계속했다.

식물 줄기세포의 복제는 전 세계 바이오 기업들의 숙원이었다. 줄기세포는 세포 크기 자체가 작고 세포막이 얇으며, 식물 속에 극미량만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학자들이 줄기세포를 분리해 내려 애썼지만 분리 도중에 세포가 손상이 되었고 그 누구도 온전한 줄기세포를 손에 넣지 못했다.

그러나 운화연구진들은 반드시 온전하게 줄기세포를 손에 넣을 방법이 있을 거란 믿음을 가지고, 식물의 형성층을 주목하였다. 형성층이란 줄기 및 뿌리의 물관부와 체관부 사이에 있는 것으로 분열세포들이 길게 줄을 형성하고 있는 부위를 말한다. 그곳에 존재하는 줄기세포는 자가증식력과 다양한 분화가능성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대량 배양이 가능했다.

그러나 형성층(식물줄기세포)은 매우 얇고 미세하며 얇은 세포벽을 가진 미세한 세포층으로 이루어져 있어 분리 과정에서 쉽게 손상되기 때문에, 온전한 줄기세포를 분리해 내기가 쉽지 않았다.

2005년, 전라북도 전주 운화과학기술원에서 오랜 숙원이 이루어졌다. 운화의 연구원들이 마침내 식물 줄기세포의 분리 및 배양에 성공한 것이다.

운화는 자신들의 연구결과에 '또별'이라는 이름을 붙여 상표화시키고, 특허를 출원하였다.

특허 출원은 연구의 완성이 아닌, 시작일 뿐이었다. 운화는 영국 에든버러 대학의 세포 분자 식물 생물학 연구소와 손을 잡고 자신들이 분리한 세포가 진정한 줄기세포임을 증명하기 위한 연구를 시작했다.

식물 줄기세포의 대량생산에 성공하다

식물세포는 그 특성상, 장기배양 공정에 들어가면 세포 생장이 저하되고, 생산성이 감소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운화의 최종 목표는 이러한 기존 기술의 단점을 보완하여 식물줄기세포를 안정적으로 대량 배양하여 사업화시키고, 더 나아가 이 기술로 인류의 생명연장, 건강증진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는 것이었다.

'동질화된 식물세포 배양을 통한 2차대사산물의 대량생산 안정화.'

2006년 운화가 특허청에 제출한 신기술의 이름이다. 지금껏 그 누구도 가지 못했던 영역에 들어선지 5년. 마침내 그들은 전대미문의 성과를 이루어냈다.

2010년, 이들의 연구 성과는 '네이처 바이오테크놀로지'라는 잡지에 소개되었다. 네이처는 가장 공신력 있는 과학 저널이다. 여기에 운화의 기술에 대한 논문이 실리자 전 세계의 이목이 순식간에 한국으로 집중되었다.

운화가 분리해 낸 식물 줄기세포는 뛰어난 생리활성 효능을 보였고 그 외에도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 다양한 분야에 응용할 수 있었다.

그들은 본격적인 상품화를 위해 '운화라이프'라는 이름으로 식품 및 화장품 사업 부분을 분리시켰다. 그동안 원천기술을 확보하는데 주력했으니, 이제는 그것을 활용할 차례였다.

운화는 2010년,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가 지원하는 국제출원비용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1,900만 원 가량의 지원금이 지급되었고, 운화는 이를 이용해 '식물의 동조적인 세포주 배양을 통한 2차 대사산물의 대량생산 안정화' 라는 이름으로 국제특허 출원에 성공했다.

한편으로는 화장품 브랜드인 SN(Science & Nature), 산삼의 줄기세포를 이용한 건강식품인 라이프에이드 등 다양한 제품을 시장에 선보였고 시장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제 운화는 창립 5년 만에 임직원 121명, 매출액 68억 원에 달하는 회사로 성장했다.

그러나 그들은 성공에 만족하지 않는다. 숱한 역경을 딛고, 천신만고 끝에 손에 넣은 원천기술이다. 운화는 이제 그 기술을 가지고 세계로 나아가려 한다.

암웨이, 크리스틴 발미 등 세계 각국의 이름난 회사들이 운화와 손을 잡고 식물 줄기세포를 이용한 식품, 화장품, 의약품 등을 개발하고 있다. 그 결과물들이 '운화'라는 이름을 달고 세계 방방곡곡에 진출할 날이 멀지 않았다.

2011. 10

IP

세계는 지금
세계 지식재산권 동향
KIPO NEWS
특허청 소식
KIPA NEWS
한국발명진흥회 행사 및 소식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에 등록된 우리나라 대표 특산품
건강하게 삽시다
찬 바람 부는 가을, 다이어트 고삐 늦추지 말아야
신간안내
백만불짜리 습관, 발명상식사전
문화산책
바람의 나라, 2011 대장경 천년 세계문화축전
발명 365
초음파 탐지기, 축음기
독자마당
QUIZ

Information

세계는 지금

일본 Hitachi社 등, 중국에서의 특허출원 급증

최근 중국에서 일본 기업의 특허출원이 급증하여, 과거 미국과 유럽 특허시장만 중시했던 일본 기업이 중국의 특허시장에도 주목했음을 구체적으로 나타냈다.

통계에 따르면 2010년에 일본 기업이 중국에서 출원한 특허건수는 34,000건으로, 전년대비 10% 이상 증가했다.

Hitachi社의 2010년 중국 특허출원 건수는 1,700건으로, 2011년 1~8월의 건수가 지난 해 전체 건수를 상회하였으며, 2012년에도 10% 증가시킬 계획이다.

Hitachi社는 중국의 인프라 건설이나 차세대 송전망(스마트 그리드)의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이것이 출원 증가로 연결됐다. 또한, 중국에 있는 연구원을 현재의 100명에서 200명 이상으로 증원할 방침이다.

Fujitsu社는 올해 중국 특허출원건수가 500건을 넘었지만, 유럽에서는 450건에 머무르고 있다. Fujitsu社는 중국에서 통신, 정보, 전자 사업을 실시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기술특허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Honda社는 중국 시장에서 친환경 자동차의 연구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올해 361건의 특허를 출원하였다. 2012년에는 현재 수준보다 대폭 증가할 전망이다.

일본 기업은 중국 시장에서 기술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 향후에도 적극적으로 특허출원을 실시할 것으로 분석된다.

출처 news.searchina.ne.jp

일본 경제산업성, 특허 양도 후 라이선스 취급에 관한 발표

지난 9월 19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2012년 4월에 시행하는 개정 특허법에서 특허가 제3자에게 양도된 후의 라이선스의 취급에 대해 정성령(政省令)으로 규정하지 않고 당사자의 협의에 맡긴다는 방침을 결정하였다.

이번 결정은 라이선스 계약을 받아들이는 측의 권리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실시하는 한편, M&A나 사업 제휴가 활발한 실정에 맞추어 기술을 더욱 활용하기 쉽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기술표준화나 기업의 공동 연구개발 과정에서 제품 설계나 제조에 많은 라이선스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 되었다.

일본 특허청(JPO)은 라이선스 계약 내용이 매우 다양하므로, 특허를 양도하는 계약 구조를 하나로 정리하는 것은 오히려 실무에서 곤란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출처 http://www.nikkan.co.jp

미국 Obama 대통령, 특허상표청 위성사무소 설치 계획 표명

지난 9월 16일, 미국 Barack Obama 대통령은 미국발명법안(America Invents Act)을 서명하며, 향후 최소 3개의 미국 특허상표청(USPTO) 위성사무소를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성사무소의 설치는 미국의 넓은 대륙에 USPTO의 서비스를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목

적이며, 기존 위성사무소는 California, Texas, Washington, Utah에 설치된다.

새로 설치될 위성사무소에는 100명의 심사관이 채용될 예정이며, 지역 로펌과 기술기업들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http://www.denverpost.com

미국 IBM社, 20년 동안 미국 특허순위 1위 유지

지난 9월 13일, 미국 SAP社의 Bob Evans는 Forbes의 홈페이지에 오랫동안 IBM社가 매년 미국 특허순위에서 1위를 차지한 것에 대한 분석을 게재했다.

Evans는 IBM社가 특허 가능성이 있는 발명을 분류하고 최종적으로 특허 허여를 받기까지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른 어떠한 기업보다도 뛰어나다고 평가했다.

실질적으로, 2010년에도 IBM社는 20년 가까이 지켜온 1위의 자리를 고수했을 뿐만 아니라, 총 5,896건의 특허를 허여 받아 사상 최초로 5,000건을 넘는 특허를 허여 받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IBM社는 지난 9월 16일 대통령 서명을 받은 특허개혁법안(미국 발명법안)을 지지하고 있으며, IBM社는 특허법 개정을 통하여 발명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기술 혁신을 이루고 발명 능력을 배양하며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이에 대하여 iam magazine는 IBM社가 다수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을지라도 다른 대다수의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보유 특허의 대부분이 활용되고 있지 않을 것이라 지적하였다. 그럼에도 IBM社는 기업의 명성 및 브랜드 가치 유지를 위하여 특허출원 및 보유를 계속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비판 의견을 내놓았다.

출처 http://www.forbes.com

순위	기업명	허여건수
1	IBM	5,896
2	Samsung	4,551
3	Microsoft	3,094
4	Canon	2,552
5	Panasonic	2,482
6	Toshiba	2,246
7	Sony	2,150
8	Intel	1,653
9	LG Electronics	1,490
10	Hewlett-Packard	1,480

〈2010년 미국특허 상위 10대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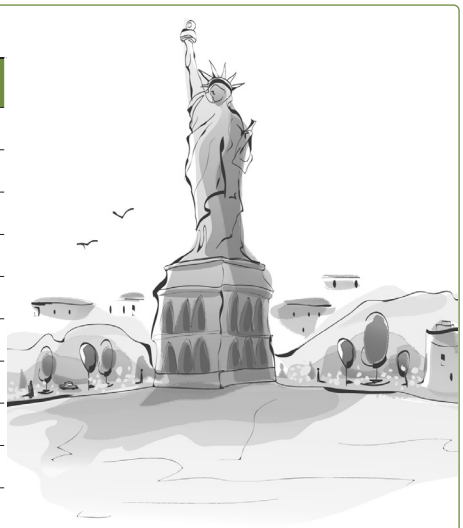

유럽 특허청, 유럽연합과 중국의 지식재산 보호 협력 계속 추진 발표

지난 9월 13일, 유럽 특허청(EPO)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와 중국 상무부가 지식재산보호 관련 공동협력을 계속하기로 하는 공동문서에 사인했다고 발표하였다.

이것은 EU 집행위원회 및 EPO, 유럽 상표디자인청(OHIM), EU 주재 중국대사관, 중국 상무부가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EU-중국 프로젝트(IPR2)의 종료를 확인하는 회의에서 이루어졌다.

EPO Raimund Lutz 부청장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세계는 지금

"IPR2 프로젝트의 성공적 완성은 많은 중국 당국자들과 EU 기관들이 서로 유대를 맺은 획기적인 협력 프로젝트였습니다. 또한 유럽과 중국의 관계는 국제 단계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제도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IPR2 프로젝트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16만 유로가 투자된 EU와 중국의 공동 프로젝트이다. 이를 통해 판사, 입법가, 산업 전문가, 학자 등 유럽과 중국의 공무원들이 중국 전 지역에서 약 200건 이상의 기술을 지원하고 교육활동을 펼쳤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 유럽과 중국의 전문가들이 만들어낸 약 50건 이상의 발간물과 1,200건 이상의 서류 및 정보가 이보다 먼저 개최된 프로젝트 폐회식에서 각국에 전달된 바 있다.

출처 http://www.epo.org

영국 지식재산청, 디자인권 관련 보고서 발표

지난 9월 21일, 영국 지식재산청(UKIPO)은 「영국의 디자인서비스, 디자인권, 디자인생활의 넓이」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영국에서 디자인 분야는 2008년도에 3백3십억 파운드가 투자된 경제적으로 중요한 분야이다. 이러한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UKIPO는 디자인권에 관한 연구프로젝트를 실시하였다.

보고서는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은 외부 전문가에 의해 연구가 진행되었다.

제1장은 영국에서 디자인 활동이 어디서 발생하는지, 디자인을 외부에서 구입하는지 또는 내부적으로 제작하는지, 등록 디자인권이 어떻게 이용되는지 등을 담고 있다. 제2장은 등록 디자인권이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내용이다. 제3장은 기업이 디자인 관련 지식재산과 상호작용하는 이유에 대한 설문 내용을 담고 있다. 제4장은 영국, 프랑스, 독일의 디자인제도를 국제제도와 비교한 내용이다.

출처 http://www.ipo.gov.uk

중국 국무원, 상표법 개정초안 주요내용 공개

지난 9월 2일, 중국 국무원은 상표 관리 강화를 위해 상표법 개정초안을 발표하였다. 10월 8일까지 국무원은 정부 홈페이지(www.chinalaw.gov.cn)와 우편을 통해 개정초안과 관련된 의견을 수렴하기로 하였다.

다음의 8가지 표시는 상표로 사용할 수 없다.

-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 명칭, 국기, 국가 휘장, 군기, 군장, 훈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시 및 국가기관의 명칭, 마크, 특정 지역의 지명 혹은 건축물의 명칭, 이미지와 유사한 것
- 외국의 국가명칭, 국기, 국가 휘장, 군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단, 국가의 동의를 받은 것은 예외)
- 정부 간 국제기구의 명칭, 깃발, 로고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 (단, 기구의 동의를 받거나 쉽게 혼동하지 않을만한 것은 예외)
- 국가에 의해 실시되거나 관리되는 표시, 검사 마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 (단, 허가 받은 것은 예외)
- 국제적십자연맹의 명칭, 표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

- 민족, 종족 차별의 성격이 있는 것
- 상품의 품질 혹은 산지 등 특성에 쉽게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표시
- 사회주의 풍습 혹은 기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

행정구역의 지명 중 현(县) 이상의 행정구역의 지명 혹은 유명 외국지명은 상표로 사용할 수 없다. 단, 지명이 지명 외의 기타 의미를 갖거나 단체표장 혹은 상표의 구성부분인 경우는 제외하며 이미 등록하여 사용 중인 지명 상표는 유효하다.

출처 http://www.sipo.gov.cn

중국 상표협회, 2009~2010 중국 10대 상표 관련 이슈 발표

지난 9월 7일, 중국 상표협회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2009~2010년 중국 10대 상표관련 이슈를 발표하였다.

10대 상표관련 이슈는 다음과 같다.

1.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SIAC)은 「국가지식산권전략강요(国家知识产权战略纲要)」에 따라 상표관련 지침인 「상표전략실시의견(商标战略实施的意见)」을 발표함
2. SAIC의 중관춘(中关村) 시험단지 사무소 설립은 SAIC이 생긴 이래 최초로 시범 지역을 지정한 것임
3. 「중국상표연감(中国商标年鉴)」 출판은 중국상표사업의 성과와 사례를 기록한 것으로 이후 체계적인 상표 관련 자료로 이용이 가능함
4. SAIC은 3년의 상표심사 기간 문제를 해결하는 등 업무능력이 향상됨
5. 최고인민법원의 상표관련 행정사건에 대한 사법해석 발표는 법원에서 상표와 관련된 심리에서 통일적인 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됨
6. 「해협양안 지식재산권 보호협력협의(海峡两岸知识产权保护合作协议)」는 대만과의 상표등록의 우선권 원칙이 정상적으로 이행되기 시작했으며 상표권 침해 문제를 비롯하여 상호 교류를 촉진함
7. SAIC의 1차 국가상표전략실시 시범 도시 및 기업 확정은 시범 도시와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상표전략실시의 본보기를 제시함
8. 국무원의 지식재산권 침해 및 위조품 생산·판매 단속전담 행동은 중국의 심각한 상표권 침해와 위조 행위를 단속하여 시장질서 회복과 지식재산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강화시킴
9. 상하이(上海) 엑스포와 광저우(广州) 아시안게임 등의 로고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면서 상표보호 능력 향상과 관리·감독 능력을 가진 인력을 육성함
10. 중국항공(Air China), 공자학원(孔子学院) 등 해외에서 중국 상표를 보호한 사례를 만듦

출처 http://www.sipo.gov.cn

자료제공 한국지식재산연구원(KI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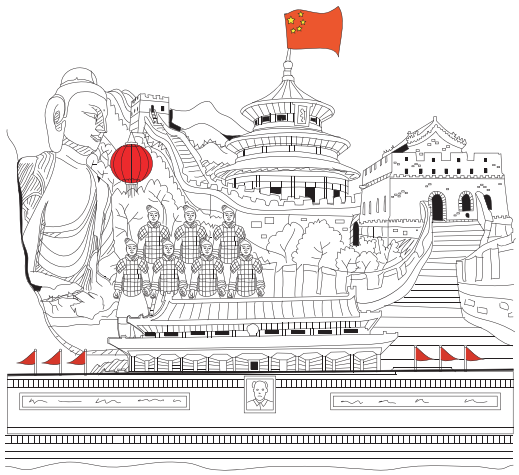

KIPO NEWS

한-프랑스 지식재산 외교 출범

특허청이 프랑스 특허청과 지식재산 분야 외교 채널을 구축하고 상호 협력 사업을 개시한다.

특허청은, 이수원 특허청장과 이브 라삐에르(Yves Lapierre) 프랑스 특허청장이(INPI: Institut National de la Propriété Industrielle) 지난 9월 9일(금) 오전 서울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청장회담을 열고, 양청 간 외교 채널 구축 및 심사관 교류를 통한 지식재산권 심사 노하우 공유, 한의학에 관한 전통지식 보호 등 협력사업을 논의하였다.

또한 양 청은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지식재산권 창출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식재산권 보호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할 예정이다.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 출범 1년 성과 및 과제

특허청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이하 특사경)는 지난해 9월 출범 이후 위조상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지난 1년 동안 위조상품 사범 총 141명을 형사입건하고 위조상품 48,000여 점(정품가액 약 120억 원 상당)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단속실적은 특사경 도입 이전('10.1~8)과 비교하면, 월평균 실적 기준으로 형사입건 인원은 약 6배, 압수물품은 약 11배 정도 증가한 수치이다. 이렇게 검거실적이 대폭 증가한 원인은 위조상품 전문 수사기관인 특사경 출범을 계기로 검·경과의 합동단속에 의존하지 않고 특허청 독자적으로 대규모 위조상품 제조·유통·판매업자에 대한 단속에 주력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적발된 범죄유형으로는 도·소매사범 105명, 온라인 판매사범 24명, 제조사범 7명, 유통사범 5명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압수된 위조상품에 대한 분석결과, 품목별로는 장신구류 6,618점, 의류 5,583점, 가방류 5,411점, 신발류 1,272점 등 순으로 나타났으며, 브랜드별로는 루이비통 8,702점, 폴로 6,085점, MCM 4,653점, 샤넬 4,651점 등 순으로 집계되었다.

한편, 특사경 출범으로 위조상품에 대한 단속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위조상품 거래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유통경로도 더욱 다양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등 인기 있는 예능프로의 명칭, 상표출원 봇물!

최근 MBC, KBS, SBS TV에서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서바이벌 나는 가수다", "남자의 자격", "1박 2일", "무한도전", "해피투게더" 등 예능프로의 명칭을 딴 상표출원이 급증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인기 있는 예능프로의 명칭에 대한 출원건수는 2007년 38건, 2008년 45건, 2009년 46건, 2010년 49건에 이어 2011년 7월말 현재, 66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 가운데 특히 "나는 가수다"를 변형하여 "나는 ADSL", "나는 여자다", "나는 미래다!", "나는 꽃" 등과 같이 "나는" 과 결합된 표장의 상표출원이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예능프로그램의 명칭별 출원현황을 보면, "나는 가수다"와 "나는" 결합표장이 93건을 출원하여 1위를 차지하였고, "1박2일" 결합표장 68건, "해피투게더" 결합표장이 58건, "무한도전" 결합표장이 52건을 출원하여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출원인별로는 총 316건 중 개인이 160건(50.6%), 법인이 156건(49.4%)을 출원하여 개인과 법인이 비슷하게 출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인기 있는 예능프로의 명칭에 대한 상표출원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흥행에 성공한 예능프로의 제작사에서 타인의 상표권 획득을 방지하기 위해 출원한 경우와 인기 있는 예능프로의 명칭에 대한 상표권을 선점하기 위한 개인 및 법인의 출원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전에도 한류열풍을 몰고 온 KBS의 드라마 "겨울연가" 와 "황진이", MBC의 "대장금"과 "주몽", SBS의 "파리의 연인", "꽃보다 남자" 등 인기 있는 드라마 제목을 상표로 출원하여 보호받은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인기 있는 예능프로의 명칭이나 TV 드라마 명칭의 상표출원 및 등록은 브랜드 네이밍의 한 트렌드로 이미 자리잡고 있다고 보여진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러한 예능프로그램의 명칭에 대한 상표를 무단으로 출원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권리가 있는 상표권자, 저작권자 등과 법률적인 분쟁이 발생할 우려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사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여 출원하거나 사용하는 등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러시아 특허를 찾고 계시나요?

특허청은 대민용 특허정보검색서비스[1](KIPIRS)에서 제공하는 해외 특허정보 범위를 기존 8개국에서 12개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KIPRIS를 통해 미국, 일본, 유럽 등 8개 주요국의 특허정보와 함께 4개국(캐나다, 호주, 대만, 러시아) 특허정보도 추가로 검색 · 열람할 수 있게 되었다.

특허청 내부 심사관용 특허정보검색서비스는 이미 12개국의 해외 특허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으나, 대민용 KIPRIS는 8개국 특허정보만 제공하고 있어서 해외정보 확대가 필요하였다.

이번 제공범위 확대를 계기로 일반인도 KIPRIS를 통해 특허청 심사관과 동일한 수준으로 신뢰성 있는 특허정보 검색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KIPRIS의 해외특허 검색서비스에 출원일자, 등록일자 등을 한 번에 검색할 수 있는 '일자통합검색'과 발명자, 출원인 등에 대한 '인명통합검색' 기능을 추가하여 검색 편의를 높였다.

KIPRIS 해외 특허정보 검색서비스는 2003년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검색횟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0년부터는 특허정보를 사용자의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웹서비스인 KIPRIS^{plus}가 제공되면서 해외특허 정보의 활용이 급증하고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KIPRIS 이용이 증가하더라도 빠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 용량을 확대하고 해외특허 제공범위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라고 밝혔다.

KIPRIS 해외 특허정보 검색 서비스 건수

(단위 : 건)

구분	탑재기간	건수	제공내용
일본	'76~	8,819,859	전문
미국	'76~	5,804,112	전문
EP	'78~	2,548,659	전문
WO	'78~	1,891,784	전문
중국	'85~	3,432,949	초록(영문)
독일	'74~	6,922,472	전문
프랑스	'74~	2,985,942	전문
영국	'91~	224,376	전문
캐나다	'99~	622,399	전문
호주	'98~	755,216	초록
대만	'91~	396,316	초록(영문)
러시아	'74~	602,773	초록(영문)

* 데이터는 2011. 7월말 기준임, 붉은색 점선부분은 '11년도 확대 제공 대상
* 전문 : 서지+요약+청구범위+명세서 등 문서 전체, 초록 : 서지+요약
* WO : WIPO의 PCT 공보

1) 대국민 특허검색서비스(Korea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ervice : KIPRIS) : 2010년 한 해 동안 약 2,800만의 검색건수를 자랑하는 특허청이 제공하는 국내 최대의 무료 특허검색사이트(www.kipris.or.kr)로서, 국민들이 자신의 특허 출원에 앞서 다른 사람이 이미 출원한 특허들을 직접 찾아보거나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하기 전에 관련 기술들을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특허청

KIPA NEWS

지식재산협력 강화를 위한 MOU 체결

중국발명협회(CAI) · 상하이기술교역소(STTE) · 아시아태평양 지식재산협회(APIPA) 등

우리회 최종협 부회장은 지난 9월 27일 오전 9시, 중국발명협회(CAI) Dahan LU 사무총장과 업무교류 및 협력 강화를 위해 상호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이날 양국은 협력관계 활성화를 위한 공동프로젝트, 정보교환 등 상호 기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고, 오후 12시에는 중국산업과기창신위원회 Hou Huimin 창신연맹 주석과 업무협의를 하였다.

28일에는 Lu Lirui 상해기술교역소 부회장과, 29일에는 아시아태평양 지식재산협회(APIPA) Steven Lai 집행장과 기술이전 관련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워크숍, 교육, 전시, 포럼 개최 등에 대해 MOU를 체결하였다.

이어, 대만 최고의 발명단체인 대만발명협회(TIA) Chen Zong Tai 회장과 2011 서울국제발명전시회 참가 및 우수기업 소개 요청 등 업무협의를 하였다.

우리회는 지식재산협력 강화를 위해 협력기관과 지속적인 업무교류를 할 예정이다.

2011 대만 국제발명전, 금상 등 총 10점 수상

금2, 은2, 동1, 주최기관특별상 1, 해외기관특별상 4

지난 10월 2일 폐막된 '2011 대만 국제발명품전시회'에서 우리나라가 금상 2개, 은상 2개, 동상 1개, 특별상 5개를 수상했다.

금상은 휴롬엘에스(주)의 '착즙 주스기'와 개인발명가인 김윤영 씨의 '브레이드 도전 케이블과 그 제조방법 및 그의 제조장치'가 각각 수상했다.

은상에는 실버레이(주)의 '디지털 섬유사를 적용한 친환경 및 초절전형 온열침구'와 개인발명가인 손혜진 씨의 '역풍방지를 위한 환기시스템'이, 동상에는 트라이캠테크놀로지(주)의 '저주파 치료기'가 2개의 특별상과 함께 수상했다. 또한, 은상을 수상한 손혜진 씨는 여성발명가상과 특별상, 우수혁신상도 함께 수상했다.

대만 국제발명품전시회는 올해 7회째로 총 20개국에서 760여 점의 발명품이 출품됐다.

한편, 우리회 최종협 부회장은 "이번 대만 국제발명전의 참가로 국내 발명품의 우수성을 해외시장에 홍보하고, 제품수출과 기술이전 및 시장개척 등의 계기를 마련해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2기 CIPO(Chief Intellectual Property Officer) Academy' 개최

우리회는 지난 9월 16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제2기 CIPO Academy (최고지식재산경영자과정)' 입학식을 성황리에 마쳤다.

이 자리에서 최종협 부회장은 "해당 과정이 우리나라 지식재산 분야의 확대 발전은 물론 지식재산 강국 실현을 통한 국부창출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것"이라며 환영사를 전달하였다.

이날 입학식에는 지식재산 경영자로서의 새로운 각오를 다지기 위해 기업체 CEO 및 임원, 법조계 및 언론인 등 교육생 전원과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과정문의 : 02-3459-2767, 2772)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천사의 집 방문 후원금 전달

우리회 최종협 부회장은 민족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사회복지시설에 따뜻한 정을 나누기 위해, 지난 9월 9일 천사의 집을 방문하여 후원금을 전달하였다.

우리회 KIPA 사회봉사단은 이 외에도 현재 국내 결연아동 3명에게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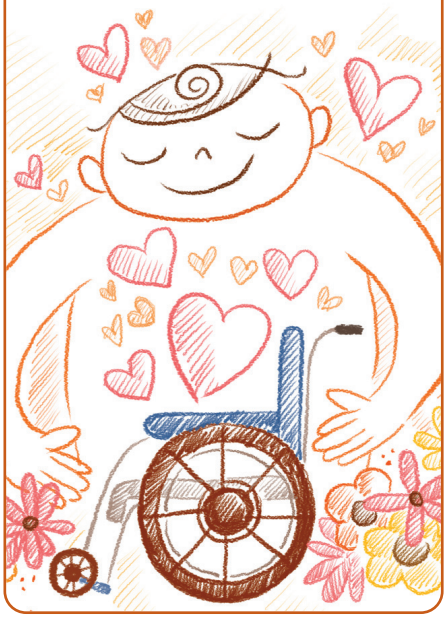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에 등록된 우리나라 대표 특산품

Namwon
전라북도

남원목기

지리산 자락에서 자생한 재료와 장인의 정교한 공정을 거쳐 제작하여 색상과 모양, 내구성이 뛰어나며 인체에 해가 없고 색이 오래도록 변하지 않는 남원의 명품이다.

| 상표명 |
남원목기

| 권리자 |
남원목기사업 협동조합

| 등록번호 |
제 15호

| 상품분류 |
제 21류 제기 외 다수

연락처
남원목기사업 협동조합
063-626-9909

통일신라 시대 산내면에 세워진 실상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승려가 3천 명이 넘었다는 실상사의 스님들로부터 바라를 만드는 기술을 전수하여 시작된 것으로 조선왕조 500년 동안 왕실에 진상하는 목기도 계속 만들어 왔고 이러한 목기는 과거에 실상사 지역이 운봉현에 속했기 때문에 운봉목기로 많이 알려졌었지만, 지금은 전국적으로 남원목기로 통칭하고 있다.

남원목기의 특징은 신라의 고찰 실상사 승려들이 식기인 발우제작 과정에서 습득된 높은 기술이 목기제작과 연결되었으며, 지리산을 배경으로 한 풍부한 산림자원과 더불어 사용되는 목재의 독특한 향과 함께 재질이 단단하고 모양이 정교하여 섬세하다.

남원제기는 잔, 잔대, 탕기, 적기, 접시류와 어틀, 편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사에 사용하는 음식을 제수라 하고 제사상에 음식을 배열하는 것을 진설이라 한다. 현재에도 옛방식을 그대로 따르기도 하지만, 현대생활에 맞게 가정의례준칙을 따르기도 한다. 진설은 각 지방의 관습이나 풍습, 가문의 전통에 따라 조금씩 다르므로 가가례라고도 한다. 현재 남원목기의 기본구성은 잔 3개, 잔대 3개, 탕기 3개, 접시 22개, 어틀 1개, 편틀 1개, 촛대 2개, 향로 1개, 지방틀 1개로(총 37개) 구성되어 있다.

Seosan
충청남도

서산마늘

다른지방 마늘에 비하여 속껍질이 자주색이 나며 감미롭고 씨알이 굵으며 내병성이 강하여 바이러스 감염률이 적고 알을 쪼개보면 6쪽이 많으며 육질이 단단하고 충실하여 저장성도 우수하다.

| 상표명 |
서산마늘

| 권리자 |
서산마늘생산자단체협의회 영농조합법인

| 등록번호 |
제 20호

| 상품분류 |
제 31류 마늘(신선한 것)

연락처
서산시 농정과
041-660-2636

우리나라의 도입시기는 명확하지 않으나 단군신화에도 나올 뿐만 아니라 『삼국사기』의 기록으로 보아 재배역사가 매우 오래된듯하다. 서산 6쪽마늘은 삼국시대부터 재배되어 온 고유의 재래종으로 연산일기에서 품질의 우수성이 확인되었으며, 조선왕조실록에서는 서산 간월도 앞바다의 서산 부석면 앞 포구에서 영국 선적과 마늘 20근을 거래하였다는 기록으로 오랜 재배 역사를 증명하고 있다.

서산지방은 흙이 깊고 물을 잘 빨아들이는 황토가 마늘 재배에 적합하여 충남 생산량의 약 20%정도(전국 2.4%)를 차지하고 있다. 대표적인 한지형 마늘이고 쪽수가 6~8쪽이며 각각의 쪽이 크고 크기가 일정하다. 수염뿌리가 긴 특징이 있고 속껍질은 자주색으로 흰 줄무늬가 많으며, 족이 단단해서 저장성이 우수하다. 또한 다른 마늘 품종에 비해 마늘의 독특한 맛과 향기를 내는 알리신 함량이 높다.

찬 바람 부는 가을, 다이어트 고삐 늦추지 말아야

제철음식 먹으면서 다이어트 하기, 유산소 운동으로 건강 다지기, 살도 빼고 건강도 챙기는 한방차 등 가을 다이어트의 어려운 점과 극복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김소형
한의학 박사

'천고마비(天高馬肥)의 계절' 가을이 깊어가고 있다. 이제 쌀쌀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옷도 길어지고, 두꺼워지면서 지난 여름, 노출에 바짝 긴장했던 우리 몸은 자연스레 긴장을 풀기 시작한다. 특히 수확의 계절인 가을에는 어느 계절보다도 먹거리가 풍성하여 먹고 싶은 유혹을 떨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제철과일과 농산물은 우리 몸을 보호해주고 약이 되는 것도 있으므로 적절히 이용하면 건강도 지키고 몸매도 가꿀 수 있다.

제철음식 먹으면서 다이어트 하기

다이어트가 여성들에게 평생의 과제라고 여겨지던 것이 최근에는 자기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남성들에까지 다이어트 열풍이 불고 있다.

비만은 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살이 찌면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사회적으로 자기관리에 소홀하다는 인상을 주면서 우울증이나 대인기피증의 현상으로 나타나기까지 한다. 더욱이 비만은 잘못된 식습관이나 운동 부족 등으로 인체의 기혈순환이 정상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다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관절염, 부종, 생리이상, 불임 등의 다양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적정 체성분을 유지해야 한다.

지난 여름, 강한 의지와 실천으로 다이어트에 성공을 했더라도 가을이 되면서 왕성해진 식욕으로 체중이 다시 늘었다며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시기적으로 가을에는 추운 날씨를 대비해 지방층이 두꺼워지기 때문에 누구나 살이 찌기 마련이다. 사계절이 있는 지역의 모든 생물들은 서서히 혈관을 수축하고 지방층을 두껍게 하여 추위에 대비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살이 찌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기도 한 이 시기를 무사히 넘긴다면 당신은 날씬한 몸매에 한 걸음 다가선 것이다.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위해서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까? 가을이 제철인 사과는 다이어트에 으뜸이다.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포만감이 오래갈 뿐만 아니라 수용성 식이섬유인 펙틴이 함유되어 있어 정장작용을 한다. 또한 사과에 많이 들어 있는 비타민 C는 피부미용에 효과가 있으며, 칼륨은 신장기능을 도와 체내의 불필요한 수분을 배출시켜주기 때문에 몸이 잘 부으면서 살이 찌는 사람들에게 효과적이다.

특유의 향과 맛을 지닌 버섯도 다이어트하면 빼놓을 수 없는 식품이다. 버섯은 칼로리가 낮을 뿐만 아니라 비타민 B군, 나이아신, 비타민D, 칼슘, 철분, 마그네슘, 칼륨 등이 함유된 웰빙식품이다. 특히 버섯은 몸에 열이 많거나 비만인 사람에게 효과적이며, 혈액 속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리고 혈액순환을 좋게 하여 나이가 들면서 운동량과 기초대사량이 떨어져서 나타나는 동맥경화, 심장병, 당뇨병 등 각종 성인병을 예방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성질이 서늘하고 단맛이 나는 송이버섯은 고단백질, 저칼로리 식품이면서 비타민과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다이어트 중에 나타나기 쉬운 변비 예방에 효과적이다.

유산소 운동으로 건강 다지기

운동을 하지 않고 식이요법만 가지고 다이어트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요즘처럼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고 덥지도 춥지도 않은 가을날씨에는 자연스레 운동화 끈이 매어지기 마련이다.

가을에 하기 적당한 운동으로는 걷기, 등산, 조깅, 자전거 타기 등의 유산소 운동이 있다. 얼마 전부터 제주 올레길과 지리산 둘레길 등의 도보길이 큰 붐을 일으키면서 운동을 좋아하는 필자도 북한산 둘레길을 찾은 적이 있다.경치

를 감상하면서 느긋한 마음으로 천천히 걷는 도보여행은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심신을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한다. 걷기는 관절에 크게 부담을 주지 않기 때문에 고도의 비만환자나 노약자에게도 좋은 운동이다.

시간이 된다면 붉게 물들기 시작하는 가을 산으로 떠나보자. 등산은 다이어트에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심폐기능을 향상시키고 무릎이나 허리 등의 관절에도 도움을 준다. 하지만 무더운 여름을 나면서 체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무리하게 운동을 하면 오히려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자신에게 맞는 운동법을 찾아야겠다.

살도 빼고 건강도 챙기는 한방차

날씨가 추워지면서 자연스럽게 따뜻한 커피나 차를 찾게 된다. 그럴 때면 건강도 챙기고 살도 빼며 1석 2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한방차를 권한다.

개인마다 살이 찌는 이유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체질에 맞는 한방차를 선택하면 좋다. 먼저, 귤껍질을 말린 진피는 위와 장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고 체지방 분해를 도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며, 비타민 C가 많아 감기 예방에도 좋다. 뽕나무 가지를 말하는 상지는 〈동의보감〉에 몸을 야위게 하는 약재라 소개될 정도로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다. 식욕을 억제하고 섭취한 음식물의 흡수를 막아 체중을 감소시켜준다.

감잎차는 감나무의 어린 잎을 말려서 우려내는 것으로, 운동부족이나 혈액순환이 잘 안되 비만이 된 경우 효과가 있다. 감잎과 함께 대나무 잎도 함께 넣으면 더욱 좋은 효과가 있다. 꾸준히 마실 경우 고혈압, 동맥경화, 당뇨병 등의 성인병도 예방할 수 있다.

율무차에는 풍부한 양의 단백질과 지방, 칼슘이 들어있지만 쌀에 비해 칼로리가 낮다. 게다가 이뇨 작용을 돕는 기능을 갖고 있어 당뇨병환자의 다이어트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또한 기미, 주근깨 등을 예방하며 피로회복에 머리를 좋게 해주는 효과까지 있다.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녹차는 하루에 4잔 정도 마시면 좋다. 한방에서는 심장의 열을 내리면서 뭉친 기를 풀어준다고 보고 있다. 특히 혈액을 맑게 해주면서 지방분해를 촉진시켜주므로 운동 시 마시면 좋으며,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 그러나 냉증이 있거나 몸이 찬 사람, 위염이 있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마시는 것을 피해야 한다.

못 생겨도 향이 좋은 모과차는 식욕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 일반적으로 다이어트를 하면서 식사량을 급격하게 줄여 골다공증이 오거나 근육이 손실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뼈와 근육을 튼튼히 해주는 모과차를 마시면 좋다. 단, 변비가 있을 경우에는 많이 마시지 않는다.

다이어트를 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체중이라는 결과적 수치에 과도하게 집착하기보다 내 몸이 좋은 체형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드는 체질을 개선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만으로 살아온 오래된 습관을 버리고 올바른 식생활과 건전한 생활습관이 몸에 배도록 노력한다면 머지않아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2011. 10

회원가입을 축하합니다

9월 신규 회원가입사 소개

(주)포씨소프트

- 대 표 자 : 배정훈
- 업태/종목 : 서비스, 제조
-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반포4동 59-4번지 송원빌딩 5층
- 전화번호 : 02)544-2822
- 홈페이지주소 : http://www.4csoft.com

메가국제특허법률사무소

- 대 표 자 : 정영선
- 업태/종목 : 특허사무소
-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1-20 Y&C빌딩 5층
- 전화번호 : 02-567-7626
- 홈페이지주소 : www.megapatent.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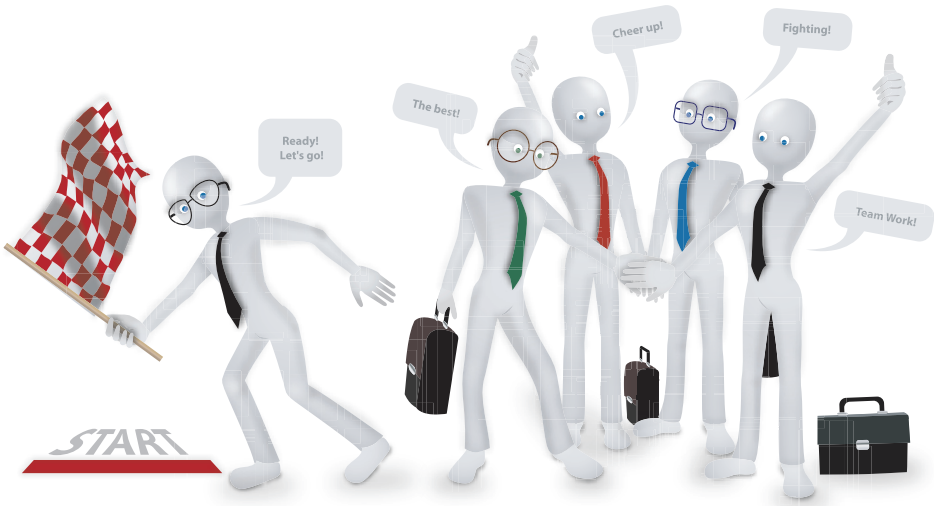

Information

책과의 만남

백만불짜리 습관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방문판매원으로 시작해 세계적인 비즈니스 컨설턴트로 인생을 역전시킨, 자기계발의 산증인이다. 그가 자신의 30년 경험과 수많은 사람들과의 인터뷰, 교육 · 컨설팅 경험에 바탕해 나를 변화시키는 '습관론'을 펼쳤다. 그리고 성공한 이들의 오늘을 결정한 습관을 분석했다.
이 책은 성공의 근본요인을 습관에서 찾고 있는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최근 성찰이 담긴 그의 성공학 결정판이다. 또 이 책은 습관에 대한 단순한 설명을 넘어 심리학 이론과 석학들의 연구결과에 바탕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습관론을 전개하고 있다. 그는 유년시절 형성되는 자의식이 습관의 출발점이라고 말하며 사람은 유년 시절에 실패와 위험, 상실에 대한 공포를 낳는 억제적인 습관과 거부나 비판에 대한 공포를 낳는 강제적인 습관을 학습한다고 말하고 있다.

저 자 _ 브라이언 트레이시
역 자 _ 서사봉
출판사 _ 용오름

발명상식사전

우리회에서 2006년 이사대우로 퇴직한 왕연중 한국발명문화교육연구소 소장 겸 영동대학교 발명특허학과 교수가 자신의 통산 105번째 발명저서로 '발명상식사전'을 펴냈다. 발명도서 105권 저술은 세계최다 기록으로 알려지고 있다.

발명에 관한 책들은 많다. 하지만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은 단순히 발명 사실만 기록해 놓았거나 독자에게 알리기 위한 정보서 역할만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책은 상식을 추구한 만큼 누구라도 재미있게 어디서라도 읽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책을 덮고 나면 '발명'이라는 두 글자를 그냥 사전적 의미로만 받아들이기엔 너무나 아쉽다는 생각이 들게 될 것이다. 즉, 발명이라는 단어 속에는 생활의 편리, 꿈의 달성, 인생 역전, 인류의 진보, 역사의 전환 등 너무나 많은 의미들이 함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생활, 이슈, 꿈, 위대함, 인생역전' 등 모두 다섯 편으로 나뉘어 발명이야기를 수록하였다. 책에 수록된 발명품을 나열한 빽빽한 목차를 보고 있노라면, 그 엄청난 숫자에 놀라게 되지만, 여기에 실린 것도 인류 발명품의 아주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에 또 한 번 놀라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 책을 통해 발명의 위대함과 그 속에 담긴 발명가들의 고뇌를 느끼기만을 원하지 않는다. 발명의 시작이 되었던 사소한 동기들과 간단한 아이디어. 이를 통해 독자들이 발명이라는 것이 결코 우리의 일상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따라서 발명의 영역이 미지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으면 한다. 발명은 누구나 할 수 있으며, 그 주인공은 바로 독자 당신이 될 수도 있다는 것! 나아가 그 사소한 동기와 아이디어들로 탄생한 발명품들이 결국 인류 역사에 크나큰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은 곧 여러분도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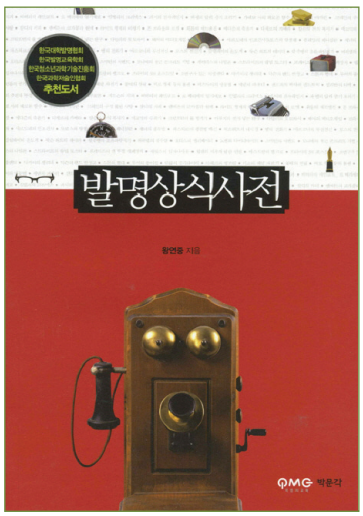

저 자 _ 왕연중
출판사 _ 박문각
신국판 _ 240쪽
정 가 _ 10,000원

뮤지컬

바람의 나라

2011. 10. 14 ~ 23

이미지뮤지컬이라는 새로운 공연형식으로 공연계의 신선한 충격을 던졌던 화제작!
시처럼 아름다운 뮤지컬, 그 두 번째 이야기가 돌아왔다.

공연장소 : 충무아트홀 대극장
공연기간 : 2011. 10. 14 ~ 2011. 10. 23
관람시간 : 150분
기 획 사 : 서울예술단/클립서비스

라이센스 뮤지컬이 넘쳐나고 있는 한국 뮤지컬 시장에서 꾸준히 창작 뮤지컬을 시도하고 선보여 온 (재)서울예술단(이사장 김거태)이 오는 10월 14일부터 23일, 충무아트홀 대극장에서 김진 원작 만화 '바람의 나라' 그 두 번째 이야기인〈호동 편〉을 선보인다.
지난 2006년 이미지 위주의 감각적인 무대 연출로 한국뮤지컬 대상(2006)과 뮤지컬어워즈(2007)에서 〈안무상〉과 〈기술상〉을 수상하며 공연계에 강렬하고 신선한 충격을 주었던〈무휼 편〉에 이어 5년 만에 새로이 〈호동 편〉으로 관객을 만나는 것이다.
가무극 '바람의 나라' 는 유리왕에서부터 대무신왕, 민중왕 및 호동왕자에 이르는 고구려 개국 초기 3대의 가족사를 다루고 있는 김진 만화 '바람의 나라' 가 원작이다. 이 작품은 국내 최초 만화와 게임에서 뮤지컬, 소설, 드라마로 발전한 One Source Multi-Use의 대표적 콘텐츠로서 2001년 자명고 편(3부)이 서울예술단에 의해 뮤지컬로 재탄생된 이래, 2006년 무휼(고구려 3대왕-대무신왕)과 그의 아들 호동 왕자의 비극적 운명을 그린 무휼 편(1부)이 새롭게 탄생되어 2007년과 2009년에 앙코르 공연하였다.
이번에 선보이는 호동 편(3부)은 만화 원작 9권 이후의 이야기로 '하늘과 땅의 충돌' (대 낙랑전)로 호동왕자와 낙랑의 자명고를 중심으로 한 고구려의 태동/발전기를 배경으로 한다. 조선의 후예임을 자처하며 조선의 혼을 가진 유일한 국가임을 자부하는 낙랑과 고구려가 국가관의 충돌과 함께 하늘과 땅의 전쟁으로 표현되는 거대한 전쟁을 치루는 역사적인 세대교체 과정을 그린다.
낙랑과 고구려가 국가관의 충돌과 함께 하늘과 땅의 전쟁으로 표현되는 거대한 전쟁을 치루는 역사적인 세대교체 과정을 그린다.
낙랑을 지키는 자명고로서 해와 달의 속성을 가진 낙랑의 왕 최리의 두 아들 '충' 과 '운' , 고구려와 낙랑의 정치적 야심의 희생양으로 호인하게 되는 '호동' 과 '사비' 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정치와 음모, 사랑이야기가 현대적 이미지 양식으로 표현된다.

전시

2011 대장경 천년 세계문화축전

2011. 9. 23 ~ 11. 6

고려대장경 간행 천 년의 해를 맞이하여 경상남도, 합천군, 해인사가 공동으로 2011 대장경 천년 세계문화축전을 개최한다.

전 고려인의 은근과 끈기, 화평에의 의지로 탄생한 고려대장경은 그 존재 자체가 우리의 무한한 잠재력을 상징한다.

단 한자의 빠짐도, 틀림도 없는 5천2백여만 자, 81,258장의 경전 속에 천 년의 역사와 미래가 담겨 있다.

인류 지성의 위대한 상징. 고려대장경!

이제 고려대장경은 지난 천 년을 딛고 새로운 천 년을 준비하려 한다.

『2011 대장경 천년 세계문화축전 』에서 그 찬란한 역사와 미래를 함께 해보자.

공연장소 : 합천군 가야면 주행사장
공연기간 : 2011. 09. 23 ~ 2011. 11. 06
기 획 사 : (재)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

Information

발명 365

어떻게 이런 일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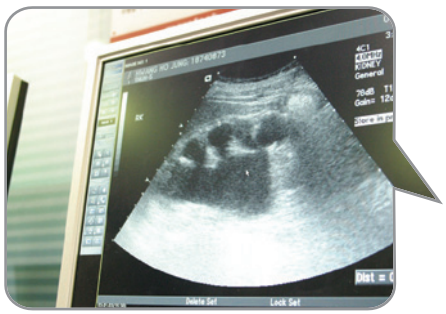

초음파 탐지기

어두운 동굴에서 박쥐는 어떻게 활동할까? 답은 간단하다. 초음파를 이용하는 것이다. 박쥐는 스스로 초음파를 방사하여 어둠 속에서도 장애물과 먹이를 손쉽게 찾아낸다. 초음파는 보통 2만 헤르츠 이상의 고음파를 말하며 사람의 귀로는 들을 수 없는 소리이다.

초음파를 인간 생활에 이용하려는 시도는 제1차 세계대전이 막바지에 달했을 무렵부터 진행되었다. 프랑스의 P 랑즈벵은 어느 날, 자신의 정원을 걷고 있었다. 그 무렵 프랑스는 오랜 전쟁으로 엄청난 혼란을 겪고 있어 독일 잠수함을 격퇴시킬 획기적인 방법을 찾고 있었다. 그는 초조하여 발끝으로 돌멩이를 걷어 찼다. 그때 발에 채인 돌이 물뿌리개에 맞아 날카로운 금속성을 내는 모습을 보고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잡았다. 그 실마리는 바로 초음파였다. 그는 마침내 물 속에서도 사용 가능한 탐지기 발명에 성공했다.

축 음 기

축음기는 원반에 홈을 파서 소리를 녹음하고, 바늘을 이용하여 이것을 소리로 재생시키는 장치이다.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과 마찬가지로 소리를 기록한다는 아이디어도 19세기에는 공상소설에나 나옴직한 것이었다.

1857년 프랑스의 스코트는 메가폰 밑바닥에 얇은 막을 붙이고, 단단한 털을 단 다음 유연(油煙)을 칠한 종이를 원통에 감아 단단한 털끝이 여기에 닿는 장치를 만들었다.

최초의 축음기는 프랑스의 크로스와 미국의 에디슨이 각각 독자적으로 연구하여 1877년에 발명하게 되었다. 크로스는 축음기가 제대로 작동했는지에 대한 증거는 없고, 에디슨은"메리는 작은 양을 가졌네"라는 노래를 직접 불러 녹음하는 데 성공했다. 에드슨의 최초 축음기는 아직까지도 남아 있다.

왕연중 _ 한국발명문화교육연구소 소장, 영동대학교 발명특허공무원학과 교수

발명특허를 보신 후 가장 좋았던 내용과 개선해야 할 내용을 적어서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더 나은 매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면에 게재되신 분에게 도서를 보내드립니다.

위 문제의 정답을 적어 이름,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독자의견을 적어 아래의 이메일로 보내 주세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도서)을 보내드립니다.

▶ 정답 보내실 곳
eldaah7@kipa.org

QUIZ

1. 68회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황금사자상을 받은 작품으로 괴테의 비극을 스크린으로 옮긴 작품은?

2. 예비전력이 100만kw 아래로 떨어질 때 전력공급을 순차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3. 샤넬백을 이용한 재테크를 의미하는 신조어는?

※ 퀴즈 정답을 보내주시는 분 중 추첨을 통해 「발명특허」 추천도서에 소개된 책을 댁으로 보내드립니다.

독자의견

▶ **한혜령 독자** _ 이번 달 좋은 기사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시선집중의 전소정 씨 글을 읽고 좋은 정보를 습득했습니다. 현재 쇼핑몰을 하고 있는데, 상표등록이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습니다. 이 글을 읽고 브랜드 관리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 **송재하 독자** _ 「발명특허」는 알토란 같은 유익한 내용들로 가득 찬 참 좋은 책입니다. 발명특허와 관련된 국·내외 소식들을 다양하고 심층적으로 잘 다루고 있어, 읽고나면 많은 정보와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아주 유익한 책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호에는 '연예인 이윤미 쇼핑몰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와 '상표에도 스테디셀러가 있다'가 궁금증을 해소해 주었고 재미있었습니다. 앞으로 발명특허의 성공적인 활용사례를 더 많이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하주영 독자** _ 지식과 정보가 중요한 이 시대에 지재권 관련 다양한 정보가 들어있어 유용합니다. 당사는 대학기술을 사업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의 지식정보 트렌드를 읽을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좋은 책자 발간을 위해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9월호 퀴즈 정답

1. 우리별 1호
2. 제국신문
3. 사이드카(sidecar)

퀴즈 정답자

한혜령 경북 김천시 신음동
송재하 대구시 수성구 만촌1동
하주영 서울시 마포구 신수동

월간「발명특허」
광고게재 안내

우리회 회지인 월간「발명특허」誌는 각 회원사 및 국내외 유관기관, 기업, 도서관, 학교, 발명가, 주부 및 학생 등에 광범위하게 제공되고 있는 발명진흥사업의 활성화를 비롯한 국내외 산업재산권제도 및 정보자료의 대변지입니다. 다음과 같이 본지에 귀사의 홍보를 위한 광고안내를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원고모집안내

월간「발명특허」誌는 국내 · 외 지식재산권에 대한 분야별 전문적 의견과 논문, 그리고 정책 · 기획 · 출원 동향 등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널리 확산 보급함으로써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간되는 전문지입니다. 본 「발명특허」誌가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의 선도 및 기술 · 정책 전문지로서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별 전문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투고를 부탁드립니다.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 **모집분야** : 지식재산권 관련 논단, 발명칼럼, 판례 등
- **원고제목** : 관련 분야별로 자유로이 선택
- **원고분량** : 제한없음
- **모집시기** : 수시
- **보내실곳(E-mail)** : eldaah7@kipa.org

회원 동정 접수

2009년 9월부터 **【회원동정】** 코너를 개설하였습니다.
「회원동향」란에 실을 수 있는 회원사의 동정과 보도자료를 매월 15일까지 이메일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고분량** : A4(1/2매, 글자크기 : 12포인트),
  관련 사진자료 1매 함께 제출 (보도자료 형태도 무관함)
- **보내실곳** : eldaah7@kipa.org

광고 및 원고 모집 문의 : 한국발명진흥회 전략기획팀 TEL (02)3459-2726

광고가격(1개월 기준)

광고게재면	규 격	가 격	비 고
표지 4	칼라 전면	900,000	부가세 별도
표지 3	〃	700,000	
표지 2	〃	700,000	
내지 화보	〃	500,000	
내지 흑백	흑백 전면	300,000	

우리회 지회 안내

지 회	지회장	사무국장	주 소	연 락 처
부산지회	박성용	김유헌	부산시 남구 문현3동 243번지	051-645-9683
광주지회	고정주	김 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천동 621-15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2층	062-954-3841
강원지회	김윤호	김현웅	강원도 춘천시 후평1동 198-25	033-258-6580

편집 : 전략기획팀 김민국 (Tel. 02-3459-2726, Fax. 02-3459-2729)

GERMANY

유럽 진출의 교두보
'11 독일 국제아이디어 · 발명 · 신제품전시회 모집안내

■ **전시명**

- 2011 독일 국제아이디어 · 발명 · 신제품전시회
  iENA2011(International Trade Fair Exhibition "Ideas-Inventions-New Products") (www.iena.de)

■ **기 간 :** '11. 10. 27(목) ~ 30(일) * 부스설치 : 10. 26(화)

■ **장 소 :** 뉘른베르그 무역전시센터 Hall12 (Nuremberg Trade Fair Centre, Hall 12)

■ **규 모 :** '10년 37개국 800여 점

■ **특 징**

- 독일 최대의 발명 관련 발명전시회
- 60년 전통 및 라이센싱 · 바이어 상담에 특화

■ **주 최 :** AFAG Messen und Ausstellungen GmbH

■ **전시형태**

부스크기	기본 제공 사항
4㎡ (2m×2m), 6㎡ (3m×2m)	등록비, 카탈로그 게재비용, 전기, 부스설명판, 테이블, 의자 1개, 카페트

■ **시상제도 :** 분야별 금, 은, 동메달 및 특별상 등

- 심사는 주최측 심사위원을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됨.

■ **출품지원금 국고지원 및 혜택**

- 개인 및 중소기업자의 최소부스료, 번역비, 통역비 항목에 한해 발명품 1건 당 최대 2,000,000원 이내 환급 (국고보조금, 정산 등)
- 발명의 날 포상 신청 시 본 전시회 수상자에 한하여 가산점 부여
- 잔액은 참가단 귀국 후 정산하여 환불

한국발명진흥회

IPAT

한국발명진흥회

제 3 회

지식재산능력시험

IPAT 실시요강

지식재산능력시험이란?
발명진흥법상 법인기관인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주관하는 유일한 지식재산능력 공인시험으로 기본지식과 실무활용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

- **접 수 시 간 :** 2011년 11월 1일(일)~11월22일(화)
- **제3회시험 :** 2011년 11월 26일(토)
- **대　　상 :** 지식재산에 관심이 있는 전 국민 대상
- **응 시 료 :** 개인 : 20,000원 / 단체 : 18,000원(시험본부에 등록된 단체)
- **접 수 방 법 :** www.ipat.or.kr에서 신청
- **시 험 장 소 :**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5개 도시

IP세상!
IPAT으로 준비하세요!

제3회시험
11월26일

지식재산능력시험은 이렇게 준비하세요

표준교재 : 전국 서점에서 판매중	온라인교육 : 저자직강	오프라인교육 : 종합정리 및 문제풀이반
· "지식재산의 정석"	· e-ipat	· 집체교육 ·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 문의 : 02)3459-2777,2888 * 자세한 사항은 www.ipat.or.kr에서 확인